



제22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제11회 전국교원발명품경진대회



제8회 전국대학발명경진대회

IP Report

- 32 해외연수보고서
2009 CASRIP Summer Institute를 다녀와서
- 38 특허확대경 특허청구범위 축소 보정의 제한
- 43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 44 특허기술 평가결과 활용사례
특허기술 제값받기 - (주)한국하우톤

IP Colum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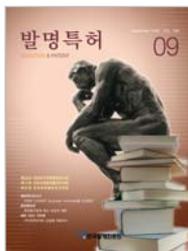
- 50 해피 CEO 인터뷰 (주)피앤아이비 김길해 대표이사
- 54 발명칼럼I 지식재산권 거래의 활성화 방안
- 56 발명칼럼II 불펜, '기술'의 옷을 입고 다시 태어나다
- 59 우표로 본 인물과 역사
- 60 지식재산강의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IP Information

- 78 발명만화 아무도 몰랐던 몰래발명이야기
- 80 건강하게 삼시다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길라잡이
- 85 즐거운 퍼즐
- 86 발명365

IP News

- 88 해외특허뉴스 해외특허동향, 해외특허정책, 해외특허분쟁
- 94 KIPO 소식 특허청 소식



• 본지는 한국도서관지윤리위원회의 실선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게재된 기사와 본지의 견해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한국발명진흥회 회지 월간 발명특허
2009년 9월호 제34권 제9호(통권398호)
발행인/편집인 허진규
인쇄인 이평원
발행처 한국발명진흥회
주 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우 135-980)
전 화 02)3459-2800(대)
인 쇄 2009년 9월 1일
발 행 2009년 9월 5일
인쇄처 취문인쇄사 (02)2276-1234



바이인벤션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리세요?

그럼...
 필요한 물건이 있는지
 잘 생각해보시구요~
 생각하셨다면,

또 한번의 기분좋은 쇼핑!!!

어떠세요??^^

U.S. blocks the road to a greener planet

B Gwynne Dyer
 The Japan Times

LONDON — The Canadians and the Australians were as bad, really, and the Saudi Arabians were outrageous: They want the world to compensate them for every barrel of oil they don't sell if it cuts back on burning fossil fuels to slow global warming. But the Americans were the real reason that the 175-country talks on climate change broke up in chaos at The Hague on Saturday.

"I'm gutted," said Britain's chief negotiator, Deputy Prime Minister John Prescott, after he stormed out of the conference in fury on Sunday and brought proceedings to an abrupt close. "There's no deal. The talks are finished. We can't do it."

But the only reason the talks at all was because Britain, the only go-between, had promised to do that would let the United States agree out of its promise. "I think there's a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was first agreed to in Kyoto in 1997. It was a landmark agreement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to levels that would prevent global warming from becoming a threat to human civilization. The Kyoto Protocol was signed by 149 countries, but the United States refused to sign it. The Kyoto Protocol is a landmark agreement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to levels that would prevent global warming from becoming a threat to human civilization. The Kyoto Protocol was signed by 149 countries, but the United States refused to sign it.

since the United States had refused to sign the Kyoto Protocol. The Hague talks were a set of proposals that would have let the world cut carbon-dioxide emissions at all. Here, while America created a series of loopholes to ensure that its own cars could go on driving sports utility vehicles that get about 20 miles to the gallon.

In practice, however, Prescott was right to seek a compromise. The Hague conference was intended to work out rules for enforcing the principles agreed to at Kyoto, and the plain fact is that it's already too late for the United States to keep its promises under that treaty.

With only 4 percent of the world's people, the United States produces more than 25 percent of the world's greenhouse gas emissions.

States would have to slash emissions by 35 percent from where they would otherwise be by 2010 in order to keep its promises.

That is plainly impossible, at least in political terms, so Washington went to The Hague with a set of proposals that brazenly aimed at exempting the United States from most of its duties under the treaty.

Chief among the dodges that Loy proposed was a plan to let rich countries buy up the "credits" other countries earn for reducing their carbon emissions. That would let Washington and its partners-in-crime Canada and Australia buy up the carbon-emission savings that Russia, for example, has accumulated in its heavy industries since the 1990s.

It would simply be able to take credit for reductions that had already happened anyway. The same principle underlay the famous idea of giving the heavily polluting "super-polluters" a "grandfathered" status.

politically painful task of persuading its own citizens to change their energy habits. No wonder an enraged Green activist lost it last Wednesday and pushed a cream pie into Loy's face.

Yet ordinary Americans have their hearts in the right place. Four out of five, in a recent opinion poll, said that they wanted Washington to take action to reduce the carbon dioxide emissions that contribute to global warming. Two-thirds of them still wanted that policy even if developing nations are not asked to make equal cuts.

The problem is that the U.S. political process, and especially the campaign-finance rules, give special interests like the oil and car industries such power that they effect control American policy on global warming. And U.S. cooperation in the process of curbing global warming is indispensable, even if it exempts the country from reducing everyone else must reduce 500 kg per capita a year where it takes the signatures of 149 countries responsible for 55 percent of the world's carbon dioxide emissions.

Even so, rarely the Kyoto Protocol is a landmark agreement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to levels that would prevent global warming from becoming a threat to human civilization. The Kyoto Protocol was signed by 149 countries, but the United States refused to sign it.

인터넷 주소창에 **바이인벤션** 을 쳐보세요.



제22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성료

제11회 전국교원발명품경진대회도 함께 열려



제 22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및 제11회 전국교원발명품경진대회가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삼성동 코엑스 Hall C1(구 대서양홀 5실)에서 개최되었다.

특허청과 조선일보사가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학교발명협회, 한국여성발명협회, 대한변리사회가 후원한 이번 전시회에는 학생과 교원발명품 313점이 전



▲ 이태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이 수상 학생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있다.



▲ 허진규 한국발명진흥회장이 수상 학생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있다.

시되었고, 시상식에는 수상자 및 가족 4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지난 7월 29일 오전 10시 30분, Hall C1(구 대서양홀 5실) 앞에서 개막 테이프 커팅이 있었고, 이어 11시 그랜드볼룸에서 시상식이 열렸다.

시상식에서 학생 184명, 지도교사 13명, 단체 3개교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 관련기사 19 ~ 27면 참고



▲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선초롱 학생이 자신의 발명품인 '부풀어 오르는 휴대용 구멍튜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관람객들이 학생들의 발명품을 관람하고 있다.





대학생 ‘발명왕’ 연세대 서동식 학생 대학발명경진대회 대상 수상

포스트잇과 바코드를 이용한 녹음 분할 장치 발명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지난 8월 12일, 코엑스 그랜드 볼룸에서 「제8회 전국대학발명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 서동식(연세대 생화학과 2년) 학생은 ‘포스트잇과 바코드를 이용해 녹음과 재생을 신속하게 하는 모듈’로 국무총리상(개인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 발명은 강의 시간에 단계별로 녹음을 나누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쉽게 붙였다 뗄 수 있는 포스트잇과, 널리 이용되는 바코드를 결합해서 녹음 시작과 중간에 찾고자 하는 구분점을 표시할 수 있다는 것에 착안했다.

즉, 강의 중 녹음을 하고 싶은 단위에서 단말기와 연결된 포스트잇을 한 장 뽑으면 녹음이 시작되고, 또 한 장 뽑으면 그 부분의 녹음이 완성된다. 이렇게 뽑은 포스트잇은 책의 그 단위에 붙여놓고 있다 재생시키고 싶을 때 단말기에 붙이기만 하면 다시 재생이 되는 녹음분할장치 방식이다.

서동식 학생은 “수업 중 강의내용을 모두 필기하기가 어렵고, 녹음을 하더라도 원하는 부분만 골라 듣기가 어려워 이를 보완하고자, 녹음 분할 장치를 고안했다”며 “출판물같이 판매되는 교육용 교재의 경우 항목별, 단위별, 페이지별로 음성 설명 콘텐츠를 나눠 학습보조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인 금상은 유찬우(전북대 4년) 학생이 발명한 것으로, 상체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든 ‘철골구조를 지닌 압사방지 소방관복’과 박중현(경기대 4년) 학생의 서터에 실시출력물의 부착을 용이하게 하는 ‘스티커 부착장치’가 각각 선정됐다.

팀 부문 금상에는 성균관대 ‘마지막 투혼팀’의 기존 RAC 에어컨의 구조상의 한계로 인한 유량 손실을 줄인 ‘RAC의 가변



▲ 김원중 특허청 차장이 수상학생들에게 트로피를 전달하고 있다.



▲ 김원중 특허청 차장이 치사를 하고 있다.



▲ 최종협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이 수상학생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있다.



▲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서동식(연세대) 학생이 자신의 발명품을 소개하고 있다.



▲ 이상용 한국특허정보원 본부장이 수상학생들에게 트로피를 전달하고 있다.



▲ 주요 귀빈들이 학생들의 발명품을 관람하고 있다.

형 토출블레이드와 충주대 아카도라팀의 저렴하며 간단한 조작으로 계단을 통과할 수 있는 '계단통과 바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 8회째를 맞는 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633건이 신청되었으며, 이 중 서류심사를 거쳐 연세대 등 21개 대학에서 총 42개(개인 21명, 팀 21명)가 수상했다.

였다.

한국발명진흥회와 특허청은 은상 이상 수상자 중 현장심사에서 선정된 3작품 내외를 선정해 11월 독일국제발명전시회에 출품하며, 동상 이상 수상자 중 15건 내외를 선정해 지역별 기금지원사업 지원 편기인 캐자 피 메트릭 서비스를

2009 제7회 여성발명 경진대회

생활 속 참신한 발명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여성들에게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진 여성발명인을 발굴하기 위한 「2009 제7회 여성발명경진대회」가 개최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찾아낸 자신만의 소중한 발명아이디어가 있는 여성이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기발하고 실용적인 생활발명품의 산실이 되어 온 「여성발명경진대회」에서 자신의 발명 꿈을 마음껏 펼쳐보세요.

참가부문 및 자격

- 일반부 :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여성(해외 주재 교포 포함)
- 학생부 : 신청일 현재 재학·휴학 중인 여자 대학생 및 대학원생

출품대상 및 참가제한

- 신청일 현재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되지 않은 발명, 고안, 디자인 등 아이디어(출원 중인 경우는 가능)
- 실용신안의 경우는 등록유지결정을 받기 전의 고안에 한함
- 1인1건에 한하고, 공동발명의 경우는 대표자를 정하여 신청
- 발명관련기관에서 개최한 대회에 참가하여 수상한 내용과 동일한 경우는 제외

접수기간

- 2009년 8월 1일~9월 10일

제출서류

- 신청서, 발명내용, 요약서, 설명서(이상 지정양식), 기타 참고자료
- 재학·휴학증명서(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장애인에 한함)
- ※ 홈페이지(www.inventor.or.kr)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로드
-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최/주관기관은 수상작에 대한 간행물을 발간,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신청방법

- 이메일 : kwia01@inventor.or.kr
- 우 편 : 135-9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재산지식센터 17층
한국여성발명협회(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방 문 : 한국여성발명협회 사무국
(지하철 2호선 역삼역 4번출구에서 강남역 방향으로 약5분 거리)

참가비

- 참가비 : 1만원
- 입금계좌 : 국민은행 349401-04-159671/(사)한국여성발명협회
- ※ 학생, 장애인, 회원은 무료

시상계획

- 대 상 (대통령상/1인) : 트로피, 상금400만원
- 준대상 (국무총리상/1인) : 상패, 상금300만원
- 금 상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여성부 장관상/3인) : 상패, 상금200만원
- 은 상 (특허청장상/6인) : 상패, 상금100만원
- 동 상 (주관 및 후원기관장상/20인) : 상금30만원
- 장려상 (한국여성발명협회장상/20인) : 상품권
- ※ 시상인원은 참가 건수 및 수준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음

시상식

- 일 시 : 2009년 10월 22일(목)
- 장 소 :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 (예정)
- 문 의 : (사)한국여성발명협회 사무국(전화 02-538-2710, 팩스 02-538-271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 특허출원 시 과제출처 기재의무화

특허청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성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기재할 수 있도록 '05년 특허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였고, 07년 2월에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협력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7항 2호 (08.12.31 개정)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 7항 2호('08.12.31개정)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 연구개발과제명의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특허청에서는 주관연구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에서 산출한 특허성과물임을 기재할 수 있도록 특허출원서에 서식(란)을 마련하여 향후 연구개발과제 출처 기재율 향상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특허출원서 기재요령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제14호서식] <개정 2008. 9. 30> (앞쪽)
 [출원구분] 특허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참조번호])
 [출원인]
 [대리인]
 [발명의 국문명칭]
 [발명의 영문명칭]
 ([원출원 (무권리자 출원)의 출원번호])
 ([우선권주장])
 ([기타사항] 심사청구 심사유예신청 조기공개신청 공지예외적용
 미생물기탁 서열목록 기술이전희망 국가연구개발사업)
 ([유예희망시점] 심사청구일 후 18개월이 지난 때부터 ()개월)



기재요령

[예] [기타사항] [연구사업명] 공통핵심기술개발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명] 세라믹판을 이용한 연 X선식 절전기 제거장치 개발
 [과제고유번호] ○○○○○○○○ [주관기관] (주) 한국세라믹연구소
 ※NTIS에서 부여받은 'NTIS과제고유번호' 기재 [연구소] 2008.1.1 ~ 2008. 12.31
 [부처명] 지식경제부

화학생명분야

(특허청 교육비 지원과정)

지식재산전담인력 양성 교육 안내

지식재산전담인력이란?

특허출원, 특허정보 조사 분석, 해외OA 대응, 특허관리 등 실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력

대상기업

지식재산 겸업인력의 전담인력화 또는 전담인력의 실무능력 향상을 원하는 기업

과정구분

구분	일정	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정원	수강료	교육비 환급
검색	9.15~16	특허정보활용	2일 11시간	20명	600,000원	· 중소기업 : 과정당 교육비의 90%내외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 비해당기업 : 과정당 교육비의 70%내외 * 과정당 수강생 현황에 따라 환급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권리화	9.17~18	발명의 권리화	2일 10시간	20명	600,000원	
권리화	10.20~21	해외 OA 대응	2일 12시간	20명	600,000원	
관리/경영	10.22~23	전략적 특허관리	2일 11시간	20명	600,000원	

교육 커리큘럼 소개

화학생명분야 - 특허정보활용

구분	교육 시간	교육 내용	소요 시간
1일	08:50~09:00	과정 안내 및 O/T (교육생 상호인사, 일정소개)	3
	09:00~12:00	화학생명 분야 특허조사 - 특허분류코드의 활용 (IPC, F-TERM, UPC, ECLA) - 특허정보조사 검색식 작성 (한국/미국/일본) - 화학생명분야 주요 키워드 검색식 확장	
	12:00~13:00	중식	
1일	13:00~16:00	화학생명 분야 비특허문헌 조사 - CAS 비특허문헌 조사 / STN 비특허문헌 조사 - Scifinder 비특허문헌 조사 / PubMed 비특허문헌 조사 등	3
	16:00~18:00	화학생명 분야 특허정보 분석 - 서지적 항목 분석 / 권리적 항목 분석	2
	2일	09:00~12:00	업무유형별 특허정보 활용 - 특허기술동향분석, 권리만료특허조사, 특허성 조사 등

화학생명분야 - 발명의 권리화

구분	교육 시간	교육 내용	소요 시간
1일	08:50~09:00	과정 안내 및 O/T (교육생 상호인사, 일정소개)	1
	09:00~10:00	특허요건 - 산업상 이용가능성 / 진보성 - 확대된 선언의 지위 / 공지 및 공연 실시 등	
	10:00~11:00	화학생명 분야의 특수한 발명 - 용도발명 / 수치한정 및 파라미터 / 선택발명	
	11:00~12:00	화학생명 분야의 명세서 이해 및 청구범위 해석 - 발명의 상세한 설명 / 청구범위	
	12:00~13:00	중식	
	13:00~15:00	화학생명 분야의 명세서 이해 및 청구범위 해석 - 다항제 및 1특허출원 범위 / 특수한 클레임 취급 - 문언침해 / 균등론 / 생략발명 및 우회침해 / 간접침해 등	
	15:00~17:00	화학생명분야 주요 심사기준 - 산업상 이용가능성 / 신규성 / 진보성 - 발명의 상세한 설명 / 특허청구범위	
2일	09:00~12:00	화학생명분야 거절이유 및 대응방안 - 화학발명 거절이유 및 대응방안 / 의약발명 거절이유 및 대응방안 - 생명공학발명 거절이유 및 대응방안	3

화학생명분야 - 해외 OA 대응

구 분	교육 시간	교육 내용	소요 시간
1일	08:50~09:00	과정 안내 및 O/T (교육생 상호인사, 일정소개)	1
	09:00~10:00	화학생명분야 해외 권리화 전략 - 해외출원시 고려사항 / 해외출원 경로 선택 / PCT국제출원	
	10:00~12:00	미국에서의 권리화 - 미국 특허제도 일반 / 미국특허 심사 단계 - 심사에 의한 OA 대응 / 권리화 프로세스	2
	12:00~13:00	중식	
	13:00~14:00	미국에서의 권리화 - 권리화 프로세스	1
	14:00~16:00	일본에서의 권리화 - 일본 특허제도 일반 / 일본특허 심사 단계 - 심사에 의한 OA 대응 / 권리화 프로세스	2
2일	09:00~12:00	유럽에서의 권리화 - 유럽 특허제도 일반 / 유럽특허 심사 단계 - 심사에 의한 OA 대응, 권리화 프로세스	3
	12:00~13:00	중식	
	13:00~14:00	생명공학과 의약 특허관련 분쟁 - 해외분쟁대응 / 분쟁대응사례 연구	1
	14:00~15:00	바이오 의약품 인허가 과정 - 미국 FDA 바이오의약품 인허가 / 유럽 EMEA 바이오의약품 인허가	2

화학생명분야 - 전략적 특허관리

구 분	교육 시간	교육 내용	소요 시간
1일	08:50~09:00	과정 안내 및 O/T (교육생 상호인사, 일정소개)	2
	09:00~11:00	지식재산권의 창출 - 아이디어 창출 및 지재부서 역할 - 발명신고서 작성 / 직무발명 운영 및 보상방안	
	11:00~12:00	지식재산권의 보호 - 특허출원 / 실용신안 출원	1
	12:00~13:00	중식	
	13:00~15:00	지식재산권의 보호 - 영업비밀에 의한 보호 - 미생물 기탁에 의한 보호 / 화합물 위탁에 의한 보호 - 권리화 단계	2
	15:00~18:00	지식재산권의 활용 - 특허기술 사업화, 라이선싱 - 특허기부 / 특허권의 유지와 포기 - 의약분야 특유의 특허활용 전략	3
2일	09:00~11:00	특허분쟁 대응 전략 - 특허침해 대응 프로세스 - 화학생명분야 특허분쟁 사례	2
	11:00~12:00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공유 - 전담인력 직무분석, 특허사무소 관리 및 관리시스템 도입	1

※ 세부 커리큘럼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 방법 www.ipcampus.kr

- ◆ 의무 수강신청 : 2개 과정 이상/ 권장 수강신청 : 4개 과정
- ※ 단일과목(1개 과정) 수강은 환급 제외됨

- ① 해당과목 수강신청 클릭
- ② 수강신청 정보 기입 후 출력
- ③ 교육훈련위탁계약서 [교육신청서]에 기관직인 날인 후 FAX 송부
- ④ 교육신청서 수신여부 및 교육비 입금 확인(02-3459-2814, 2816, 2817)

※ 조기 수강신청 마감될 예정입니다. 각 과정 수강 신청 후 반드시 수강신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WW.IPACADEMY.NET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사이트

지식재산교육의 모든것! **NEW** 이 사이트 하나면 충분합니다

연구원

연구방향설정
중복연구방지를위한
특허정보검색, 활용
온라인교육시스템제공

중소기업

특허출원서작성
및 전자출원 등
실무교육
맞춤제공

초·중·고등학생

창의력 증진
발명기법을
익힐 수 있는
다양한 이러닝
서비스 제공

대학생

전공별 다양한
온라인 교육
시스템 제공

발명교사

발명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연수과정

일반인

지식재산권
기초부터
전문가과정까지
온라인콘텐츠
무료제공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이란?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운영하던 발명,지재산 온라인 교육사이트인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 사이버발명교육연수원, 발명교육센터 등 교육시스템을 통합하여 사용자가 원클릭으로 온라인교육, 교육정보, 커뮤니티, E토론 등이 가능하도록 교육생의 편의를 강화한 포털사이트

기업 (중,소,대기업)

기업별 전용사이트를
무료로 개설 · 운영
방문교육서비스 가능

연구기관

R&D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 전용사이트를
무료로 개설, 운영

일반인

발명에 관심있는
일반인을 위한
e-러닝 무료교육

청소년

발명의 원리, 아이디어발상
창의력 신장을 위한
청소년 발명교육

대학생

이공계, 디자인, 예비교원 등
예비지재권전문가를 위한
맞춤 교육

발명교사

발명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연수과정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운영기관

한국발명진흥회



2009 상표 · 디자인권 展

2009 Trademark · Design Right Exhibition

- 목적**
- 상표 · 디자인권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 상표 · 디자인 정보 확산을 통해 기업 경쟁력강화에 기여함으로써 산업발전을 도모

| 기간 및 장소 | 2009년 9월 19일(토)~9월 23일(수) [5일간] 대전컨벤션센터 전시홀

주요행사

구분	일자	장소	비고
개막식	09. 9. 19(토)	대전컨벤션센터 전시홀 입구	
시상식	09. 9. 19(토)	대전컨벤션센터 중회의실	우수상표권 공모전 수상작
전시	09. 9. 19(토)~23(수) (10:00~17:00)	대전컨벤션센터 전시장	무료입장

전시관 구성

No.	구분	전시 대상 / 내용
1	알기 쉬운 산업재산권제도 설명관	산업재산권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질개 자동차 등을 전시
2	우수상표권 공모전 전시관	우수상표권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상표 전시
3	우수 디자인권관	우수디자인공모전 및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수상작 상반기 굿디자인 선정작 전시
4	상표 · 디자인권 트렌드관	시대별 상표 · 디자인권 변천사 소개
5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지원관	비영어권 국가진출 기업 브랜드 개발 및 관리화 지원 소개
6	진품 · 모조품 전시관	진품 · 모조품 전시 및 위조상품 구별 방법 등 소개
7	지역브랜드 관리 지원관	지역브랜드가치제고, 사업수혜 우수단체 표창권 전시
8	히트 브랜드 전시관	우수 히트 브랜드 전시
9	상표 · 디자인권분쟁사례 소개관	상표 · 디자인권 분쟁사례 자료 소개
10	대전광역시 대표 브랜드 전시관	대전 광역시 및 향토기업 대표 브랜드 전시
11	상표 · 디자인권 전문 상담관	상표 ·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절차, 브랜드 관리전략, 컨설팅 등 포괄적인 특활서비스 제공
12	우수 학생발명품 전시관	대한민국학생발명품전시회 수상품 전시
13	우수 대학발명품 전시관	전국대학발명경진대회 수상품 전시

세미나 행사

- 브랜드 경영전략 전문가 강연 및 브랜드관리, 성공사례 발표 등 최신동향 소개
- 일시 : 2009년 9월 22일(화), 09:30~16:00
- | 주제 1 | 브랜드 출원 전략 (최성우 변호사)
- | 주제 2 | 브랜드 가치평가 개요 및 사례 (이윤나브랜드 대표이사 김성재)

부대행사

- 다양한 로벗(춤) 공연 및 다양한 공연행사
- 진품을 찾아라 이벤트
- 상표등록증(견본)교부 체험이벤트



2009 상표 · 디자인권 展
2009 Trademark · Design Right Exhibition



www.trademark-design.org

· 주최 : 특허청 · 주관 : 한국발명진흥회 · 후원 : 지식경제부, 대전광역시, 한국무역협회, 大韓辯理士會, 한국특허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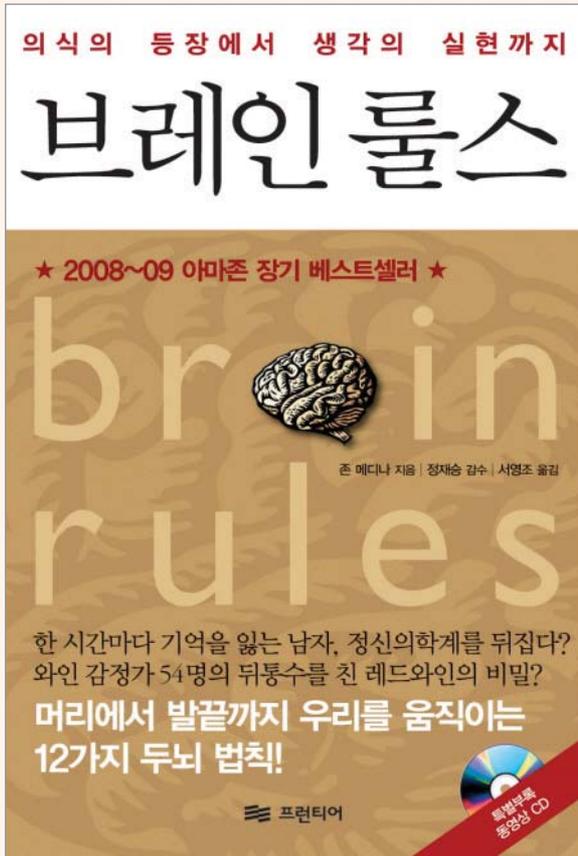
회원가입을 축하합니다!



- 회원명 : (주)토파스
- 대표자 : 김성문 대표이사
- 업태/종목 : 제조
- 가입년월일 : 2009년 8월 11일
- 주소 :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328번지
- 전화번호 : 031)541-6941
- 홈페이지주소 : www.tcfas.kr



- 회원명 : 플로우네트웍(주)
- 대표자 : 김정일 대표이사
- 업태/종목 : 제조/도소매
- 가입년월일 : 2009년 8월 11일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940-38 신정빌딩 202호
- 전화번호 : 02)2697-2171
- 홈페이지주소 : www.flownetwork.co.kr



의식의 등장에서 생각의 실현까지

브레인 룰스

저자 존 메디나 | 역자 서영조 | 감수 정재승
출판사 프리언터

책소개

위기 극복의 출발점, '두뇌'에서 찾아라!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를 움직이는 12가지 두뇌 법칙!

『브레인 룰스 | 의식의 등장에서 생각의 실현까지』. 인류 최초의 미개척지인 두뇌. 심리학, 의학 등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앞장서서 두뇌의 비밀을 밝혀오고 있지만, 사람들, 특히 경영자와 교육자들은 그 원리들을 간과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상당한 비효율과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

또한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뇌가 어떤 상태이며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궁금해 한다. 하지만 우리는 두뇌를 대해 전혀 모르며 또 외면하고 있다. 이 책은 12가지 브레인 룰스, 즉 두뇌 법칙을 통해 두뇌의 기본 원리를 밝히고, 모두의 삶을 변화시킬 열쇠임을 깨닫게 하는 심리 교양서이자 과학적인 자기계발서이다.

저자는 인간의 두뇌는 미스터리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기본 법칙이 있다고 말한다. 또한 두뇌와 마음의 원리를 아는 것은 우리의 생존과 변화, 성공의 결정적 기본요소라 말한다. 과학 자체에 대해 전달하기보다 두뇌과학을 이용해 보다 효율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일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 등에 대해 소개하는 두뇌 활용법을 제시한다.

해외상표검색 Database

Global Trademark Search Platform 'SAEGIS'

"SAEGIS"는 세계 최고의 상표조사 전문회사인 Thomson Reuter社(구 Thomson CompuMark)에서 운영하는 Database로서 미국, 유럽의 상표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Global 상표검색 Database입니다.



[SAEGIS 특징]

- 30여개국 Database 동시 검색 가능
- 각국 특허청 상표 DataBase보다 다양한 검색 Tool 제공 (약 60개 항목으로 검색 지원), 보다 신속, 정확한 상표 검색 가능
- 비 알파벳 권역 국가인 일본, 중국 등의 현지어로 등록된 상표들의 영문화

[SAEGIS 시연 및 무료사용]

- 마크프로는 'Thomson Reuter'社의 한국내 업무파트너로서 'Thomson Reuter'社가 운영하는 'SAEGIS'의 사용 관련 교육 및 보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마크프로는 사용자가 직접 검색하는 데 필요한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정기간 SAEGIS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해외 상표 검색 서비스

마크프로에서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조합한 다양한 해외상표 검색방법을 모색하여 최적화된 해외상표조사 방안을 제공함으로써 비용절감, 신속한 업무처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있으며, 기업 및 특허 사무소로부터 의뢰를 받아 SAEGIS를 이용한 상표검색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개요]

고객의 상표 조사목적, 조사범위, 조사비용예산, 조사대상국가, 조사방법 등의 분석을 통한 맞춤형 해외상표 조사 서비스

[서비스의 특징]

- 조사의뢰서 접수 후 고객사와 협의한 사항에 따라, 해외상표 조사 담당자가 조사진행 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업무를 진행
- 온라인 Search만으로 조사목적 달성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가 직접 Global Trademark Search Database (주로 SAEGIS를 사용하고, 보조적으로 DIALOGUE, CATAMARAN PLUS, INSPIRO 등을 사용)에 접속하여 조사를 진행하거나, 필요에 따라 해외의 전문 상표조사 회사에 의뢰
- 동시에 해외 각국의 특허청 상표 Database를 사용한 검색도 병행하여 조사비용을 절감하고 업무참조용으로 활용
- 온라인 검색이 불가능한 국가에 대해서는 마크프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하여 상표조사를 진행

제33회 전국 초중학생 발명글짓기만화 현상모집 포스터 내용

▶ 접수기간 : 9. 7(월) ~ 10. 6(화) (18:00까지)

온라인 접수에 한함(우편접수 불가)

▶ 출품자격 : 전국 초·중학교 재학생

▶ 접수방법

- 접수처 : 홈페이지(www.kipa.org) 참여마당 사업신청
- 원고 작성요령(글짓기 및 만화 공통) : 원고 주제는 발명이어야 하며, 제목은 자유로이 정해도 됨
예) 「나의 발명」, 「내가 발명하고 싶은 것」 등
- 작성 시 원고분량

구분	작품분량	비고
글짓기	3000자미만 - 초등200자 원고지 6-10장 분량 - 중등200자 원고지 10-15장 분량	※ 글짓기는 미리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으로 작성 후내용을 복사하여 온라인 신청서에 등록하시면 편리합니다.
만화	세로로 10컷 이내, 수기로 그린 후 스캔하여 등록(채색금지)	※ 만화 스캔크기 500×700 (17cm×24cm)미만 gif 또는 jpg 파일로 저장 (5M 미만)
기타	상상력, 관찰력, 과학성, 생활성, 체험성, 인식성 등을 심사해 반영	

▶ 문의

○ 전화 : 02)3459-2797, 2845

▶ 후원

○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특허청,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학교발명협회, 대한변리사회, 한국여성발명협회

▶ 시상내역

구분	상종	시상수	시상주체	부상
초·중학생	대상	글짓기 2 만화 2	지식경제부장관(초), 지식경제부장관(중) 특허청장(초), 특허청장(중)	메달, 장학금 (각 50만 원)
	금상	글짓기 10 만화 10	POSCO 회장 (부문별 초·중 각 5)	메달, 장학금 (각 30만 원)
	은상	글짓기 20	한국발명진흥회장 (초·5) 한국발명진흥회장 (중·5) 대한상공회의소 (초·5) 전국경제인연합회 (중·5)	메달, 장학금 (각 10만 원)
		만화 20	한국발명진흥회장 (초·5) 한국발명진흥회장 (중·5) 한국무역협회 회장 (초·5) 중소기업중앙회 (중·5)	
	동상	글짓기 60 만화 80	한국특허정보원장 (초·등글짓기·30) 한국학교발명협회장 (초·등 만화·40) 대한변리사회장 (중·등글짓기·30) 한국여성발명협회장 (중·등 만화·40)	메달
	계	글짓기 92 만화 112	204	장학금 1200만 원
	교사	대상수상 학생 지도교사(4명)	특허청장	-
단체	금·은·동상	한국발명진흥회장	단체수상패	

※ 후원기관 및 시상내역은 신청건수 및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변동 가능

주 최 : 한국발명진흥회

협 찬 : POSCO

「2009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출품신청 안내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우수발명과 기술입국을 위해 우수 특허기술개발에 기여한 자를 포상하고, 우수 발명품의 전시·홍보 및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지원하여 범국민적인 발명인식제고에 기여하고자, 2009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을 개최합니다.

▶ 행사개요

- 전시기간 : 2009. 12. 3(목) ~ 12. 7(월)
- 장 소 : COEX 태평양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 시행기관
 - 주최/주관 :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 후원 :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경제4단체, 한국특허정보원, 대한변리사회, 한국여성발명협회, 한국학교발명협회

▶ 출품물 모집(신청) 대상

- 일반전시코너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으로 출원 또는 등록권자와 그 승계인의 발명품
 - 출품물 : 출품인 1명(사)당 발명품 3점 이내 신청가능
- 특별전시코너 : 09년도 국고보조지원 시작품 선정품, 09년도 국제발명품전시회 수상품, 09년도 전국대학발명경진대회 수상품, 09년도 특허기술상 수상품

▶ 시상계획

-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및 WIPO사무총장상 등 142점(예정)

▶ 전시회 참가비

- 전시부스료 : 무료
- 출 품 료 : 55만 원 (전시품으로 선정된 업체 및 개인에 한하여 추후 납부)
 - ※ 단, 추가부스 신청 시 부스료 납부

▶ 부스제공 : 전시대상으로 선정 시 1부스(3m×3m×2.4m) 무료제공

▶ 신청안내

- 접수기한 : 2009. 8. 17 ~ 9. 17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직접방문제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 교부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www.kipa.org → 사업공고)에서 다운가능
- 문 의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팀 T.(02)3459-2793 F.(02)3459-2799

2009 하반기 단계별 지식재산 인력양성 교육 안내

▶ 사업목적

- 기업 등의 IP 실무인력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 기존 산재되어 있는 교과목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수준별, 단계별로 구분·연계하여 지식재산 검임/전담/전문 과정 운영 및 교육비 지원

▶ 교육프로그램 운영

- 교육프로그램 개요

	지식재산검임인력	지식재산전담인력	고급직무교육
교육대상	특허관련 업무 입문자, 지식재산 전담부서 설치가 어려운 기업의 연구원	경력 1년내외의 기업 내 지재권업무 전담인력 및 이에 준하는 자	경력 3년 이상의 기업 내 지재권업무 전담인력 및 이에 준하는 자
교육기간	2일(16H)	2일(10H)	3일(24H)
교육정원	30명	20명	20명
수강료	42만 원	60만 원	84만 원

- 교육프로그램 일정

- 지식재산검임인력양성

구분	기간	과정명
권리화	09.07 - 09.08	특허제도와 출원서 작성
관리/경영	09.30 - 10.01	특허전략과 연구성과 관리
관리/경영	10.29 - 10.30	특허관리 입문

- 지식재산전담인력양성

구분	기간	과정명
검색	09.15 - 09.16	화학생명분야특허정보 활용
권리화	09.17 - 09.18	화학생명분야발명의 권리화
권리화	10.20 - 10.21	화학생명분야해외OA 대응
관리/경영	10.22 - 10.23	화학생명분야전략적 특허관리

- 고급직무교육

구분	기간	과정명
제도	10.06 - 10.08	디자인 및 상표 전략
분쟁	10.07 - 10.09	특허5급 소송절차비교사례·실무
관리/경영	10.13 - 10.15	지식재산 회계와 특허경영
분쟁	10.14 - 10.16	특허5급 국경관세지역에서의 IP분쟁 사례실무
권리화	추후공지	해외특허전략수립

※ 세부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교육비 지원

- 중소기업 : 교육비의 90% 내외 지원
- 중소기업 외 : 교육비의 70% 내외 지원
- ※ 지원비용은 과정 별 수강생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교육신청 및 문의처

- 교육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www.ipcampus.kr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 교육신청서 송부(fax : 02-3459-2859)
- 문의처
 - yongil@kipa.org, 02-3459-2814
 - poem1052@kipa.org, 02-3459-2816

특허기술가치평가에 의한 사업화 자금 보증지원안내

특허청과 기술보증기금 간에 체결된 우수특허기술 사업화지원을 위한 업무협약령정에 따라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하는 특허기술가치평가에 대하여 평가 수수료를 지원하고, 기술보증기금은 평가된 우수특허기술에 대하여 사업화 자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할 계획이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격 및 대상]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 [지원한도]

사업화자금 보증지원한도 : 신청기업이 보유한 특허권의 기술가치평가금액 이내로서 같은 기업당 10억 원 한도

평가수수료 보조지원한도 : 건당 500만 원 한도 (자기부담금 20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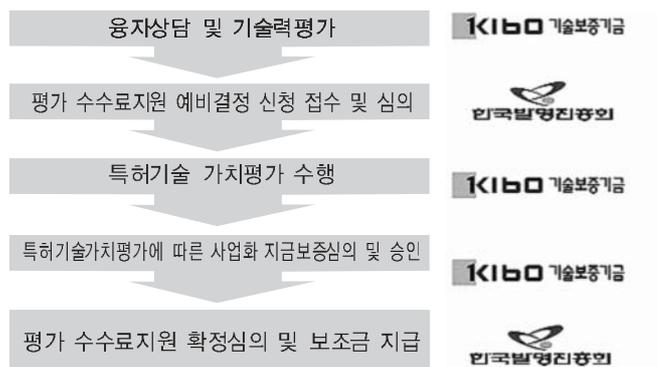
▶ [취급점 및 보증상대처]

취급점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구로, 강남, 송파, 종로, 서초, 인천, 수원, 화성, 부천, 천안, 원주, 청주, 대전, 전주, 광주, 대구, 울산, 부산, 안산, 창원)

보증 상대처 : 금융기관

▶ [신청접수]

신청 접수는 연간수시(선착순 마감)이며, 자세한 사항은 기술보증기금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및 본점의 평가마케팅팀 대표전화 051-460-2466(<http://www.kibo.or.kr>)
- 한국발명진흥회 IP경영지원팀 : 02-3459-2884, 2885, 2890 (팩스 : 02-3459-2899)
- 평가수수료 지원신청을 위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www.kipa.org 발명의 평가지원)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 "지역별 영업점 검색" 참조

2009년 국제출원비용지원 신청안내

▶ 사업 개요

○개인발명가 및 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이 보유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한 특허를 업선·지원하는 우수특허 사업화 지원사업(국제출원비용·시작품제작·발명의 평가비용)과 특허·브랜드·디자인경영 등 지식재산경영 컨설팅사업을 연계하여 기업별 실정에 맞게 맞춤형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

▶ 지원 대상

○개인 또는 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으로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을 해외에 출원한 자(개별국 출원단계 진입한 건)
- 해외 출원국가의 출원단계 비용을 이미 송금한 기술로, 신청일 기준 출원비용 송금일자가 5년 이내

▶ 지원 내용 및 규모

○국제출원비용(28억원) : 연간 1인당 5건까지 지원
- PCT국제출원단계의 비용과 개별국 출원단계의 비용 등

○권리별 지원금액한도

권리별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지원금액한도	700만원	200만원

▶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신청서류는 1차/2차로 제출함)

○지원절차

- ① 패키지 지원 신청·접수 ② 사업별 심사(1단계 기본 요건심사 및 기술성평가, 2단계 선정심사위원회)
- ③ 각 사업별 세부 지원절차 진행 ④ 최종수혜자 선정
- ⑤ 지원

○국제출원비용지원 신청기간 : 연중수시

- 1차지급 : 3월말 / 2차지급 : 5월말 / 3차지급 : 8월말 / 4차지급 : 11월말

○신청방법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http://www.kipo.org>)/사업공고/국제출원비용지원사업안내문의 첨부파일(내려받기)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문의처 안내 ※

○주소 : (135-9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18층) 한국발명진흥회

○연락처 - 국제출원비용지원 사업담당 : 02-3459-2843, -2848, -2846(팩스 : -2799)

발명인의 전당 관람안내

발명인의 전당	www.kipo.go.kr
관람가능시간	평일 09:00~18:00 (국경일/공휴일 제외)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4동 (1층 소재)
관람연락처	전 화 : (042)481-5940 담당자 : 김명희

찾아오시는 길



물 걱정 끝! ‘물 절약 수도꼭지’ 대통령상 영예

학생 184명, 지도교사 13명, 단체 3개교 시상

제 22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에서 이득기(경기 낙생고 2년) 학생이 출품작 「기어비와 수압을 이용한 물 절약 수도꼭지」로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 올해의 학생발명왕으로 선정되었다.

국무총리상에는 「부풀어 오르는 휴대용 구멍튜브」를 출품한 선초롱(대전과학고 2년) 학생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사무총장상에는 「sliding book stand」을 출품한 이강신(서울 보성고 1년) 학생이, 조선일보사장상에는 「부채처럼 접히는 파레트」를 출품한 서명빈(경기 하일초 5년) 학생이 차지했다.

또한, 이날 함께 열린 제11회 전국교원발명품경진대회에서 최수철(경기 송탄중) 교사는 금상(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을, 정호근(서울 보성고) 교사와 김재혁(서울과학고) 교사는 은상(지식경제부장관상)을, 홍상욱(대전외국어고) 교사는 특별상(조선일보사장상)을, 박인규(경기 일산동중) 교사 외 2명은 동상(특허청장상)을 수상했다.

특허청과 조선일보사가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학생 발명전시회는 학생들의 발명의욕 고취를 위해 매년 개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학생발명 축제로, 올해가 22회째이다.

한국발명진흥회는 지난 3월 2일부터 작품접수를 시작('08년 5,807점보다 799점이 증가한 6,606점이 출품)하여 서류심사, 1·2차 심사, 종합심사를 거쳐 298점이 수상작으로 선정, 지난 7월 29일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시상식을 갖고, 학생 184명, 지도교사 13명, 단체 3개교를 포상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이태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 허진규 한국발명진흥회장, 금교돈 조선일보사 실장, 박재천 한국특허정보원장, 정헌모 한국학교발명협회장, 한미영 한국여성발명협회장, 조인제 대한변리사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상 수상으로 올해의 학생발명왕이 된 이득기 학생은 “텔레비전에서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가 된다는 뉴스를 보고 고민하다 발명하게 됐다.”면서 “발명동아리 활동을 하며 다양한 경험을 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됐다.” 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대한민국학생 발명전시회에서 장려상 이상 수상자를 대상으로 지난 7월 29일부터 31까지 춘천 기화수련원에서 발명캠프를 개최하고, 금상 이상 수상자와 지도교사, 그리고 전국교원발명품경진대회 은상 이상 수상자는 해외연수(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다녀왔다.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전시장(코엑스 Hall C1)에는 학생 수상작 298점, 교원 수상작 15점 등 총 313점의 발명품이 전시되었고, 관람객들은 녹색성장 테마 전시관, 발명체험관, 특별전시, 공연 등을 통해 직접 발명을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기어비와 수압을 이용한 물 절약 수도꼭지’



이득기
낙생고 2학년

“저의 발명품으로 물 낭비를 막아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가 물 절약에 앞장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22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에서 ‘기어비와 수압을 이용한 물 절약 수도꼭지’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이득기(경기도·낙생고 2년) 학생의 수상소감이다.

이득기 학생은 물을 뿌릴 때 호스 끝을 세게 누르면 물의 세기가 강해지는 원리에 아이디어를 얻어, 적은 양의 물로 수압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수도꼭지를 발명했다.

이는, 사용자가 물의 양을 조절하는 손잡이 각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게 하고, 수도관 크기를 조절해 적은 물로 수압의 세기를 강하게 만들어 사용자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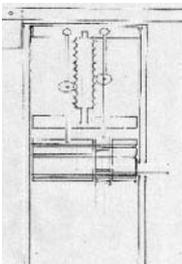
이득기 학생은 “사람들이 손을 씻을 때 불필요하게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는 것은 비누가 깨끗이 씻기지 않을 것 같은 심리 때문인 것 같다”면서 “적은 물이지만 수압을 강하게 해 만

족감을 높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고안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 제품이 실제 생활에 응용되면, 현재 1인 하루 물소비량인 374l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창업에 관심이 많아 이 아이

디어로 특허를 취득하고 창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득기 학생은 한국창의력올림피아드에서 예선부 금상을, 세계로봇페스티벌에선 2등, 한양대 로봇페스티벌 vex 부문에선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수상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도면



전체적인 모습



수도꼭지



수도꼭지 기어



물관통

에어백 원리를 이용한 휴대용 구멍 튜브

“해마다 여름철에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서 전문구조대원이 없더라도 누구나 손쉽게 휴대해 투척할 수 있는 튜브가 있다면 사고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제22회 대한민국학생발명 전시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선초롱(대전과학고2) 학생의 발명 아이디어에 대한 생각이다.

선초롱 학생이 발명한 ‘부풀어 오르는 휴대용 구멍 튜브’는 자동차 에어백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구조자가 물 밖에서 점화 고리를 작동시켜 투척하게 되면, 서서히 심지가 타들어 가 다섯 칸의 화학보관 통이 하나씩 점화되고, 이 때 나오는 가스로 튜브를 부풀리는 원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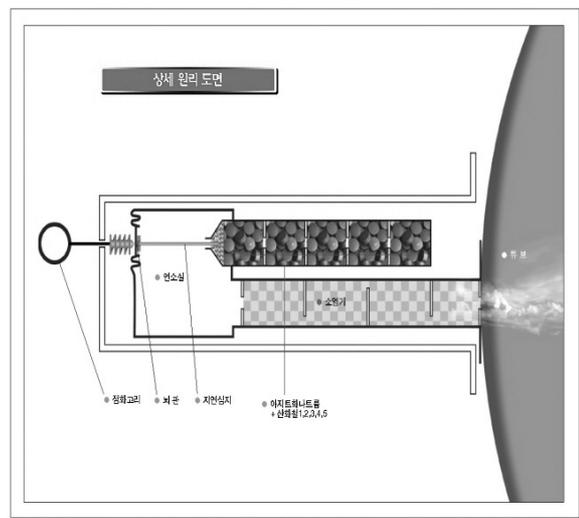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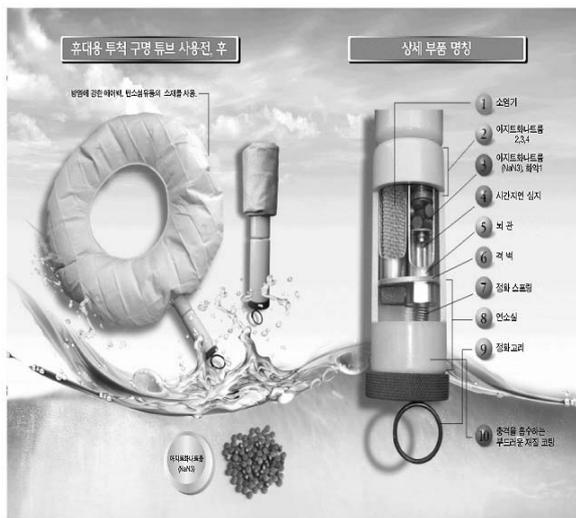
이와 비슷한 것으로 질소가스를 이용해 부풀게 하는 구멍조기도 있지만, ‘부풀어 오르는 휴대용 구멍 튜브’는 자동차 에어백에 사용되는 아지트화 나트륨(NaN_3 +산화철) 화약을 사용해 경제적인 면에서 더 실용적이다. 또 점화되면서 나오는 열과 불꽃은 소염기와 주변 냉각수에 의해 처리되게 만들어 위험을 최소화했다.

선초롱 학생은 “부피가 작아 쉽게 목에 걸어 휴대할 수 있고, 점화 고리를 한번 당기는 간단한 사용법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며, “위급 상황 발생 시에 망설임 없이 투척할 수 있어 인명구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음이 따뜻한 과학도가 되는 것이 꿈이라는 선초롱 학생은 2008년 대전광역시 발명아이디어공모전에서 동상을 수상한 바 있다.



선 초 롱
대전과학고 2학년



제22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수상자

1) 학생부문

상격	학 교	학 년	성명(지도교사)	출 품 명	시상주체
대통령상	낙생고등학교	2	이득기(서재홍)	기어비와 수압을 이용한 물절약 수도꼭지	대통령
국무총리상	대전과학고등학교	2	선초롱(이화중)	부풀어 오르는 휴대용 구명튜브	국무총리
특별상	보성고등학교	1	이강신(정호근)	sliding book stand	WIPO
	하일초등학교	5	서명빈(김정애)	부채처럼 접히는 파레트	조선일보사

상격	학 교	학 년	성명(지도교사)	출 품 명	시상주체	
금상	우송고등학교	3	김주안(심재학)	N형, 맞춤 다각도 창의력 블록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인천과학고등학교	1	김태형(현보람)	접시 꽃이(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여의도고등학교	2	이정섭(남기순)	언어장애인 및 치매인들의 치료를 위한 건강도우미 배드민턴라켓		
	인천과학고등학교	3	임재희(김정수)	Dont splash		
	경기고등학교	3	김동휘(이세종)	육상의 흠배기 장치를 활용한 전이에너지 생성기기		
	불암고등학교	3	김후수(남철주)	등하산시 밀창돌기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등산화		
	외삼초등학교	5	김민채(정진교)	몽당연필깎이 도우미 집게		
	광일초등학교	6	정윤길(이은혜)	바닥에 칼자국이 남지않는칼		
	당복초등학교	6	김홍우(박희철)	가로세로 어떤방향이든 오차가 적은 용수철 저울		
	이담초등학교	5	김서현(최선주)	실패 아니고 성공		
	이수중학교	3	한원흠(조근영)	일식삼소실 속형 신호등		지식경제 부장관
	나곡중학교	1	김혜림(권해정)	물을 아끼는 그림용 붓 씻김 물감통		
	금촌중학교	1	김보경(박영아)	들어만가는 샤프		
	과천중학교	1	손현술(전윤영)	액체를 이용한 불규칙도형의 정량적 측량법		
은상	낙생고등학교	3	임성민(남은영)	탄성력의 원리를 이용한 안전커버 납땀인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당곡고등학교	2	황경민(김양진)	자유자재 콘센트		
	서울북공업고등학교	3	최덕래(안호)	크기가 서로 다른 좌변기 받침대		
	전남과학고등학교	2	윤장현(이주숙)	획 추가 기능을 이용한 핸드폰의 영문자판		
	대전대신고등학교	1	이주한(오기영)	자동차전거 지지대		
	낙생고등학교	3	최준영(김홍식)	줄이 한번에 묶이는 펀치		
	광덕고등학교	3	정윤재	집어용 추(봉돌)		
	대전대신고등학교	1	김택범(오기영)	자동측정 줄자		
	청양정산고등학교	2	정진원(김영찬)	송아지용 사료공급통		
	청소년		유정호(홍기서)	권취력이 조절되는 안전띠		
	인천정각초등학교	6	조중훈(정은교)	큰 그릇을 올려 놓지 못하는 안전 한 휴대용 가스렌지		지식경제 부장관
	대전관저초등학교	6	이정준(황효진)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한 골대망		
	광양제철초등학교	6	조정제(이명용)	편리한 다기능 깔깔이 지우개		
	백성초등학교	6	김희애(전형수)	DSP광원렌즈보호용 카메라 받침대		
	이담초등학교	5	박동재(최선주)	냄비 뚜껑 걸이		
	동양초등학교	5	김지영(김재은)	풍선 매듭기		
	수성초등학교	6	유혜진(이미진)	쓰레기봉투 옷걸이		

상격	학 교	학 년	성명(지도교사)	출 품 명	시상주체
은상	왕복초등학교	5	안태준(박지훈)	안전 다리미	지식경제부장관
	포항제철중학교	1	탁도윤(이상복)	꽃고 뽑기가 쉬운 트는식 플러그와 콘센트	
	대전태평중학교	2	추민주(태관식)	기화식 CPU 쿨링 시스템	
	진주동명중학교	1	유자산(이교인)	티끌모아 태산(풍력발전)	
	운암중학교	3	임유진(조재만)	관절자물쇠	
	송의중학교	2	안태훈(박성우)	아빠도 즐거운 맞춤형 높낮이 싱크대	
	운리중학교	3	김성은(유미정)	안전한 압정	
	운리중학교	3	하지영(유홍순)	옷걸이 쓰레기통	
	수내중학교	3	김준영	주간용 교통지시봉	
등상	왕복초등학교	4	이합초롱(박지훈)	크기 조절이 가능한 주전자 주둥이	특허청장
	산흥초등학교	3	김희주(오재균)	거꾸로 벽에 기대어 놓을 수 있는 빗자루	
	선산초등학교	4	이재용(신우섭)	랩 절단용 칼	
	서울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6	백지원(조근영)	접하는 클립보드	
	인천초등초등학교	5	원창섭(유진)	수증기 모으는 머그컵 뚜껑	
	서울행현초등학교	5	김현서(김소영)	집열판 커튼	
	대전둔산초등학교	6	강운서(최선광)	블록렌즈를 이용한 칫솔, 컵 살균기	
	삼산초등학교	6	김효진(김미숙)	깔끔이 자	
	김포장기초등학교	4	양지석(김수열)	스키폴대 끈을 조여주는 조임버튼	
	심곡초등학교	6	권기람(김순애)	젓병 벽면 세척이 쉬운 젓병브러쉬	
	광일초등학교	4	장소정(이은혜)	호신용 열쇠 케이스	
	천부초등학교	4	오재성(김대신)	물놀이 튜브에 비람을 쉽게 넣고 뺄 수 있는 누름대	
	대구유천초등학교	5	박수빈(김기현)	안전 썸!스프레이 모기약	
	의정부신곡초등학교	5	안재희(정세종)	깔끔해!! 연필꽂이	
	대전삼육초등학교	4	정현욱(김보름)	사랑의 자석 냄비	
	제주중앙중학교	3	이주엽(김창건)	스탠드 겸용 필통	
	태정중학교	1	김성진(류신호)	뿔개시 뿔어뿔	
	대전송촌중학교	1	윤한나(윤미병)	역고드름(숫아 오르며 자라는 고드름) 생성 장치	
	한수중학교	2	김동인(안영욱)	다용도싱크대	
	대전글꽃중학교	2	홍서연(문영호)	공기방울이 생기지 않는 세로형 티슈	
	대전삼천중학교	2	권지연(류지현)	자동 화분 급수 장치	
	광양제철중학교	2	조원정(현수)	장애인을 위한 편리한 기능을 가진 생명지팡이	
	명일중학교	2	문지혜(조명현)	물백목 주사(펌프)	
	관교중학교	2	김선욱(장경현)	지하철 풍력발전기	
	운리중학교	1	신경식(노영지)	핫도그 끼우개	
	운리중학교	2	문휘주(임선희)	구준표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책상	
	신정중학교	1	고은총(임수지)	스포츠맨과 환자들을 위한 다기능 무릎보호대	
	교하중학교	3	최훈규(이원희)	자연 채광식 신발 건조대	
	운리중학교	1	이건명(노영지)	원격 조종 청소기	
	가정여자중학교	2	유우정(이화현)	짚대 자석 파일	
	세화고등학교	3	고승진(정창욱)	굴리면 고무탄성으로 수집되는 테니스공 수집기	
	군산고등학교	3	전현일(신철현)	USB 연결가능 키보드와 마우스	
주엽고등학교	2	정동길(황경환)	자동 수위 조절 민물 낚시찌		
인천과학고등학교	2	천영서(이동규)	건조효율 증대 옷걸이		

상 격	학 교	학 년	성명(지도교사)	출 품 명	시상주체
동상	우송고등학교	2	정인재(심재학)	초사계사프	특허청장
	대전지족고등학교	3	이경울(조수민)	즐기능 탐사용 확대경	
	신탄진고등학교	2	변정인(최은영)	소형적외선 수족관	
	삼산고등학교	2	임은형(이창제)	각운동량을 이용한 회전 놀이기구	
	서울과학고등학교	2	김근우(김재혁)	무(無)전자기장(전자파)전기 매트	
	대전과학고등학교	2	정준모(이정수)	배수로도 말끔히 위생 싱크대	
	의정부광동고등학교	1	남진우(이정민)	감 먹기! 참 침초	
	낙생고등학교	3	최원영(서재홍)	시간절약 주차장	
	교하고등학교	3	최성규(이경식)	계절별 다용도 달보기판	
	불곡고등학교	3	백상렬(김정욱)	반자동 빨래걸이대	
	대전대신고등학교	2	박정안(오기영)	수은방지 안전 온도계	
	대전반석고등학교	2	오유진(임윤진)	전자기 유도현상이용한자가발열칩	
	보성고등학교	1	박두술(정호근)	박스테이프의 뜰어지는 부분을 표시하는 장치	
	대구제일고등학교	2	황창선(김윤명)	파워드롭바 사이클 핸들바	
	화흥고등학교	3	강상권(박은희)	돌러뺨는 약통	
대전둔산여자고등학교	3	권수현(조종섭)	자동 달힘내부 도어를 가지는 초절전형 냉장고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대전내동초등학교	3	노현희(천가경)	똑딱 똑딱 고정장치		
은평초등학교	6	권기예(노경동)	수의범위 학습기		
사우초등학교	5	김다인(오지현)	자석을 이용한 파일 홀더 및 인덱스		
동북초등학교	2	이승하(최지혜)	샤프식 면봉 인출기		
서울가원초등학교	6	이지원(김은정)	손잡이가 달린 서류집게		
당북초등학교	4	김민혁(박희철)	자석류의 원리를 이용한 태양광 발전기		
당북초등학교	5	라제노(박희철)	이산화탄소 재활용 산소발생장치		
백성초등학교	6	서동현(전황수)	자석의 힘을 이용한 정교한 힘의 평형판		
상권초등학교	5	신지원(류명희)	서랍식 욕조		
신방초등학교	2	이지영(진우석)	비눗방울이 나오는 낙하산 놀이기구		
신일중학교	1	정노은(정영숙)	쉽게 벌어지는 머리핀		중소기업중앙회장
대전태평중학교	3	황현준(이현욱)	전구가 없어 보이는 스탠드		
대명중학교	1	신연주(고영문)	큐브알람시계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	2	전선미(박세근)	침대 떨어짐 방지벽		
유강중학교	1	김동욱(김중윤)	탈부착이 편리한 아이젠 및 운동화		
두송중학교	3	장하은(장태훈)	주방 짬순이		
삼성중학교	2	신해규(박세근)	한손으로도 쉽게 뜯을 수 있는 휴지 뜯개		
관교중학교	2	강성민(장경현)	-극도 잡고 병렬직렬연결도 마음대로 집계		
윤리중학교	2	백주승(서경욱)	커졌다 작아졌다, 쇼핑백		
한수중학교	2	김다윗(안영욱)	국물받이		
산외초등학교	6	오종욱(손민호)	명품 보은대추 성형기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번천초등학교	3	이지연(이신영)	마미마우스		
동북초등학교	2	이승하(최지혜)	각도기능이 있는 컴퍼스		
관산초등학교	5	조민서(이상환)	손잡이 강화		
고창초등학교	6	김태훈(오지현)	만능 고무장갑		
서울대모초등학교	6	김미나(조근영)	펜 메니큐어		

상격	학 교	학 년	성명(지도교사)	출 품 명	시상주체
장려상	수성초등학교	4	윤성찬(이미진)	양면테잎스티커제거기	전국경제인연합회장
	검산초등학교	6	박희연(황경화)	쓰지 않는 전원코드의 손쉬운 보관 장치	
	연현초등학교	5	장원재(김연란)	부착용 공기 주압기	
	상관초등학교	6	임지현(이금희)	나물 찌는 기계	
	서일고등학교	2	김성은(김정현)	편리한 암기 단어장	한국발명진흥회 회장
	창원토월고등학교	2	권예슬(박금화)	원격지나 행사장 어디에서도 생방송이 가능한 휴대폰	
	창원중앙고등학교	2	차현욱(박금화)	쇼파백의 손잡이용 끈의 클립 고정장치	
	포항영신고등학교	3	윤설민(신동훈)	트위스트 초크 케이스	
	검단고등학교	3	이지연(한성규)	퇴적구조 재현장치	
	속지고등학교	1	조형래(윤희영)	출자 검용 접착테이프 절단기	
	낙생고등학교	3	최원명(김홍식)	어디든지 휠체어	
	삼산고등학교	3	이다운(박나리)	머리끈의 혁명	
	대부고등학교	2	임경훈(한사영)	진지운동기록 파동의 가시화 장치	
	경기고등학교	3	김동휘(이세종)	시트분말을 사용한 줄기특성 다기능 녹색나무	
	경안고등학교	2	공현정(김태정)	Eye Stick(시각장애인을 위한 지팡이)	
	서일고등학교	2	박상호(김정현)	다용도 컵 소독기	
	성광고등학교	3	김도균(박우순)	독서 키보드	
	의정부광동고등학교	2	김영식(허웅)	수세미 세균 다 사라져!!	
	동방고등학교	3	이지혁(이창호)	회전 장치가 부착된 다기능 경첩	
	광양제철고등학교	3	류호현(송선희)	가스누출경보기의 혁명	
	성화여자고등학교	1	전여운(성미경)	움직이는 정수기 꼭지	
	인천과학고등학교	2	조아람(김해신)	영킴방지 깔꿈이 빗지루	
	대전대신고등학교	1	진수현(오기영)	2인용 사다리	
	낙생고등학교	3	박의천(김홍식)	자유운동을 하는 원커터기	
	창덕여자고등학교	2	김미서(이학섭)	담장위에 놓아도 떨어지지 않는 화분	한국특허정보원장
	상일여자고등학교	1	조주희(조정현)	창문 차광 겸용 바람 인입 장치 가 구비된 창호 시설물	
	대전과학고등학교	1	임소연(김대용)	산책 중 애원동물의 똥을 한번에 처리하는 지팡이	
	성일고등학교	3	박광동(이세훈)	장애자 하체 운동 겸 재활기구	
	보성고등학교	1	이예준(정호근)	책갈피	
	보성고등학교	3	정영석(정호근)	미아 방지용 팔찌	
	경안고등학교	3	이혜비(김태정)	화재예방 다리미	
	낙생고등학교	1	임영민(김홍식)	대기전력 손실을 방지한 손전등이 구비된 소화기	
	대전고등학교	3	강동완(박근표)	수축관용 이물질 제거장치	
경남항공고등학교	2	이윤기(이영섭)	낙하물 알림 안전모		
대전대신고등학교	1	권오길(오기영)	버스의자의 비밀공간	한국학교발명협회장	
대전외국어고등학교	1	임현경(홍상욱)	쉽게 청소되는 분필 받침대의 흡		
낙생고등학교	1	윤성호(남은영)	경사진 곳에도 세울 수 있는 자전거 받침대		
낙생고등학교	1	강명관(김홍식)	탄성력의 원리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인체모형 멀티탭		
삼일공업고등학교	1	김지중(오종환)	편리한 깔때기		
서일고등학교	1	박태규(김정현)	자외선으로 살균하는 버스손잡이		
주산산업고등학교	2	김중대(최재훈)	휴대폰을 재활용한 충전식 손전등		

상 격	학 교	학 년	성명(지도교사)	출 품 명	시상주체
장려상	초지고등학교	1	이준오(권정인)	구멍뚫린 클리어 화일	한국학교발명협회장
	보성고등학교	1	이예준(정호근)	의자등받이	
	민족사관고등학교	2	김민수	종량제 봉투를 깔끔하게 사용하는 쓰레기통	
	서일고등학교	2	윤준호(김정현)	이륜차의 자물쇠 장치	
	영훈고등학교	3	김환희(김동수)	유량 조절봉을 구비한 갈때기 (특허출원 제 10-2008-0084814)	한국여성발명협회장
	서일고등학교	2	고준수(김정현)	수불석권 단어장	
	서일고등학교	3	임현수(김정현)	간편 호출벨	
	한일고등학교	3	이석현(구기문)	블루투스를 기반으로 한 알람이 가능한 귀미개	
	성광고등학교	3	강동훈(박우순)	교통카드 잔액 알림이	
	장호원고등학교	3	김수정(서창득)	뚜껑 덮은 물뿌리개	
	광주상일여자고등학교	2	박초혜(정성채)	빛나는 콘센트	
	제주과학교등학교	2	문신영(김추식)	회전식 손톱깎이	
	경남항공고등학교	3	정재원(변홍구)	조도 유지기능이 있는 LED	
	성포중학교	3	나상혁(이기문)	부분 교체형 우산	
	장기중학교	2	김병헌(김수열)	깔끔 쓰레받이	대한변리사회장
	반포중학교	1	정제윤(조근영)	와이퍼 칠판	
	운리중학교	2	전형주(임선희)	선풍기형 드라이기	
	호수돈여자중학교	2	박소정(김대용)	붙이는 면적을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신개념 딱풀	
	도곡중학교	1	임정연(조근영)	맘대로 조절 뚜껑	
	유강중학교	2	한승훈(김종윤)	옷걸이용의자	
운리중학교	1	안현진(노영지)	휴지가 안젓는 휴지꽂이		
운리중학교	3	강민지(유흥순)	반자동전보관함		
하남중학교	3	김한술(이수자)	샐러쉬(Shaprush)		

2) 단체부문

시상종류	수상학교
특허청장	서울 보성고등학교
	경북 유강중학교
	서울 동북초등학교

제11회 전국교원발명품경진대회 수상자

상격	학 교	성명	출 품 명	시상주체
금상	송탄중학교	최수철	학교 급식용 국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은상	보성고등학교	정호근	장애우를 위한 일체형 젓가락	지식경제부장관
	서울과학고등학교	김재혁	용량에 맞춰 투약 가능한 물약병	
특별상	대전외국어고등학교	홍상욱	경사에 힘이 덜 드는 수평조절 자전거	조선일보사장
동상	일산동중학교	박인규	형광등 교체가 편리한 등기구	특허청장
	안산강서고등학교	김택중	바늘없는 시계	
	충의중학교	박정남	좌식 겸용의자	
장려상	세화고등학교	이원계	승용차 뒷창 시스템 도어	한국발명진흥회장
	충원고등학교	김종민	이동하는 편광 창문	
	신당중학교	황정혜	삼각대 기능을 겸비한 가방	
	군산제일고등학교	장주은	잠 잘 때 자세고정과 키가 커지는 밴드	
	희성초등학교	권미숙	맞춤형 디지털 온수기	
	이담초등학교	이재성	옷걸이 조절 학생의자	

제8회 전국대학발명경진대회 수상자

상격	시상주체	부문	참가팀명	학교명	발명의 명칭	성명
대상	국무총리	개인		연세대학교	포스트잇과 바코드를 이용해 녹음과 재생을 신속하게 하는 모듈	서동식
금상	교육과학 기술부 장관	개인		경기대학교	스티커 부착장치	박중현
				전북대학교	철골구조를 지닌 압사방지 소방관복	유찬우
		팀	마지막 투혼	성균관대학교	RAC의 가변형 토출블레이드	권대일, 김성환, 이성구
			아카도라	충주대학교	계단통과 바퀴	염규환, 남민현
은상	지식경제부 장관	개인		연세대학교	Function Mouse Button System(FMB)	신문식
				송실대학교	납치 및 유괴를 방지 시스템	장홍진
				중앙대학교	관절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다방향 충격흡수 신발	최재우
		팀	I.DO	송실대학교	관절보조기 용 재활운동기 (Remedial exercise Device of knee brace)	김현민, 김철인, 류정현
			BOB	송실대학교	자석의 척력을 이용한 압전소자 진동출력 안전 보도블록	이교일, 김태균, 김재현
			I&T	호서대학교	볼펜 펜마우스	이진철, 박상아
동상	특허청장	개인		경희대학교	PUMP-TUBE	고재호
				원광대학교	교통물체 파악하는 내비게이션	문형빈
				경북대학교	RFID를 이용한 알람시계	손동민
				연세대학교	열전 발전 소자를 적용한 자동 냉각 장갑	원종호
				금오공과대학교	뒤로 넘어간 물건을 인식하여 알려주는 서랍장	조성열
		팀	청결한 금자씨	송실대학교	안전 버튼살균 시스템 (Safety button sterilization system)	노경부, 방상윤, 유미향
			LAVIA	연세대학교	네비게이션과 연동하는 방향지시장치 및 그 제어방법	박승복, 정지훈, 박성현
			디스커벤션	경기대학교	풍력 발전 벽체 패널	박중현, 박순기, 백태성
			-you	홍익대학교 한양대학교	Sheet beam 평형 측정기	박창연, 김도우
			exist	금오공과대학교	친환경 발향자외선 측정 화분	강진희, 고유정, 권영삼
장려상	한국발명 진흥회장	팀	마지막 투혼	성균관대학교	물땀 방지기능을 추가한 도로변 안전펜스	권대일, 김성환, 이성구
			쌀루션	이화여자대학교 서울산업대학교	크기조절이 가능한 보관용기	권혜진, 박진국
			I.DO	송실대학교	에너지 절약전력표시장치 (DSE)	김현민, 김철인, 류정현
			IT Revolution	송실대학교	스마트폰을 위한 다기능 블루투스 키패드 (Multi-function Bluetooth keypad for SmartPhone)	남윤영, 이영민, 김기철
			아이 메디	연세대학교	휴대용 비염 완화기	노성래, 주영원
			pioneer	명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매니큐어 in 리무버	박선호, 조정은, 최윤희

상격	시상주체	부문	참가팀명	학교명	발명의 명칭	성명
장려상	한국발명진흥회장	팀	삼합	이화여자대학교	상하분획이 가능한 사물함	유주영, 김아람, 김재원
			Go to U	영동대학교 충주대학교	모발 세척기	윤창민, 장효진, 권혜진
			사이다 (思以多)	영동대학교 인하대학교 명지대학교	소음 및 역류 방지용 하수구 마개	정종훈, 이창우, 장오석
			create-1	충남대학교	수건걸이와 일체형인 화장실 수납장	조우성, 정해광, 지승현
	한국특허정보원장	개인	영남대학교	UV 살균 위머 머그컵	김기태	
			영동대학교	물의 양을 조절하는 수도꼭지 {The Bibcock Which Controls a capacity}	김시용	
			승실대학교	터널 속 암순응 사고방지를 위한 반투명 구조물	김재현	
			충남대학교	쓰레기 버리기가 용이한 쓰레받기	김흥민	
			원광대학교	조절 가능한 미끄럼방지 책꽂이	나성용	
			인하대학교	미끄럼방지 신발	남주희	
			승실대학교	롤러 문	박정수	
			중앙대학교	전기 벨로모빌 (electric velomobile)	신재원	
			한밭대학교	트랩 옷걸이	최원석	
			이화여자대학교	길이조절가능한 대중교통손잡이	최윤희	

80일간의 미래도시 이야기

80일간의 **미래도시** 이야기

"가는 곳마다 색다른 즐거움이 빛난다!"

80일간의 온 가족 지구촌 문화여행!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충진함 오감만족!

'세계문화의 거리'



미래에서 온 로봇 파라디스의
신나는 핀타지 모험 이야기!
1,000인치 Full HD 영상과
애니메이션 쇼

'주제영상관'



인천대교와
바다노을이 내 눈앞에~
환상와 입체영상 음악분수
불꽃 레이저 축제

'인천대교 &
멀티미디어쇼'



즐거움과 상상을 주는
신나는 로봇체험

'로봇 사이언스 미래관'



감동과 희망이 가득한 미래체험여행 -

인천세계도시축전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5**가지!

8. 7 - 10. 25

개 회 장 소 인천 전역 (주행사장 : 송도국제도시)
후 원 구 교 육 과 학 기 술 부, 외 교 통 상 부, 행정 인 जन부, 문화 체육 관광 부, 지식 경제 부,
민 간 부, 환경 부, 국 도 해양 부, 산 업 령 령

공 식 후원 사 포 스포 츠 관 령, 신 안 연 령, 한 화 간 념, 광 양 계 열 학 구 시 령

입 장 권 문 의 인천 세계 도시 축 전 조 직 위 혼 페 이 지, 티켓 링크 예 서
지 금 예 매 권 을 구입 하 시 면 온 가 족 이 출 반 저 원 한 비 용 으 로 '세 계 일 주 체 험 여 행' 을 즐 기 수 있 습 니 다.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Global Fair & Festival 2009 Incheon, Korea

해외연수보고서

2009 CASRIP Summer Institute를 다녀와서 32

특허확대경

특허청구범위 축소 보정의 제한 38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43

특허기술 평가결과 활용사례

(주)한국하우톤 44

IP Report

2009 CASRIP Summer Institute를 다녀와서



김 장 훈 교수
이주대학교 건축학부

글을 시작하며

CASRIP은 Center for Advanced Study & Research on Intellectual Property의 약자로 미국 시애틀의 워싱턴주립대학교 법과대학(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내에 설치된 지식재산 연구 및 교육 전문기관이다. 이번 2009 CASRIP Summer Institute 참가는 특허청 산하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주관하는 『특허에 강한 연구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이공계 교수를 위한 지식재산 교육 [T3 - Teaching The Teachers]의 연장선상에 있는 단기 해외연수 프로그램이었다. 본격적인 학술여행기를 언급하려면 먼저 건축학부 선생인 필자가 하필이면 법과대학에서 주관하는 2009 CASRIP Summer Institute에 참가하게 된 계기와 아울러 건축계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 지식재산 교육에 흥미를 갖게 된 이유를 밝히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 중에는 학부 4학년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공학종합설계 및 실습」이라는 과목이었다. 이 과목을 개설하는 학기 초가 되면 필자는 매년 수

강 후 성적과 관계없이 학생들이 도달하여야 할 세 가지 선택적 목표를 제시하고, 그 중 하나를 택하여 이루기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권면하고 있다. 세 가지 선택적 목표란 설계 결과를 첫째 각종 설계공모전에 출품하거나, 둘째 각 학회에서 주관하는 졸업논문 경진대회에 제출 또는 국내외 우수저널에 제출하거나, 셋째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공학설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졸업 후 취업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취업 이후 자기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과목의 성적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이는 어쩌면 신사협정이 라고도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렇다고 모든 학생들이 필자의 권면을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필자의 권면을 따른 학생들 중에는 설계공모전에서 입상하기도 하고 우수저널에 논문이 발간되는 성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특히 해외에서 발간되는 우수국제 저널과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지에 학부생으로서 필자와 공동으로 논문이 게재되는 학생이나 오기도 하였다. 물론 논문게재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므로 학생 졸업 후의 일이었다.

필자가 학생들에게 제시한 세 가지 선택적 목표 중 설계 공모전이나 논문게재를 선택한 학생들을 지도함에 있어서 큰 불편이나 어려움이 없었지만, 특허에 대한 구체적 지식이 없었던 필자가 특허출원을 목표로 선택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특허에 대하여 학생들을 지도하며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2009년 3월에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주관하는 이공계 교수를 위한 지식재산 교육 시리즈 [T3]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큰 마음먹고 2009년 4월부터 상반기 [T3]에 개설된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던 중 해외심화 T3 교육 - 2009 CASRIP Summer Institute에 참가하게 되는 좋은 기회까지 얻게 되었다.

출국하기 전(2009년 6월 23일부터 7월 13일)

전국 각지 8개 대학에서 10명의 이공계 교수들이 선발된 후, 해외심화 T3 교육에 참석하기 위하여 충족시켜야 할 두 가지 전제조건이 한국발명진흥회로부터 제시되었는데, 하나는 6월 23일 오후 서울에 소재한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미국 특허법의 이해」라는 3시간 동안의 영어강의를 수강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 그리고 세계지식재산 사무소(WIPO)가 공동으로 개발하여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IP Panorama 10개 영어강좌를 7월 13일까지 이수하는 것이었다. 「미국 특허법의 이해」는 미국 특허법의 체계와 소송의 절차를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강좌로서 CASRIP에서 배우게 될 학습내용을 미리 맛보는 것으로서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는 의미 있는 강의였다. IP Panorama 10개 강좌는 지식재산과 관련된 모든 것을 10개의 사례로 나누어 각 강좌 당 1개의 사례를 1시간가량 움직이는 그림(animation)으로 보여주면서 각 단계 당 몇 개의 확인 퀴즈를 풀어보게 하는,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재미있고, 그렇지만 무언가를 느끼게 하는 유익한 강좌였다. 워낙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필자인지라 의무로서 제시된 사전학습을 배움의 즐거움으로 일찌감치 마무리하였지만, 특허법에서 사용되는 전문용어, 그것도 영어로 들어야 하는 전문용어는 생소하기도 하였고, 이제는 정말로 꼼짝없이 미국의 법과대학에서 며칠간 강의를 받게 되는구나 싶어 경각심을 갖는 계기도 되었다.

출국 및 도착(2009년 7월 15일 수요일)

비행기 편은 다행히 우리나라 소속 항공사였고 7월 15일 오후 6시에 이륙하였다. 우리나라 소속 항공사라서 '다행'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른 나라 소속 항공사의 비행기로 여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이해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소속 항공사의 기내 서비스는 이미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다른 나라 소속 항공사에 비하여 항공운임은 다소 비싼 것은 사실이지만, 더 비싼 운임을 지불할 정도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필자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금전적 이유가 아니라면 우리나라 소속 항공사를 이용할 것을 주저 없이 권하곤 한다.

선발된 이공계 대학교수는 10명이었지만, 이들의 연수를 돕기 위한 한국발명진흥회 직원이 한 사람 더하여져 일행은 모두 11명이 되었다. 한국발명진흥회 직원으로서 학술여행에 합류한 사람은 산업인력양성팀의 원희재 주임이었는데 출국 전 준비 단계부터 귀국하기까지 모든 과정마다 곳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나서서 해결하여 편안한 학술여행이 되도록 일을 꼼꼼하게 챙기는 재원이다.

인천국제공항으로부터 시애틀까지는 10시간의 비행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우리나라와 워싱턴 주(州) 시애틀 사이에 존재하는 16시간의 시간차로 인하여 달력상으로 출국일과 같은 날인 7월 15일 정오에 시애틀에 도착하였다. 아! 이렇게 동(東)으로 동(東)으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면서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있다면 참 좋으련만, 시애틀 공항으로부터 Van(승합차)으로 30분가량 고속도로를 달려 UW 기숙사 중 우리 일행이 묵기로 되어 있는 McMahon Hall에 도착하였다. 시애틀 현지에서는 워싱턴주립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를 UW라는 애칭으로 부르고 있다. 기숙사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조립식 건물로 최신식 건물은 아니었지만, 그런대로 관리가 잘 되어 있었다. 개별 방을 배정받을 때 각자에게 방의 열쇠와 meal card가 지급되었는데 기숙사 담당자는 meal card는 교내 모든 식당과 매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늦은 시간에 기숙사 건물을 출입할 때와 어느 때건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오르려고 할 때에는 꼭 필요한 것이니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짐을 풀고 컴퓨터에 인터넷을 연결 한 후 기숙사 건물 저층부의 옥상으로 나가보니 저 멀리 탁 트인 바다인



University of Washington 법과대학 건물인 William Gates Hall

다운 캠퍼스였다. 법과대학이 있는 William Gates Hall은 기숙사로부터 10~15분 정도 걸어서도 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었는데 최근에 지어진 건물답게 유리로 둘러싸인 facade로 인하여 밝은 내부와 가벼운 외모를 자랑하고 있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William Gates Hall은 시애틀에 본사를 둔 Microsoft사의 Bill Gates가 자신의 아버지 이름으로 기증한 건물이라고 한다.

첫째 날(2009년 7월 16일
목요일)

첫날은 오전 8시부터 CASRIP 측에서 continental breakfast를 제공하고 오리엔테이션도 있다고 하여 부랴부랴 서둘러 William Gates Hall에 도착하였다. 아침거

리를 챙겨서 강의실로 들어가니 각자의 이름이 적힌 종이 팻말이 좌석마다 놓여있었다. 필자의 이름 팻말이 놓여있는 자리를 찾아 앉고 보니 입이 딱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책상 위에는 두꺼운 관례집 두 권과 강의 바인더 하나가 놓여있었다. 이걸 언제 다 읽나 하는 고민도 잠시,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자 CASRIP Director Toshiko Takenaka의 환영사에 이어 Summer Institute 참가자 모두가 돌아가며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시간에 교육생들의 복습을 도울 TA가 소개되었다. TA는 현재 UW 법대 학생이거나 Patent Attorney로서 practice 중인 사람들 중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었으며, 한 사람의 TA 당 6~7명의 교육생이 배정되었다. TA의 의무는 수업을 마친 오후 3시 40분 이후 자신들이 담당한 학생들과 만나 질문에 답변하는 것과 그 날 강의록을 돌아가며 정리하여 모든 교육생들에게 전자 우편으로 배부하는 것이었는데 후에 이렇게 배부된 강의록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오후 6시에 일행이 모여 기숙사 지하에 있는 cafeteria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다. 기숙사 지하라고 하였지만, 사실 건물의 장면 단변을 따라 두 면이 외기에 접하여 저 멀리 바라보이는 호수와 건물 바로 옆의 울창한 나무숲을 즐길 수 있는 우리나라의 반지하식 cafeteria이었다. 기숙사 지하 식당은 아침식사 \$7.25, 점심식사 \$9.50, 저녁식사 \$11.25를 받았는데 일단 입장하면 모든 것을 무제한으로 다 먹을 수 있는 buffet 식으로 운영되었다. 학생들이 매끼를 해결하기에는 비싼 가격이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영양보충을 하기에는 적절한 가격과 장소라고 생각했다. 저녁식사를 마친 후 삼삼오오 흩어져 캠퍼스 내부와 외부 주변을 돌아보았는데 나무와 숲과 잔디정원이 어우러진 정말 아름답

리 캠퍼스였다. 법과대학이 있는 William Gates Hall은 기숙사로부터 10~15분 정도 걸어서도 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었는데 최근에 지어진 건물답게 유리로 둘러싸인 facade로 인하여 밝은 내부와 가벼운 외모를 자랑하고 있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William Gates Hall은 시애틀에 본사를 둔 Microsoft사의 Bill Gates가 자신의 아버지 이름으로 기증한 건물이라고 한다.

오리엔테이션에 이어 바로 강의가 시작되었다. 스케줄에 따르면 7월 16일 목요일과 17일 금요일의 수업은 Pre-

Conference Program으로서 7월 20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Plenary Session 교육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성격을 띤 것으로서 미국의 특허법 (U.S. Patent Related Law) 전반에 관하여 정리하는 과정이었다. Pre-Conference 를 통하여 정리한 과정은 Legal English, Common Law, Trademark Law, Litigation Overview, Trade Secret Law, Copyright Law 등이었다. 둘째 날부터 수업은 오전 8시 40분 정각에 시작하여 오후 3시 40분에 마친다고 하였다. 첫 날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Legal English for International Attorneys (Dana Raigrodski): 판례(case)와 관련된 30개의 어휘; 민사(civil)와 관련된 27개의 어휘; 심판(trial)과 관련된 23개의 어휘에 대하여 정의
- Common Law for International IP Attorneys (Signe H. Naeve): 미국의 법체계 및 역사 소개; 미합중국의 정체(政體 Constitution)는 7개 조항으로 구성; Amendment를 통하여 인권보호, 주정부의 인권침해 방지, 사생활권(Right to Privacy); 3권분립(3 Branches of Government); 헌법 3조 1항 (Constitution Article III, Sec. 1)에 의한 연방법원 구성은 94개의 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s), 12개의 지역 상소법원 (regional [circuits] Appellate Courts),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
- U.S. Trademark Law Introduction (Michael Atkins): 1950년 채택된 Lanham법에 따르면 상표(trademark)는 출처를 나타내는 모든 것(source indicator)—이름, 모양, 촉감, 소리 등 포함; 상표권의 침해요소(trademark infringement); 구제방법 (Remedies)

둘째 날(2009년 7월 17일 금요일)

아직 시차 적응이 되지 않아서인지 매우 이른 아침인 새벽 4시경에 눈을 떴다. 아니 눈이 떠졌다고 하는 것이 옳다. 시차 탓도 있었지만, 새소리에 깨어났다고 하는 편이 옳을 정도로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해맑고 선명하였다. 잠을 더 청해보았자 소용없을 것 같아 일찌감치 샤워하고 책상에 앉아 책을 보다가 오전 6시 30분경부터 기숙사 지하 cafeteria의 아침식사가 시작되는 시간인 7시 30분까지 기숙사 주변 캠퍼스를 산책하였다. 산책길에 뛰노는 다람쥐들, 그가운데를 유유자적 거니는 청둥오리가죽 그리고 마

치 필자를 따라오며 노래하듯 앞서거니 뒤서거니 날아다니며 종알대는 각종 새들은 캠퍼스 내 아름다운 건물주위를 감싸며 우거져 서서 굽어보고 있는 나무들과 그 아래로 펼쳐진 잔디와 함께 살아있는 한 폭의 그림이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적절한 말이 없었다.

오늘부터는 자신의 이름 팻말을 가지고 원하는 자리 어디에나 앉을 수 있다고 했지? 30년 전 대학생으로 되돌아간 기분으로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하여 William Gates Hall을 향하여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오늘은 프로그램 참가자 전원에게 locker와 지물쇠가 지급되었다. 무거운 책과 물건을 일일이 들고다니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좋았다. 하루수업을 마치고 오후 5시부터 UW 캠퍼스를 남서쪽으로 살짝 벗어난 호숫가의 멕시코 식당 야외에서 환영파티가 열렸다. 음료와 도넛라칩 그리고 멕시코 치즈피자가 무제한 제공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파티가 끝날 무렵 이탈리아에서 온 교육생 세 명이 이탈리아 노래를 부르자 그 다음으로 미국, 한국, 일본에서 온 교육생들이 그 뒤를 이어 자신들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우리 일행은 '과수원 길'을 불렀다. 둘째 날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U.S. Litigation Overview (Douglas Stewart): 특허법은 35 USC § 100 (general law) 이하, 주요 규정은 §271 (infringement), §284 (damages), §102 (Anticipation), §103 (Obviousness)
- U.S. Trade Secret Law Introduction (Linda Norman): State law에 의하여 유지되며 International Treaties (GATT)에 의하여 국제적으로 유효; 영업비밀 보호법(Statutory Protection)은 Uniform Trade Act (1979)로서 18 USC §§1831-39, 178 USC §1030, 18 USC §§1341, 1343, 18 USC §§1961-68, 18 USC §§ 2311-33, 18 USC §1029
- U.S. Copyright Law Introduction (Signe H. Naeve): 저작권법 (copyright law)의 유래; U.S. 저작권법 (Copyright Act of 1790, 1909, 1976 Act, 1980 Amendments, 1988 U.S. ratifies Berne, 1998 Sonny Bono Copyright Term Extension Act, 1998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셋째 날(2009년 7월 18일 토요일)

오늘은 수업이 없는 주말이라 가벼운 마음으로 일행과

함께 알래스카를 제외한 미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해발 4392 m이고, 연중 만년설로 덮여있으며, 시애틀에서도 보이는 그 유명한 레이니어산(Mt. Rainier)에 올랐다. 레이니어산은 시애틀로부터 남쪽으로 약 87 km 위치에 있다고 하는데 2시간 30분가량 자동차로 달려 도착하였다.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벗어나 레이니어산이 위치한 동네로 접어들자 활동기금을 모으려고 세차(car wash)를 하고자 손 팻말을 들고 손님을 부르는 초중고 학생들이 여기저기 눈에 띄었다. 거리에 비하여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비록 자동차로 달렸지만 산에 다가가서 오르는 길에 울퉁불퉁한 구간이 적지 않았고 가파른 구간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미국 독립기념일로부터 한 달간은 국립공원의 입장료를 받지 않아서인지 산을 오르는 자동차가 평소보다 많다고 하였는데 주차장에 들어서니 그 말이 실감났다. 산의 한쪽 면에 올라 김밥으로 점심을 먹고 잠시 언덕을 오른 후 아래로 내려와 Paradise라고 불리는 다른 쪽 면을 올라 자동차를 주차시키고 나서 이번에는 첫 만년설이 만져지는 곳까지 오르기로 하고 30분가량 언덕을 올랐다. 저 멀리 언덕진 초장에 사슴 한마리가 평화로이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시애틀에서 바라볼 때 만년설로 덮인 레이니어산의 모습

은 그야말로 장엄하고 엄숙하였는데 막상 가까이에서 보니 눈으로 덮인 면적이 생각했던 것만큼 크지 않은 것 같아 조금 실망스럽기도 했고, 이리다 만년설마저 녹아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기도 하였다.

레이니어산에서 돌아오는 길에 타코마 만 지역(Tacoma Bay Area)에 위치한 한식당(Korean Restaurant)에서 저녁 식사를 하였는데 한국을 떠난 지 그리 오랜 시간이 흐른 것은 아니었지만 한국인에게 한국음식이 가장 좋다는 평범한 진리(?)를 확인하기에 충분하였다.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는 시애틀 waterfront가 바다다보이는 건너편 해변에 들러 시애틀의 skyline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말 이해면이지 해변을 끼고 나 있는 2차선 도로 건너편에는 주거용 콘도들이 즐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많은 큰 배들이 다니거나 정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애틀 waterfront의 물은 한없이 깨끗하고 맑아보였다. 어찌면 주거지역 바로 앞의 바닷물을 그리고 큰 도시와 면해있는 바닷물을 이렇게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을까?

넷째 날(2009년 7월 19일 일요일)

우리 일행은 오전에 시애틀의 한 한인교회에서 예배드린 후 오후에는 시애틀 북부 Everett에 위치한 비행기 제조회사 Boeing사의 공장을 견학하였다. 이는 지식재산 해외연수의 취지와도 부합하는 것이어서 모두 설레는 마음으로 견학에 나섰다. 세계 최대 비행기 제조공장이라서 그런지 공장구입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우선 공장구입의 안내건물에 들러 그곳에서 배정된 안내인의 안내를 따라야 공장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 안내건물은 Boeing사 비행기 제조공정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보여주는 영화 상영관, 기념품을 파는 커다란 가게, 비행기 박물관 및 휴게공간을 갖추고 있었으며, 공장구입에 있는 안내건물 치고는



만년설이 덮인 워싱턴 주의 상징 Mountain Rainier 산

꽤 크고 시설이 좋은 최신의 건물이었다. 그리고 보니 저 멀리 바라보이는 공장건물과 활주로를 품고 있는 대지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었고, 큰 길에서 공장으로 들어서는 지점에는 호텔이 있어서 공장방문이 관광의 한 코스임을 짐작케 하였다. 공장건물은 조립공장, 도색공장, 시험비행을 담당하는 건물 겸 격납고 모두 세 채로 구성되어 있었다. 건물의 수는 많지 않았지만, 건물의 크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건물들이었다. 일례로 조립공장은 건물 부피로 따질 때 세계 최대라고 하며, 건물의 극히 일부에 붙어있는 유명 영화배우가 팔을 벌리고 바람을 향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은 건물에 붙은 광고판으로는 세계 최대라고 한다.

안내건물에서 15분 정도의 Boeing 선전 영화를 관람한 후 영화관 안의 관람객은 두개조로 나뉘어 안내인과 함께 버스에 올라 조립공장 건물로 향하였다. CCTV가 설치된 몇 개의 철문을 통과한 후에야 공장건물 중 우리 일행을 포함한 삼십여 명의 방문객이 내리도록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지하실을 통하여 조립라인을 구경할 수 있는 데크(deck)로 오르는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었다. 조립라인은 전망 데크로부터 아래로 구경할 수 있었다. 우리가 본 공정은 Boeing 747과 최신 기종인 787의 조립라인이었고, 우리의 위치로부터 가장 가까운 조립라인의 거리가 수십 미터에 달하는 규모였다. 100%는 아니겠지만, 일요일인데도 조립라인은 가동되고 있었다. 안내인에 따르면 공장건물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총 수는 3만 명이라고 한다. 비행기 제조가 얼마나 기술 집약적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서 Boeing 747 비행기 한대에 들어가는 전선의 길이가 (필자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하지 못하여 안타깝지만) 자그마치 십수 마일에 달한다고 한다. 참고로 1마일은 1.6 km의 거리이다. 최신 기종으로 개발된 Boeing 787은 연료효율이 매우 높아 한 번 주유로 세계 어느 공항에든지 쉬지 않고 날아갈 수 있어 항공사들이 선호하는 기종이지만, 화물용 비행기로는 용량이 큰 Boeing 747 이 아직도 인기가 높다고 한다.

안내건물로 돌아와 휴게 공간에 자리를 잡고 준비해 온 샌드위치로 점심을 해결하고 돌아오는 길에 일행 중 한 분이 Boeing 조립공장 및 박물관 견학을 하며 얻은 지식으로 퀴즈를 내었다. 여객기가 비행고도를 왜 10000 m 상공으로

유지하며 비행하는지? 더 올라갈 수는 없는 것인지? 비행기의 가장 효율적인 엔진의 위치는 날개 위, 날개 중심, 날개 아래 중 어디인지? 답이 궁금한 독자는 필자에게 연락하면 퀴즈를 낸 교수분께 연결해 줄 수 있음을 밝힌다.

다섯째 날(2009년 7월 20일 월요일)

William Gates Hall에 들어서니 또 입이 딱 벌어질 것이 기다리고 있었다. 10 cm 정도 두께의 바인더가 딱 채워진 이 주간의 강의록. 이래서 법은 필자와 같은 범부(凡夫)가 공부하기에는 어려운 것인가 보다. 다섯째 날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Patent Basics 1 (Toshiko Takenaka) – Patentability: 특허요건 (Requirements for Patent) 중 대상물 (§ 101), 공개의무 (§ 112); Bilski 이전의 특허대상 시험 (Pre-Bilski Federal Circuit Eligibility Test); Bilski 이후의 특허대상 시험 (Post-Bilski Federal Circuit Eligibility Test)
- Patent Prosecution 1, 2 (David Carson) – Pre-Filing and PTO Practice: 강의의 목적은 “특허 법률대리인으로서 어떻게 일 할 것인가?” (“How to work as a patent attorney?”) 이고 강의록 없이 Mr. Carlson의 경험을 white board 이용하여 나누었음
- Patent Enforcement 1 (Paul Meiklejohn) – Litigation: 소송의 7단계는 소송제기 전 단계 (pre-filing consideration), 변론 (pleading), 증거게시 (discovery), 재판 전 단계 (pre-trial), 재판 (trial), 재판 후 명령 요청 (post-trial motions), 항소/상고 (appeal); 특허침해 (patent infringement)에 대한 두 가지 심사는 Affirmative patent infringement, Declaratory judgment action

다음호에 계속

발명특허 2009_9

특허청구범위 축소 보정의 제한



공영민 변호사
한일국제특허사무소

I. 서

특허권은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보호되므로, 출원인은 가급적 특허청구범위를 넓게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유기화학 분야에서 새로운 신물질에 대한 특허출원 시, 실제 제조된 신물질은 물론 그 주변 화합물까지 범위를 확장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특허청구범위가 넓을수록 특허심사과정에서 유사한 선행문헌이 조사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특허청구범위를 축소하는 보정은 당연히 허용된다는 전제하에 특허출원 시 넓게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하고 추후 조사된 선행된 문헌과 문제되는 경우 특허청구범위를 축소한다는 전략으로 출원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특허청구범위를 축소하는 보정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하에서 보정제도와 특허청구범위를 축소하는 보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본다.

II. 명세서 보정에 관한 규정

1. 보정 제한 규정

동일한 발명이 2 이상 출원되었을 때 어느 출원인에게 특허권을 부여할 것인가 하는 것은 특허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로 크게 대별되며, 선출원주이란 발명의 이루어진 시기에 관계없이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발명에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고, 선발명주의는 출원의 순서와 상관없이 먼저 발명한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먼저 발명한 자에게 권리가 부여된다는 선발명주의가 이상적으로는 가장 바람직하지만, 발명의 시기의 불분명성, 행정적 절차의 불편함 등 실질적으로 이를 제도화하기 힘든 측면이 있어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다.¹⁾

선출원주의 하에서는 출원의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발명을 하게 된 이후 출원까지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이로부터 많은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데, 대표적

으로 출원 시 명세서의 내용에 불비한 사항이 포함되는 것이다. 이러한 선출원주의의 결점을 보완하여 명세서의 내용에 불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하지를 출원일로 소급하여 치유하게 하는 보정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보정을 무제한 허용하게 되면, 출원 후 명세서에 새로운 내용 등을 추가하는 등 선출원주의의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또한 보정은 당초의 출원일로 소급하여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제3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정 시기 및 보정 범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여 보정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로, 보정의 허용범위는 선출원주의로 운용되는 특허법상 피할 수 없는 제한 규정이며, 대표적으로 한국과 유럽은 다음과 같은 보정 제한의 규정을 두고 있다.

한국 특허법 제47조 제2항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를 할 수 있다.

유럽 특허법 제123조 제2항

The European patent application or European patent may not be amended in such a way that it contains subject-matter which extends beyond the content of the application as filed.

상기 규정 모두 ‘최초’로 출원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범위 내에서만 보정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 ‘최초’라는 용어는 보정 제도가 선출원주의를 보완하는 제도임을 설명함과 동시에, 보정의 제한 또한 선출원주의의 범위에 있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나타낸다.

2.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의미

상기 보정의 제한 규정에 따라,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

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여기서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이란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외형상 완전하게 동일한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명세서 등의 기재로 보아 지명한 사항도 이러한 범위 안으로 간주한다. 예컨대, 명세서 내에는 발명의 구성을 기재하여 놓았는데, 이 부분이 특허청구범위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특허청구범위에 그 내용을 추가하는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내의 보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명세서에 그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문맥상 명확한 오기입이 자명한 경우 또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로 판단되나 그러한 용어가 명세서 전반에 걸쳐 통일되어 있지 않아 하나의 용어로 통일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내의 보정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심사과정에서 선행문헌 등이 조사되어 이로부터 특허청구범위 일부에 거절이유가 존재하는 경우, 출원인은 특허청구범위 일부를 삭제하여 나머지 발명의 내용에 대해서는 특허를 도모할 수 있다. 특히 특허청구범위에서 청구하는 내용을 좁혀 특허를 도모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 때에도 보정제도의 규정이 적용되는데,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내의 보정의 범위 내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상식적으로 범위를 감축하는 보정은 당연히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내의 보정의 범위 내로 생각하기 쉬우나, 특허법의 해석상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보정이라 하여 반드시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내의 보정의 범위 내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특허법상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보정이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내의 보정의 범위 내로 본다는 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보정이 새로운 발명으로 해석되어 선출원주의의 원칙에

1) 각국의 특허제도를 통일하여 실제심사 또한 통일화하려는 특허실체법조약(SPLT, Substantive Patent Law Treaty)에 있어, 미국의 선발명주의는 특허제도의 국제적 통일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경우도 선발명주의를 포기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벗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화합물 출원과 관련하여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보정, 특히 일부 치환기를 삭제하는 보정이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 내의 보정의 범위 내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유럽 관례를 통하여 이를 보다 자세히 검토해 보기로 한다.

III. 일부 치환기 삭제 보정에 관한 유럽 관례 분석

1. 화학발명의 특수성

화학물질이란 화학적 방법 즉 화학반응에 의해 제조될 수 있는 물질을 말하는데, 특히 유기화학물질이란 탄소와 수소 및 비금속원소(산소, 질소, 염소, 플루오르 등)로 구성된 화합물을 말한다. 그런데 유기화학분야에서는 화합물의 구조를 변형하는 것이 통상적인 연구분야이고, 이에 따라 실제 사용되는 화합물을 모방한 화합물이 제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유기화학물질에 대한 특허출원 시에는 핵심적인 화합물을 고려하여 그 구조의 범위를 확장하여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특허청구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조사될 선행문헌의 범위 또한 넓어지게 되는데, 선행기술에 따른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경우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보정을 통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극복하게 되는데, 이 경우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보정이 보정제한 규정하에 허용되는 것인지 문제된다.

이하에서는 특허청구범위에서 일부 치환기를 삭제하여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에 대해, 이러한 보정이 보정제한 규정을 위배하지 않는지를 판단한 유럽 관례를 검토해본다.

2. 사건의 개요

(1) 특허출원 번호 및 공개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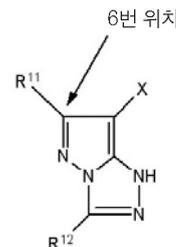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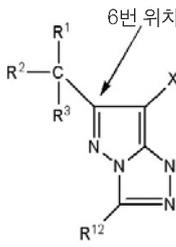
유럽특허출원번호 제85111246.6호에 대해 특허청 심사과정에서는 등록결정이 되었으나 제3자에 의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되었다.²⁾

(2) 이의 신청 및 쟁점

이의신청인은 심사과정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선행기술을 제시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출원인은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보정을 제출하면서 이에 대응하였다.

(3) 출원인의 보정

출원이 보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명세서의 기재에 대하여 실시예로 기재되어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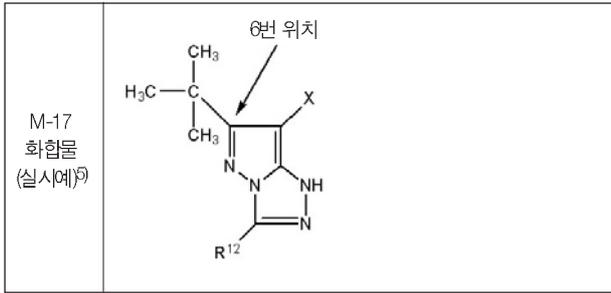
(보정전)	 <p>6번 위치</p>
	<p>R¹¹은 -C(R¹)(R²)(R³) 알킬 그룹이고; R¹은 직쇄 또는 가지쇄 또는 사이클릭 알킬 그룹이고; R² 및 R³는 각각 수소, 할로겐, 알킬그룹, 아릴그룹, 헤테로 사이클릭 그룹, ... 이고;⁴⁾(하략)</p>
(보정후)	 <p>6번 위치</p>
	<p>R¹은 직쇄 또는 가지쇄 또는 사이클릭 알킬 그룹이고; R² 및 R³는 각각 알킬그룹이고; (하략)</p>

2) 출원인은 Fuji Photo Film Co., Ltd 였고, 이의신청인은 Konica Corporation 이었다.

3) 실제 청구항 및 M-17 화합물은 더욱 복잡하나 사례의 설명을 위하여 쟁점이 되었던 부분만으로 기재하였다.

4) 실제 청구항에서 R² 및 R³는 매우 다양한 치환기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여기서는 사례의 설명을 위하여 5개만 기재하였다.

5) 실제 M-17 화합물은 더 복잡한 화학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여기서는 사례의 설명을 위하여 M-17 화합물 중 관련되는 부분만 기재하였다.



는 M-17 화합물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다. 보정 전후의 청구항 및 M-17은 다음과 같다.³⁾

상기 보정내용을 검토해보면, 출원인은 보정전 R²와 R³의 정의에서 알킬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치환기를 삭제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출원인은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한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 내의 보정의 범위 내인 것이고, 또한 보정된 R²와 R³는 실시 예로 기재된 M-17 화합물에 의하여 뒷받침 되는 것이므로, 보정 제한 규정을 위배하지 않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반면 이의신청인은, 명세서에 R² 및 R³가 알킬그룹을 포함한 다양한 치환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기재되어 있을 뿐, 알킬그룹으로 한정된다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으므로 이는 보정제한 규정에 위배되고, 또한 M-17 화합물은 R² 및 R³가 각각 메틸이긴 하나, 이로부터 R² 및 R³가 알킬그룹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보정 제한 규정을 벗어나므로 보정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4) 일부 치환기 삭제에 관한 유럽 관례의 판시내용

상기의 쟁점에 관하여, 유럽 관례는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보정의 경우에도 보정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상기와 같은 보정은 보정제한 규정을 벗어난 보정이라고 판시하였다.

유럽 관례는 상기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논리를 도출하였다.

1) 보정제한의 의미

특허법상 보정제한 규정을 두는 이유는, 심사과정에서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범위 내의 범위의 사상이 추가하는 부당한 이득을 가지는 것을 방지하고,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참조하는 제3자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

하였다.

즉, 특허출원서가 제출된 이후에 새로운 사항이 추가되는 것은 선출원주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고, 제3자는 최초 출원된 명세서를 참조하여 후속발명 또는 실시를 도모하게 되는데, 출원인이 출원후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게 되면 이러한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고 판시하였다.

2) 특허청구범위가 감축되는 경우에도 허용여부

또한 이러한 보정제한 규정은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며, 화합물의 일부 치환기의 정의를 삭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보정은 범위가 줄어드는 것이므로 당연히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 내의 적절한 보정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관례는 분명하게 감축하는 보정의 경우에도 보정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3)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내에 대한 판단

이에 따라 출원인에 의해 보정된 보정 후의 청구항의 내용이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 내에 기재되어 있는지가 판단되었다. 즉, 본 사례에서는 보정 후의 청구항의 내용, 보다 구체적으로는 “R² 및 R³는 각각 알킬그룹”이라는 내용이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 내 인지가 판단되었다.

먼저 명세서 전반에 걸쳐 R²와 R³는 알킬그룹을 포함한 다양한 치환기가 될 수 있다는 기재가 있을 뿐, “R² 및 R³는 각각 알킬그룹”이라고 제한한 설명은 명시적(explicitly)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판시하였으며, 이는 출원인도 인정하였다.

다만, 이러한 제한 설명이 명세서로부터 암시적(implicitly)으로는 기재되어 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출원인은 M-17 화합물이 기재되어 있고 이의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M-17 화합물에서 R² 및 R³는 메틸이므로 이로부터 보정된 “R² 및 R³는 각각 알킬그룹”이 뒷받침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관례는 R² 및 R³가 알킬그룹만으로 보정됨에 따라 전체 화학식에서 6번 위치에 치환되는 것은 3차 알킬이 되는 것이고, 3차 알킬인 경우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M-17 화합물만으로는 유추될 수 없는 것이

므로, M-17 화합물에 의하여 “R² 및 R³는 각각 알킬그룹” 이 암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출원인은 화합물 출원에서 선행문헌과의 차이 점을 두기 위하여 일부 치환기를 삭제하는 보정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정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그러한 보정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치환기의 일부를 삭제함에 따라 ‘특별한 의미의 구체적인 조합(a particular combination of specific meanings)’이 도출되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본 사례에서는 “R² 및 R³는 각각 알킬그룹”으로 보정됨에 따라 전체 화학식에서 6번 위치에 치환되는 것은 필수적으로 3차 알킬이 되는 것이어서, 이는 특별한 의미의 구체적인 조합으로 보정된 것이기에 이러한 보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즉, 특허청구범위가 감축되는 보정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보정은 반드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하였으며, 그러한 감축에 대한 내용이 명세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또는 특허청구범위가 감축되는 보정이 ‘특별한 의미의 구체적인 조합(a particular combination of specific meanings)’을 도출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

서 또는 도면 내의 적법한 보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IV. 결

강력한 특허권을 위하여 출원인은 가급적 특허청구범위를 넓게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특허청구범위가 유사한 선행문헌이 조사될 확률이 높아지므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적어지게 된다.

그런데 선행문헌이 조사되더라도 특허청구범위를 축소하면 해결된다는 전제하에 특허청구범위를 넓게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특허청구범위를 축소하는 경우에도 엄격한 제한이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출원인은 가장 합리적인 범위로 특허청구범위를 넓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넓은 특허청구범위를 보다 한정된 종속항을 기재함으로써 추후 특허청구범위의 축소를 하는 경우를 대비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넓은 범위의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할 때에는 이를 더욱 한정된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임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구두에 의한 개시 [지재권일반]

서면에 의한 개시가 아니라 구술발표 등과 같이 구술에 의해 절차를 개시하는 것.

구두변론 [법일반]

당사자 쌍방이 구술에 의하여 판결의 기초가 될 심판(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심판(소송)을 심리하는 절차.

구금 [법일반]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가두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강제처분.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집행하며, 형이 확정되면 구금일수를 산입하여 형을 집행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함.

교부송달 [법일반]

송달을 받을 이에게 직접 서류의 등본을 교부하는 방법. 다른 방법으로는 공시송달, 우편송달이 있음.

광고선전기능 [상표]

상표의 상품에 대한 심리적인 인상작용을 동적인 측면에서 파악한 것으로 상표를 수단으로 하여 거래사회에서 상품의 구매의욕을 일으키는 판매촉진수단으로서의 상표의 기능을 말함.

관할수리관청 [특허]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을 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관청으로서 특허협력조약(PCT) 규칙 제19조에 따르면 출원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의 국내관청 또는 그 체약국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관청이거나 출원인이 국민인 체약국의 국내관청 또는 체약국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관청, 또는 WIPO 국제사무국이 해당됨.

관할권 [법일반]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간에 본래 국가에 귀속되어 있는 재판권을 어떻게 분할하여 행사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을 관할이라 하며, 정하여진 관할에 따라 재판을 하는 권한을 관할권이라고 함.

출처 특허청 홈페이지

특허기술 평가와 전세계 하우톤 라인을 결합,
세계시장에 도전하다

친환경 新제품으로 지속가능기업으로 발돋움할 터



(주)한국하우톤

150여 년 역사의 미국 Houghton International & Inc와 자본 합작 및 기술제휴로 지난 1974년 설립된 한국하우톤은 금속 가공유 및 특수유 분야의 전문 기업이다. 또한 이 회사는 지난 2002년 환경친화형 금속가공유인 'Tectyl' 을 개발하여 아시아 시장은 물론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40여 개의 지사 및 판매사, 대리점을 갖추고 있다.

(주)한국하우톤은 동종업계 최초로 설립한 기업부설중앙연구소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해 왔다. 또한 최근에는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고가의 석유계 기름이 아닌 식물성 기름과 식물성 오일의 유도체로 만든 100% 천연식물성 금속가공유를 세계 최초로 개발함으로써 그 저력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금속가공유(이하 절삭유¹⁾)는 일반적으로 원액으로 사용하는 비수용성 절삭유와 물로 희석해서 사용하는 수용성 절삭유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비수용성 절삭유는 극압첨가제²⁾의 유무와 구리에 대한 부식 정도에 따라 1, 2, 3, 4종으로 구분되며, 수용성 절삭유는 희석액의 걸도양 및 광유³⁾와 계면활성제⁴⁾의 비율에 의해 W1종, 2종 3종으로 나뉜다.

또한 이러한 절삭유에는 윤활기유(Base Oil)가 사용되는

데, 이러한 윤활기유에는 일반적으로 원유 정제과정 중 가장 마지막 공정에서 생산된 석유계 탄화수소 윤활기유를 주로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절삭유는 그간 사용하는 사람의 건강을 해쳐 왔으며, 환경을 위협해 온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의 구성 물질이 인체 및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학물질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요즘에는 가장 혼합비율이 높은 석유계 기유 및 첨가제의 발암성에 대한

1) 금속을 자르고 깎는 따위의 가공을 할 때에 쓰는 기름. 마찰·저항을 줄여 열을 식히고 정밀도를 높이며, 공구를 보호하기 위하여 친다.

2) 유히화합물, 염소화합물, 인화합물 등 베어링, 맞물린 기어 등이 늘어붙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윤활유에 첨가하는 물질.

3) 석유와 같은 광물성 기름

4) 물에 녹기 쉬운 친수성 부분과 기름에 녹기 쉬운 소수성 부분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다.

우려도 보고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이유로 구성 물질 중 nitrite, 염소화파라핀 등은 이미 해외에서 그사용이 규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사용을 규제하거나 불가피하게 사용할 시에는 그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성능 위주의 제품 설계로 인해 이러한 독성 정보에 관한 사항이 비중 있게 인식되지 않았던 것이 국내 및 전세계 경향이었다.

식물 윤활기유 사용한 수용성 절삭유 개발 '성공'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이러한 경향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전세계적으로 환경보호의 중요성 및 작업지들에 대한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절삭유 구성물질 중 특히 발암성 물질 및 중금속 성분을 가진 물질이 우선적으로 배제되기 시작하였으며, 염소계 물질을 얼마나 포함했는가에 따라 관련 규정도 생겨났다.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절삭유에 들어가는 탄화수소계 윤활기유를 대체할 환경친화형 윤활기유에 대한 연구가 북미나 서유럽 등에서 국가적인 차원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해외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우리나라 석유시장 역시 유가상승에 따른 원가부담을 더는 한편 친환경적인 제품의 요구에 대응하고자 식물성 오일을 원료로 한 제품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그간 식물성 오일들은 주로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환경수용성 윤활기유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

한편 이러한 식물성 오일을 생산할 수 있는 식물은 25만 종 이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중 100여 종만이 상업적 생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어 있으며, 다시 이 중 22종의 식물성 오일만이 상업적인 규모로 생산되고 있다. 대두유, 채종유, 야자유, 올리브유, 해바라기유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관련 업체들은 절삭유 조성물의 유효성분으로서 환경친화형 윤활기유로

사용할 수 있는 생분해성⁵⁾이 우수하고 유독성이나 생태학적 독성이 적으며 윤활성이 뛰어난 식물유 메틸 에스테르, 식물성 오일, 합성에스테르를 이용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우수한 성능은 그대로 발휘하면서도 독성이 의심되는 물질을 사용하지 않은 수용성 절삭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식물유를 윤활기유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는 그간 관련 업계가 식물유의 가능성에 주목하면서도 활용에 적극 나서지 않는 이유이기도 했다.

비수용성 제품의 경우 산화안정성 및 낮은 유동성의 단점을 어떤 방법으로 극복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수용성 제품의 경우 희석 사용 시 미생물 성장에 의한 부패를 어떤 방법으로 극복할 것인가가 해결되어야만 한다.

(주)한국하우톤 역시 절삭유 생산시 필요한 석유계 탄화수소 윤활기유를 석유정제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했기 때문에 유가상승 등으로 원가상승이 나타날 것을 우려, 일찌감치 윤활기유를 식물유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한 수용성 절삭유 개발에도 힘을 쏟았다.

그 첫 단계로 (주)한국하우톤은 식물유 에스테르에 주목했다.

식물유 에스테르는 윤활성이 뛰어나 석유계 탄화수소 윤활기유 대신 사용할 경우 가공성이나 세정성 등에서 우

5) 물질이 미생물에 의하여 분해되는 성질



수한 성능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또한 독성이 적고 생분해성이 높아 토양에 유출되었을 경우 토양의 오염이 탄화수소계 윤활기유에 비해 적다는 점도 (주)한국하우톤이 식물유 에스테르에 주목하는 이유였다.

또한 (주)한국하우톤은 식물성 윤활기유를 활용한 수용성 절삭유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된 미생물 성장억제를 위해 국내 및 해외와 기술교류를 하는 한편 장시간 자체 연구를 통해 자체 기술을 확보했다. 기존의 방부제로의 성장을 억제하지 않고 금속가공유에 발생할 수 있는 미생물을 찾아 이 미생물 성장을 효과적으로 억제 가능한 신규 물질(유동점 강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첨가제)을 도입하여 적용한 것이다. 이를 통해 영하 20도까지는 절삭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주)한국하우톤은 '식물성 오일 및 합성 에스테르를 이용한 수용성 절삭유 조성물'로 '권리등록번호 특허·실용 제10-0486624호'를 획득했으며, 이 제품은 지난 2005년 12월에 특허청 주최 '100대 우수특허제품'에 선정되어 특허청장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2008년에는 친환경 절삭유의 개발로 기술혁신의 실적이 인정되어 '철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사업성 평가 통해 생분해도 '합격점' 받아

하지만 (주)한국하우톤은 이처럼 괄목할만한 기술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업적 성공을 거두기 위해 '식물성 오일 및 합성 에스테르를 이용한 수용성 절삭유 조성물'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방법이 필요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기유화시험연구원이 특허기술 사업성 평가를 진행해 보면 어떻겠냐며 뜻밖의 제안을 해왔다. 이에 (주)한국하우톤 식물성 절삭유의 가장 큰 장점인 생분해도를 공인기관인 한국기유화시험연구원으로부터 검증받는다면 이만한 홍보자료는 없겠다 싶었다. 또한 외부기관으로 이처럼 다양한 검증을 이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회도 흔치 않다고 싶었다. 결국 (주)한국하우톤은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로부터 평가수수료의 80%인 2천2백8십만 원을 지원받아 지난 2007년 4월 2일부터 같은 해 9월 7일까지 한국기유화시험연구원과 공동으로 기술성 평가 사업을 실시하여 종합평가 '우수'관정을 받았다.

그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분해도 즉 친환경성 평가를 위해 식물성 오일 및 합성 에스테르 그리고 첨가제의 조성물로 제조된 Tectyl rap(300C, 200)에 대하여 생분해성 시험을 실시 후 생분해도를 살핀 결과 Tectyl rap(300C, 200)에 대하여 각각 91%와 93%이었다. 이는 친환경마크 인증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준치 60% 이상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 제품이 친환경성 재료라는 뜻이기도 하다.

또한 내부패성 평가를 위해서 Tectyl rap(300C, 200)에 대하여 pH시험을 실시하여 각각 10.4, 10.7의 결과 값을 얻었으며, 금속부식성 시험을 위하여 KS M 2525에서 규정한 시험조건 등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 결과 Al 과 Cu 금속에 대해서 '변색 없음'이 확인 되었으며, 금속가공 시 표면에 나타날 수 있는 녹에 대한 저항성을 확인하기 위한 방청성능



기업부설연구소 3층 실험실 내부



충남 아산에 위치한 생산 공장 내부

시험에서는 ‘녹 발생 없음’ 이 확인되었으며, 표면장력 시험을 실시한 결과 각각 26.4 N/cm-10와 27.2 N/cm-10으로 확인되어, 모두 ‘우수’ 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내마모성과 내구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마찰 계수 시험을 진자식 법에 따라 Tectyl rap (300C, 200)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 그 값이 각각 0.106 과 0.108이었고, 내구 성 평가를 위해서 내하중 성능 시험을 통하여 각각 125와 125의 결과치를 확보했다. 이는 이 제품이 금속가공 시 마찰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마찰손상 및 열화에 의한 손상을 방지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지금까지 적용되어 온 비수용성 절삭유나 동물성 오일을 기저로 사용한 절삭유에서 나타나는 단점과 문제점들을 ‘식물성 오일 및 합성 에스테르를 이용한 수용성 절삭유 조성물’에서는 보완하였으며, 물리적 특성 및 부패저항성 성능에서는 ‘동등이상’의 결과치를 보이며, 뛰어난 생분해성과 좋은 내구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세계 하우톤 라인 통해 수출에도 박차

이러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주)한국하우톤은 현재 자동차 제조회사와 자동차 부품회사를 중심으로 식물성 친환경 절삭유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주)한국하우톤은 좀더 적극적으로 식물성 친환경 절삭유의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2005년 11월, 2006년 6월, 2007년 11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고객을 상대로 식물성 친환경 절삭유의 장점을 설명하고 판매를 장려하는 세미나를 실시하였으며, 이 세미나에서 고객들은 이



식물성 절삭유 Tectyl의 개발자인 차재민 과장



공장 앞에서 판매를 기다리는 제품



제품점검 중인 직원

제품에 상당히 높은 호응을 보였다. 또한 (주)한국하우톤은 2006년 11월에 열린 전세계 하우톤 라인의 컨퍼런스를 한국에서 유치하여 (주)한국하우톤이 개발한 식물성 친환경 절삭유에 대한 장점을 전 세계 라인에 홍보하고 기술교류를 하였다.

이때도 특허기술 평가 결과 자료가 독특히 제 몫을 해냈다. 그러나 (주)한국하우톤이 이처럼 식물성 친환경 절삭유의 홍보 및 관측활동에 매진하는 사이 뜻밖에 문제가 벌어졌다.

혹한기(-15℃ 이하)에 제품에 고형분이 생성되었고, 이를 처음 본 고객들이 어리둥절해 (주)한국하우톤에 문의를 해 온 것이다. 우리 나라 겨울 같은 날씨에 설마 기름이 얼 수 있을까 했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던 것이다.

각고의 노력 끝에 이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주)한국하우

톤은 식물성 친환경 절삭유의 보급확대를 위해 식물유 특유의 냄새로 인한 고객의 불만을 꾸준히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곡물유 상승으로 인한 원가상승 문제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한편 (주)한국하우톤이 개발한 식물성 친환경 절삭유는 현재 월 매출 3~4억 원의 매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주)한국하우톤은 금속가공유 및 산업용 윤활유 전반에 식물성 윤활유의 보급의 선두주자가 되고자 준비 중이다.

CEO 인터뷰 _ (주)한국하우톤 임석순 대표

임 대표는 (주)한국하우톤이 자랑하는 기업부설중앙연구소에서 과장까지 지내며 연구원으로 진짜가 굵은 인물로 지난 해 충청남도에서 경영실적이 우수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중소기업경영자에게 주는 '제14회 충남도기업인 대상' 에 수상한 바 있다.

이 제품이 회사와 업계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요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고가의 석유계 오일이 아닌 식물성 오일과 식물성 오일의 잔유물로 만든 100% 천연식물성 금속가공유를 세계 최초로 개발 시판함으로써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호효과 뿐 아니라 원유대체를 통한 수백억 원대의 수입대체 효과를 가능케 하여 전세계적으로 관련 업계의 대단한 호응과 국가산업경쟁력을 끌어 올리는 등 목보적인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이 제품의 업그레이드 등을 위해 앞으로 R&D 투자 등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 회사는 동종업계 최초로 기업부설중앙연구소를 설립하여 종업원의 25%를 석·박사급 연구 인력으로 채용 국 내관련 기술의 표준화 및 생산성 개선 등을 이뤘습니다. 이러한 만파위를 바탕으로 앞으로 제품개발에 매진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R&D 투자 등 지원은 회사전략 및 비전 아래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회사는 친환경 경영을 위해 3C(Clean Plant, Clean Product, Clean Management)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 활동을 통해 인간의 생존에 관련된 모든 요소를 소중히 여기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대대손손 물려준다는 신념과 혁신으로 친환경 경영활동을 추진해 왔으며 '사람과 자연에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한다'는 경영 모토 하에 고객 만족을 실현해 가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지난 1994년 국내 최초의 유압작동유 환경마크 획득, 2001년 서울특별시 환경상 및 2004~2005년 2년 연속 친환경경영대상(한국경제신문)을 수상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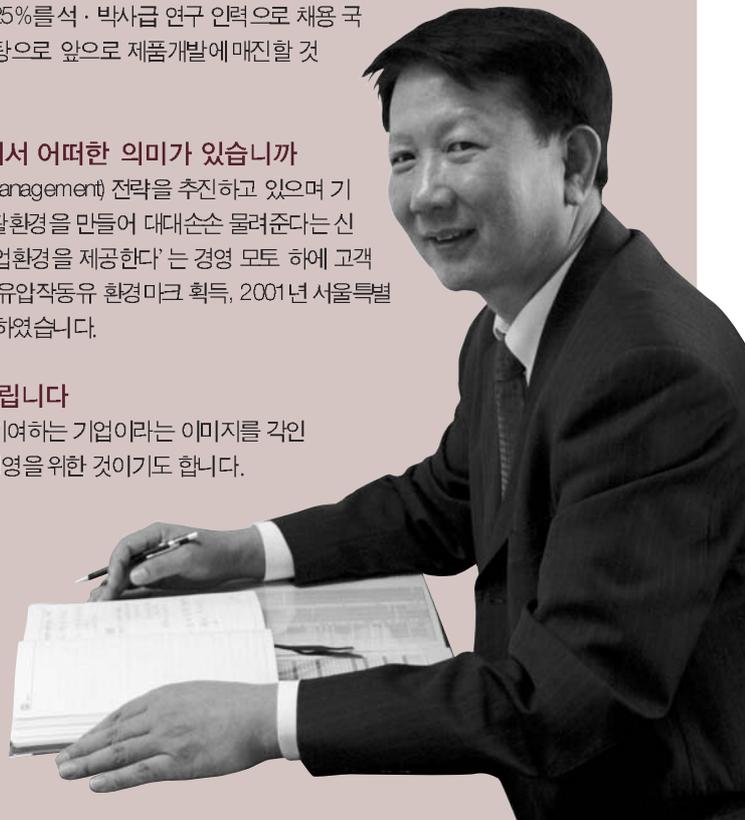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대표님의 평소 경영철학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수익 창출을 도모하는 한편 미래환경에 기여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5년 후 10년 후를 준비하는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 기술은 (주)한국하우톤만의 고유한 기술로 (주)한국하우톤은 이 기술과 전세계 하우톤 라인을 결합해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갈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특허기술 평가를 통해 이렇듯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가능케 한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발명특허 2009. 9



해피 CEO 인터뷰

(주)피앤아이비 김길해 대표이사 50

발명칼럼 I

지식재산권 거래의 활성화 방안 54

발명칼럼 II

볼펜, '기술'의 옷을 입고 다시 태어나다 56

우표로 본 인물과 역사 59

지식재산강의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60

세계적인 막강

지식재산서비스 전문회사로 성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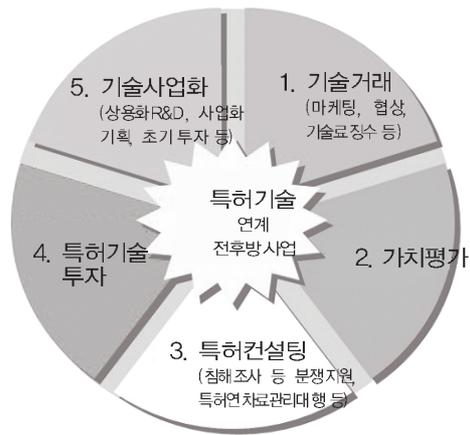
(주)피앤아이비 김길해 대표이사

수많은 실패 및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5년 내에 세계 시장을 주름잡는 Power Korea 대표주자가 되겠다는 (주)피앤아이비의 김길해 대표이사를 만나보자



(주)피앤아이비
김길해 대표이사

(주)피앤아이비의 중점 사업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특허·기술 연계 전후방사업’입니다. 일반적인 회사와 달리 형체가 보이지 않는 특허나 기술 등 지식재산과 관련된 서비스를 상품으로 한다고 말씀드리면 아주 생소하게 들리실 겁니다. 우리 회사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법에 의거 정부가 지정한 ‘기술거래기관’으로서 R&D 성과로 도출된 결과물들이 수요기업에 원활하게 이전되도록 중개하는 기술거래업무 및 이전대가를 산정하는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특허등록유지를 위한 연차료 관리업무와 특허정보 조사·특허분쟁대응관련 기술 자료 분석·침해조사 등 특허컨설팅업무도 수행하며, 특히 우량 발명이 핵심특허로 공고히 자리매김하도록 필요자원을 투자하거나, 우수 기술의 상용화 R&D 또는 초기투자 등 기술사업화 관련 업무도 수행합니다.

대표이사님께서서는 ‘기술 중매쟁이’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그동안 중매된 기술만 해도 140여 건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것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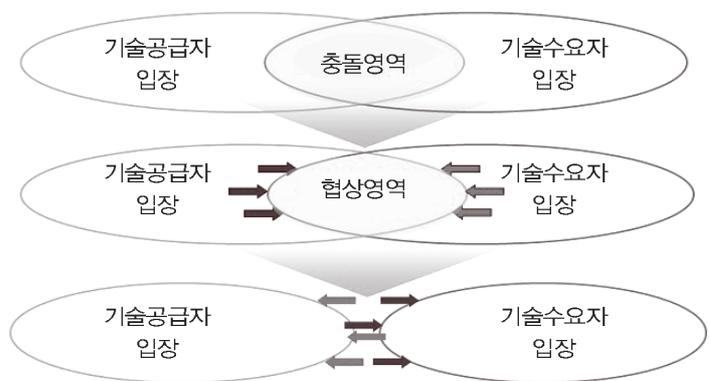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회사전체 임직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입니다. 2003년에 E연구원의 이동통신단말기 관련 특허기술



들을 패키지화한 후 가치평가 및 마케팅을 수행하여 약 40억 원 규모의 기술거래를 성사시킨 경우를 비롯하여, 2005년에 K사의 에스스로 관련 특허기술, 2006년에 개인보유 아바타 관련 특허기술 및 A사 문자입력관련 특허기술에 대해 각각 가치평가, 마케팅 및 협상을 추진하여,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규모의 기술거래를 성사시킨 경우 등 크고 작은 사례들이 다수 있습니다. 특히 문자입력의 경우는 A사(소규모 기술벤처) 기술이 KT로 이전된 이후에도 해당 기술을 다른 기업들에 전략적으로 라이선싱하고 기술료 징수하는 업무까지 포괄 위탁받아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70여 개 국내외 업체에 기술이전을 완료하여 상당한 기술료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업무상 또는 계약상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관계로 사례들을 더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기술거래의 어려움과 성공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개자의 전문성 & 경험 vs 중개자 설득력 & 조정력)

우수한 기술이라 해서 반드시 널리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고도한 기술이라 해서 반드시 큰 이익을 창출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남선녀(善男善女)가 서로 잘 만나 화합해야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번성하듯, 좋은 기술도 사업수단이 뛰어난 기업을 만나 적기에 시장 진입해야 상호 win-win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기술보유자는 대부분 자기 기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크고, 반대로 기술수요처는 자신의 사업수완이 기술사업화 성패를 가름한다 생

각하여 기술자체의 역할이나 타인 기술의 가치를 경시합니다. 바로 이런 현상들이 기술이전 활성화를 가로막는 주요인이라 생각합니다.

기술거래를 성공시키려면, 기술이전 조건에 대한 기술공급자 및 기술수요자의 과한 요구를 각각 적정선까지 줄일 수 있는 설득력 내지 조정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중개자가 양측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하는데, 기술의 실체와 시장을 꿰뚫어보는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 없이는 신뢰받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특허에 대한 명확한 분석능력, 기술트렌드 및 시장동향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수많은 실패 및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설득력이 기술거래 성공의 핵심요인 중 하나라 말할 수 있습니다.

기술의 최대 공급처인 공공연구기관의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학,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에 기술이전 전담부서(TIO)가 만들어진 후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아직 미흡합니다. 기술거래가 활성화 되려면, 우선 연구개발의 질적 수준과 지식재산 창출전략이 고도화되어야 합니다. 특히 로열티 창출가능성이 높은 해외 지식재산 획득에 많은 공을 들여야 합니다. 날카로운 창이나 든든한 방패가 아니라면 아무도 탐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슬이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이듯 획득된 지식재산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과감하게 구사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이러한 전략에 걸림돌이 되는 전용실시허락이나 양도 제한 규정 등을 전향적으로 바꾸고, 특허시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완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 활동을 TIO가 주도적으로 수행하도록 시스템을 갖추되 내부 연구역량과 외부 전문기관의 역량을 조화롭게 활용하여야 효율이 극대화될 것입니다. 최근 들어 특허기술시장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허청이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200억의 창의자본(Invention Capital)을 조성하여 국내에서 장안된 핵심 지식재산의 활용을 돕는다고 합니다. 앞으로 TIO가 이를 잘 이용하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표이사님의 경영비전은?

세계적인 막강 지식재산서비스 전문회사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기술거래·기술평가·특허컨설팅 등 경험을 통해 다져 온 실무역량과 역할을 점차 M&A 및 기술사업화 분야로 확대하고, 특허기술 투자 등 창의자본(Invention Capital)과 연계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우수 인재를 영입하고 기존 임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재교육에 심혈을 기울여 내부역량을 극대화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에 특허기술의 보고인 대덕연구단지 내에 지사를 세워 사세를 확장하고, 집진적으로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주요 국가에도 거점을 확보하거나 전략적 제휴를 통해 해외에서의 수익 활동을 증강해 갈 것입니다.

지식재산서비스에 관한 한, P&IB는 앞으로 5년 내에 세계 시장을 주름잡는 Power Korea 대표주자로 우뚝 설 것입니다.

대표이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주)피앤아이비의 나갈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2006년 5월경 한국기술거래소의 의뢰로, 우리 회사를 포함한 5개 기술거래기관들이 비즈니스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를 공동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명확히 확인된 것이 있는데, 바로 해외 기술선진국 어디에도 기술거래 중개수수료로 영속하는 기업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영국 BTG, 미국 CTT 등 우수 선진기업들의 비즈니스모델을 분석해 본 결과, 기술거래 중개활동 중 우량기술을 만났을 때 과감하게 투자해서 성공한 기업들만 수십 년 동안 영속해 왔음을 명확히 인지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회사는 대표이사인 저를 포함하여 임직원 대부분이 오랜 기간 특허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로 포진되어 있다는 점에서 여타 거래기관들과 차별화됩니다. 즉, 특허와 기술의 내면을 정확히 들여다보고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최대의 강점입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의 나갈 방향은 명확해집니다. 기술거래업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되 우량 특허를 만나거나 또는 우수 기술이 사업수단이 뛰어난 기업으로 이전되는 경우 등, 기회가 포착될 때마다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장기적

인 비전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공공연구기관 기술지주회사와는 성격이 사뭇 다르지만, P&IB는 궁극적으로 기술지주회사 형태로 발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CEO를 꿈꾸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창의력과 꿈이 있는 젊은이들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인내하면서 꿈을 향해 한걸음씩 뚜벅뚜벅 전진하는 것이 성공의 가장 빠른 길이라 강조하고 싶습니다.

높은 고지일수록 더 많은 경쟁과 고통을 요합니다. 그리고 인간이기에 누구나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분석해 보고 그를 채우려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채울 수 없는 역량은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확장하는 방법이 현명합니다.

누구에게나 무엇인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어려운 순간이 닥칠 것입니다. 이 때 겉보기보다는 실질을 중시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대학 졸업 때 대기업인 '삼성전자' 와 아주 작은 '특허사무소' 중 어디로 갈지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특허의 매력에 이끌려 주변 반대를 무릎 쓰고 삼성에 대여자장학금(등록금)까지 갚으면서 특허사무소를 택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고난의 길이었지만 다양한 경험과 나름 전문성을 쌓을 수 있어서 지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보람이 더 큼니다.

실패는 성공의 밑거름입니다. 가벼이 여겨서도 아니 되겠지만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긍정적 사고와 '하면 된다!' 는 신념으로 무장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행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창의력과 꿈을 품은 젊은이들의 건투와 성공을 기원합니다.

발명특허 2009_9



지식재산권 거래의 활성화 방안

신관호 (전대한변리사회장)

지식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 개인과 기업 그리고 국가 스스로가 보유한 지식의 가치에 대하여 인식하고, 적절한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그 지식이 진부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치가 인정된 지식 재산은 '거래'를 통하여 지식의 가치를 표면화, 현실화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지식 재산이 최종적인 가치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에 창출, 거래 및 활용을 위한 일련의 프로세스를 미국과 일본, 유럽의 국가들처럼 지식재산권 관리의 선진국들은 이미 정교하게 구축하고 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정교한 체계로 인해 여타 국가들에 속한 개인과 기업은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이를 3개 지역의 특허를 반드시 기본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그만큼 이들이 갖고 있는 지식재산권 관리 체계가 정교함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은 특허가 갖는 전략적 의미에 대하여 여타 국가들보다 더욱 심도있는 접근을 하고 있다. 즉, 특허는 단지 자신이 가진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 이상으로 타인의 도용에 대해 제소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지식재산권의 의미가 방어가 아닌 공격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이러한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특히 체계적인 지식재산권 거래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거래는 가치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와 이에 대한 적절한 가격 제시를 통해 이루어진다. 즉, 명시적인 계약이 그 기반이 되는 것이다. 이는 결국 거래 당사자 간 명시적 계약 이외의 어떠한 불법적인 지식재산의 유통은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일종의

의 배타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렇게 확고한 지식재산권의 거래 체계에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내 지식재산권 거래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식재산권 관리에 대한 이해와 활용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이다. 즉, 국내 지식재산권 거래를 보다 성숙시키는 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필자는 국가적 지식재산권 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거래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지식자산을 생산하는 주체들의 인식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지식재산이 생산된 이후 궁극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에 대해 열린 인식이 필요하다. 순수한 의미에서 지식재산은 인간의 진보와 지적 만족을 달성시키는 것만으로 그 역할을 다한 것이라 만족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지식재산은 일정한 권한을 갖게 되면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지식이 창출되는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의 거래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단지 향후 만들어질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이익에 급급하라는 말이 아니라, 창출된 지식이 일정한 권한을 갖게 되면 이것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거래라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식창출 과정에서부터 자신이 만들어내는 지식재산의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을 챙겨야 할 것이다. 연구 과정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하고, 자료에 대한 보안과 창출된 지식을 공개하는 형태 및 순서(논문 혹은 특허) 등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보다 체계적인 거래 환경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

하다. 국내에서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구 기관은 대학교, 공공연구기관, 기업연구소 등 크게 3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각각의 기관들은 생산된 지식재산을 관리하고 이들이 거래되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자체적인 지원 부서를 두고 있다. 문제는 이들 지원 부서가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이다. 지식재산권의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형성된 지식재산권 거래 시장에서 거래되는 지식재산의 상품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마케팅할 수 있는 시스템과 지식 이전 시 필요한 법적 절차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지원 부서는 현재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 과제와 향후 추진될 연구 대상에 대해 지식재산으로써 거래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는 기능과 창출된 지식재산을 수요할 수 있는 기업 등에서 홍보할 수 있는 기능과 이전 과정에서 적절한 값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절하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각 연구 기관의 지식재산 관리 지원 부서의 기능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지식재산 중 국가 차원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고급 기술의 경우 단위 연구 기관의 역량에 의존하기보다 국가가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지식재산권 거래를 위한 자원의 공급이 필요하다. 거래 시장이 활발하게 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에 대한 공급

과 수요가 모두 충분하게 존재해야 할 것이다. 유통되는 지식재산의 질이 낮은 경우 당연히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결국 지식재산권 거래가 침체될 수밖에 없다. 필자는 결국 창출되는 지식재산권의 질을 높이는 근본은 이를 만들어내는 인력의 고도화와 연구 설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지식재산권의 활발한 거래는 우수한 지식의 공급에서 비롯되고 이는 넉넉한 인적, 물적 자원의 지원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 차원의 연구 과제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열악한 가운데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물론 방만한 연구 과제 운영으로 인해 예산이 헛되이 사용되는 경우는 막아야 하겠지만, 국가 차원의 지식 및 경제적 역량을 좌우할 만한 많은 연구 과제들이 인력과 자금 부족으로 부실하게 수행되는 것 또한 반드시 막아야 할 일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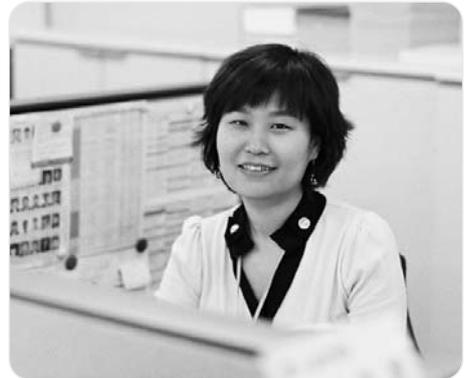
지식재산권 거래의 활성화는 지식 생산의 주체의 인식 변화와 거래를 지원하는 시스템 그리고 지식 생산에 필요한 자원의 지원을 통한 공급유지등이 한 데 어우러짐으로써 실현 가능한 일이 될 수 있다. 지식재산권에 있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지식재산권 거래 시스템의 정착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결국 지식재산을 창출하는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활발한 지식재산 거래를 통해 우리의 지식재산관리 역량도 선진국의 그것과 대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발명특허 2009. 9





볼펜, '기술'의 옷을 입고 다시 태어나다



유지영
 현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정책팀
 1995년 6월부터 과학신문기자로 활동
 2000년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공로상 수상
 각종 매체에 과학관련 원고 다수 연재

미국이 달탐사 프로젝트를 추진하던 때의 일이라고 한다. 미 항공우주국(NASA)의 한 공학자가 비밀리에 소련 과학자를 만났다. 수많은 인력과 연구비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한 난제, 즉 '우주에서 사용 가능한 필기구'의 개발을 위해서였다. NASA는 자신들보다 한발 앞서 유인우주선 발사에 성공한 소련이 무중력 상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볼펜 기술을 가졌으리라 확신했다.

아니나 다를까. 제의를 받은 소련인 과학자는 자신들이 우주에서 사용한 필기구를 넘기겠다고 거액의 대가를 요구했다. 달탐사선 발사를 앞둔 절박한 상황이었던 NASA는 망설임없이 거액을 지불하고, 그로부터 비밀 필기구가 담긴 블랙박스를 넘겨받았다.

그 블랙박스에는 누구도 생각지 못한 해결책이 담겨있었지만, NASA는 기술개발을 포기하고 말았다.

소련 과학자가 건넨 블랙박스에 담긴 것은 잘 다듬어진 연필 한 자루였기 때문이다.

누군가 같이 옷자고 만들어낸 유머이겠지만, 아주 그럴싸하다. 인간에게 '기록'은 숨쉬기만큼이나 중요한 활동이기에, 우주용 볼펜의 개발은 우주여행 만큼이나 큰 의미를 갖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진화된 필기구는 '볼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금은 너무나 흔한 탓에 하찮은 소모품으로 치부되지만, 사실 볼펜은 상당한 수준의 정밀가공 기술이 요구되

는 물건이다. 가는 관 끝에 부착된 단단한 금속구슬이 회전하면서 잉크를 뽑아내 종이에 전사하는 방식으로 글이 써지는데, 금속구슬과 본체의 틈새는 수십마이크로에 불과하다. 1mm에도 미치지 않는 초소형 금속구슬이 회전하여 일정한 굵기로 1km가 넘는 길이의 선을 긋는다는 게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일까. 300원짜리 볼펜을 만드는데 1/100 미만의 정확도를 요구하는 정밀기술이 요구된다. 불과 0.2~3mm의 초소형 구슬을 만들고, 제대로 회전하도록 가공하는 기술만으로도 박수를 받을 일이다.

가공기술이 발전하면서 볼펜도 거듭 진화해왔다. 금속구슬의 직경은 1mm에서 계속 줄어들어 0.7mm, 0.5mm, 0.3mm, 0.2mm까지 내려갔다.

또한 유성잉크에서 한 단계 발전한 중성잉크를 사용하여, 기록보존과 필기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새로운 볼펜이 등장했다. 중성볼펜은 유성잉크처럼 물에 번지지 않으면서 유성볼펜의 단점인 잉크찌꺼기가 없고 수성볼펜처럼 부드럽게 써지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기술자들은 마르기 쉽고 점성이 약한 중성잉크에 젤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유성과 수성의 장점을 결합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 중성볼펜은 최근의 필기구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밖에도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볼펜들이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잉크에 인공향을 넣어 글씨에서 아이스크림이나 딸기향이 나는 볼펜이 출시되었는가 하면, 볼펜의 가장 큰 장점인 지워지지 않는 특성을 거꾸로 이용한 지워지는 볼펜이 등장하기도 했다.

일본의 파일럿코퍼레이션(PILOT)이 2007년에 출시한 신제품 '프리쿠션'은 마찰 열에 의해 색이 사라지는 특수 잉크를 사용해 인기를 끌었다. 이 볼펜은 펜에 달린 고무로 글씨를 문지르면 감쪽같이 지워지는 신통방통한 능력을 가졌다. 이 볼펜은 가격이 기존 제품의 2배에 달했지만 날개달린 듯 팔려나갔다고 한다.

IT기술과 볼펜의 조우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IT기술과 전통의 펜(Pen)이 결합한 새로운 필기구도 선을 보이고 있다. 사실 볼펜이나 만년필과 같은 전통적인 필기구는 기록의 보관과 관리라는 점에서 현대의 정보통신 기술에 못 미

친다. 반면 아직 IT기술은 사용의 편리함이라는 측면에서 아직 볼펜 등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전화를 받으면서 기록한 급하게 적어둔 메모지가 사라져서 온 책상을 뒤진 경험이 누구에게나 한번 씩은 있게 마련이다. 게다가 메모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위해서 다시 컴퓨터에 입력하는 수고도 해야 한다. 처음 메모를 할 때 컴퓨터를 켜고 정확히 입력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전화를 받는 와중에 컴퓨터를 켜고 정해진 프로그램을 불러와서 기록까지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때면 볼펜에 메모리가 내장되어 있어서 메모와 동시에 컴퓨터에 입력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게 마련이다.

히타치가 개발한 '디지털 펜'은 바로 이런 요구에 착안한 제품이다.

이 똑똑한 펜은 볼펜처럼 잉크로 글자를 기록할뿐 아니라, 사용자의 글씨를 자동인식해서 메모리에 남기는 기능까지 가졌다. 이 펜은 볼펜 심 옆에 소형카메라가 장착되어 있고, 펜의 내부에는 화상처리 장치와 글씨를 쓸 때의 압력을 감지하는 센서, 메모리, 배터리가 있다. 이것으로 특수한 도트가 인쇄된 용지 상에 손으로 기입하면 펜이 필적을 자동 인식하고 기입 정보를 데이터화하여 메모리에 기록하는 것이다. 물론 종이에는 보통의 메모지처럼 잉크로 기록된 자료가 남아있다.

일본의 한 건물설비 전문회사인 INEX사는 이 기술을 아파트모델하우스 홍보용으로 사용하여 그 진가를 증명한 바 있다. 도우미가 모델하우스 방문자에게 시스템 베이스나 키친 등의 제품을 설명하면서, 소비자가 원하는 사양을 펜으로 기록한다. 이 정보는 컴퓨터에 전송되었다가 나중에 제품의 선정이 끝나면 출력물로 인쇄되어 방문자에게 제공되는 것이다.

도우미는 무거운 컴퓨터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간단하게 정보를 입력할 수 있어 편리할 뿐 아니라, 방문자에게는 친숙하고 편안 느낌을 제공하므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올렸다고 한다.

잉크 없이 쓰는 새로운 볼펜들

그런가 하면, 잉크가 없거나 펜 없이 글을 쓰는 새로운 필기 방식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듀크대 공대 연구진은 아예 펜없이 허공에다 글을 쓸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냈다. 이 기술은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가속도계를 이용한 것인데, 사용자가 허공에다 휴대전화를 휘두르면 전화기가 이 움직임을 감지하고 그 내용을 디스플레이 화면에 기록하는 형태이다.

허공에다 휴대폰을 휘저으며 글자를 쓰는 시늉을 하는 것만으로 기록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물론 지금도 휴대폰을 간단한 메모장으로 이용하는 이들이 많지만, 이 경우 고개를 숙이고 집중하여 작은 문자판을 눌러야 하므로, 짐이 많아서 양손을 쓸 수 없을 때에는 곤란하다. 이 기술은 한손으로 허공에다 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기록이 가능하므로, 짐이 많을 때나, 혼잡한 곳, 이동 중에도 간단하게 전화번호 등의 메모를 남길 수 있다.

연구진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기술은 휴대폰을 펜처럼 쥐고 공중에 간단한 그림을 그리거나 짧은 단문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물론 아직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다. 핸드폰이 문자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움직임이 커야하고 문자 인식 성공률이 낮아서 반복적으로 같은 글을 써야 하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기술발전 속도라면, 이같은 문제도 곧 해결 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연구팀은 조만간에 이 기술을 이용해 자신의 블로그에 장문의 기사를 올리는 일도 가능할 것으로 장담하고 있다.

사실 새로운 필기방식의 등장은 이미 오래전에 예고되어 왔다. 마우스를 이용해 모니터에 자유자재로 선을 그을 수 있게 되면서, 새로운 문자입력기의 가능성을 예고한 바 있다.

곧이어 볼펜 모양으로 생긴 독특한 입력기를 이용하여 자유로운 손놀림으로 그림을 그리고 컴퓨터 작업을 할 수 있는 타블릿이 선보였다. 이 입력기술과 손글씨를 문자로 인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기술이 결합하면서 쓰는 행위가 더 이상 볼펜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게 된 것이다.

볼펜과 종이대신에 휴대용 전자기기와 가는 막대기로

자유롭게 글을 쓰는 광경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는 터치패널 기술 발전으로 더욱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다.

이 기술은 디스플레이 화면에 가해지는 압력이나 미세한 전기신호를 감지하여 데이터를 인식하는 방식인데, 이미 여객기 좌석에 부착된 개인용 모니터, 은행의 자동입출금기 등에 사용되는 등 매우 익숙한 기술이다. 신용카드 결제에도 영수증에 볼펜으로 서명을 하는 대신에 작은 액정 모니터에 직접 사인을 하는 것도 이젠 흔한 광경이다.

이 터치패널 기술도 최근에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다.

종래에는 한 점의 입력신호만 인식할 수 있는 '원터치' 방식이었으나, 근래에는 두 점 이상의 압력이나 전기신호를 감지해서 정보를 처리하는 멀티터치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 방식은 이미 애플의 아이폰 등의 인터페이스로 채택되어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과학자들은 애플의 성공이 그동안 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외면받아 온 멀티터치패널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최근 인텔이 멀티터치 인터페이스를 탑재한 '어번맥스(UrbanMax)' 라는 컴퓨터를 공개하는 등 관련기술의 대중화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이 멀티터치패널 기술을 이용하면, 영화 '마이네리티 리포트'에 등장하는 한 장면처럼 양손을 이용해서 그림을 늘리거나 폴더로 옮기는 다양한 작업들이 가능하다. 이 기술은 필기방식에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선사시대 날카로운 돌을 이용해 바위에 남긴 암각화에서 시작된 인간의 기록문화, 즉 글씨를 쓰고 기록을 남기는 방식에 또 한번의 큰 변화가 일고 있다. 언젠가 볼펜도 박물관의 두꺼운 유리전시장 안에 고이 보관되는 날이 있을 지도 모르겠다.

우표로 본 인물과 역사

리히텐베르크 [Lichtenberg, Georg Christoph] - 독일 물리학자



독일의 물리학자이며 풍자작가인 리히텐베르크는 1777년 '리히텐베르크도형(圖形)'을 발견하였고, 1778년부터 「괴팅겐포켓연감 : Göttinger Taschenkalender」을 발행, 여기에 많은 자연과학 및 철학 논문을 수록·발표하였다.

그는 「괴팅겐 문학 및 과학 잡지 Göttingisches Magazin der Literatur und Wissenschaft」를 만들어 J. G. A. 포스터와 함께 3년간 (1780~82) 편집했고, 1794 ~ 99년 「호가르트의 동판화에 대한 상세한 해설 Ausführliche Erklärung der Hogarthschen Kupferstiche」을 발간했다.

슈테판 [Stefan, Josef] - 오스트리아 실험물리학자



오스트리아의 실험물리학자인 슈테판은 1879년, 복사에너지가 절대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는 법칙을 실험으로 보였다. 한때 그의 조수를 지냈던 L. 볼츠만이 5년 뒤에 이것을 이론적으로 증명(1884), '슈테판-볼츠만의 법칙'을 세웠다. 이것은 열복사 연구의 중요한 법칙이 되어, 후에 양자론의 개막에 한 계기를 마련했다.

자료제공 화상 아뜨리에(<http://blog.daum.net/philook>)

특허권의 소멸 및 침해의 유형



김 현 호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명지대학교 겸임교수
국제지식재산연구원 강사
기업기술가치평가사
(현) 특허법인 맥 대표 변리사

제1 절 특허권의 소멸

I. 서설

- 1) 특허권의 소멸이란 유효하게 발생한 특허권이 일정한 법정 사유에 의해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상실되거나, 소급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특허권 자체가 이 사회에서 없어서 버리는 절대적 소멸인 점에서 前主의 입장에서의 상대적 소멸인 특허권의 이전과 구별된다.
- 2) 특허법은 일정 법정사유에 해당하는 특허권을 소멸시켜 발명을 공유화함으로써 기술의 진보를 통한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고, 독점배타적인 특허권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소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하에서는 특허권이 사후적 원인에 의해 장래를 향해 소멸하는 경우와 원시적 원인에 의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경우로 나뉘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II. 장래를 향해 소멸하는 경우

1. 특허권존속기간의 만료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특허법 88①) 일정한 경우에는 5년의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특허법 89) 그러므로 특허권은 특허출원일 후 20년(연장된 경우에는 최장 25년)이 지나면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소멸한다.

2. 특허료의 불납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이후에, 4년차분부터의 특허료를 납부기간 경과 후 추납기간 6월내에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추가납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때)는 특허권자의 특허권은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그 특허권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 (특허법 81③)

3. 상속인의 부존재

특허권은 상속이 개시된 때(즉, 특허권자의 사망시)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소멸된다. (특허법 124) 원래 상속인

이 없는 경우에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됨이 원칙이지만 (민법 1058) 특허발명에 관하여는 그것을 널리 사회일반에 개방하여 자유로이 실시하게 하는 것이 산업정책상 보다 유리하므로 특허법은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특허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유특허권의 경우에는 사망한 공유자에게 상속인이 없다고 해서 특허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지분이 타공유자에게 귀속 될 뿐이다.

4. 특허권의 포기

(1) 의의

특허권의 포기란 특허권자의 의사에 의하여 특허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특허권은 재산권이므로 특허권자의 의사에 따라 그 포기가 인정되나(특허법 119①), 포기의 대상인 특허권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그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일정한 제한이 따른다.

(2) 포기의 대상

특허권자는 특허권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고, 특허청 구범위에 2 이상의 청구항이 기재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청구항별로 포기할 수도 있다.(특허법 215)

(3) 포기의 절차 및 제한

1) 특허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권 말소등록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말소등록 신청서에는 등록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포기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포기서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권자는 전용실시권자·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자, 직무발명에 의한 통상실시권자 또는 질권자가 있을 때에는 이들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특허권을 포기할 수 없다.(특허법 119①)

2) 이와 같이 특허권의 포기 시에 특허권자에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특허권의 존속을 전제한 전용실시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해서이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자기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다. 포기한 공유자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로 속하게 되므로, 다른 공유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기 때문이다.

(4) 포기의 효과

특허원부에 특허권의 말소등록이 되어야 특허권의 포기에 의한 특허권의 소멸의 효력이 발생한다.(특허법 101① I) 특허권의 포기가 있는 때에는 특허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특허법 120) 즉,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5. 특허권의 취소

불실시로 인한 재정이 있는 날로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서 그 특허발명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특허권을 취소할 수 있다.(특허법 116①) 특허권은 취소처분이 있는 때에는 그때부터 소멸된다. 즉, 소멸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특허법 116③) 그리고 특허청장은 특허권의 취소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등록하여야 한다.(등록령 14Ⅲ)

III. 소급하여 소멸하는 경우

1. 특허의 무효

특허의 무효란 무효심판청구에 의하여 무효심결이 확정됨으로써 특허권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2. 특허의 정정·정정심판에 의한 청구항의 삭제

특허의 정정·정정심판에 의하여 청구항을 삭제하는 경우에 삭제된 청구항은 설정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급하여 소멸된다고 할 수 있다.

제2절 침해의 유형

I. 직접침해

1. 의의

직접침해는 특허권의 침해의 전형적인 모습으로서, 정당한 권한없는 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즉, 특허법 제94조의 특허권의 효력이 침해되는 것을 의미한다.

2. 성립요건¹⁾

(1) 특허권이 유효하게 존재할 것

특허권의 침해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특허권이 유효하게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특허출원 중의 실시 또는 특허권이 소멸된 후의 실시는 특허권의 침해가 아니다. 비록, 판례는 무효사유있는 특허권이라 하더라도 무효심결확정전까지는 유효함을 추정하나, 이후 무효심결확정 시에 소급하여 침해가 아닌 것으로 보므로, 최종적인 침해의 성립을 위해서는 유효한 특허권의 존재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2) 보호범위 내 실시일 것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내의 실시이어야 하며 보호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구성요소완비의 법칙에 의한다. 다만, 특허권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구성요소완비의 법칙에 의해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균등론, 간접 침해, 생략침해 등의 침해이론에 의한 침해의 인정이 가능하며, 구성요소완비의 법칙에 의해 외형상 침해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특허법의 취지를 감안하여 무효의 항변, 자유기술의 항변, 실시불가능한 기재의 경우에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 추상적 기재에 의해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에 의해 침해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 또한, i)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의 효력의 제한(특허법181), ii) 추가납부기간경과 후에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의 효력의 제한(특허법81의3④), iii)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특허법96)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정당한 권한없는 자의 실시일 것

정당한 권한없는 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특허법 2III) 하여야 한다.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사용권(특허법 103), 중용권(특허법 104) 등 소정의 법정 실시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4) 업으로서 실시일 것

특허권의 침해는 업으로서 실시할 때 성립한다. 여기서 「업으로서」란 “사업으로서”를 의미하므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라면 비영리적으로 단 1회만의 실시라 하더라도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업으로서의 실시가 아닌 가정적·개인적 실시는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II. 간접침해

1. 서설

(1) 의의

간접침해란 특허발명 그 자체의 실시가 아니므로 직접침해는 아니지만, 직접침해의 전단계로서 그대로 방치할 경우 침해의 개연성이 높은 일정한 행위에 대해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을 말한다.

(2) 제도적 취지

1)정당한 권한없는 자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의 전부를 실시하는 경우에 특허권의 침해가 되나,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충족시키지 않기 때문에 아직 직접침해는 성립되지 않으나, 방치한다면 필연적으로 직접침해에 이르게 될 우려가 있는 행위도 침해로 간주하여 특허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1)특허권의 침해의 성립 자체에 대해서는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신용회복청구를 할 수 있고 형사상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상 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다.

2)간접침해제도는 미국과 독일의 경우에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어 오던 것을 각각 입법화하였으며(미국 특허법 271, 독일 특허법 10, 11), 일본은 1960년 특허법 개정 시 도입되었고(일본 특허법 101),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 개정특허법에서 명문규정을 두게 되었다.

2) 이러한 간접침해에 관한 규정은 특허권 자보호의 견지에서 특허침해에 직결되는 예비적인 행위를 효과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침해행위의 전단계에 있는 일정행위를 침해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므로 그 해석이나 운용은 신중하고 또한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다.²⁾

2. 성립요건

(1) 특허권이 유효하게 존재할 것

특허권의 침해가 있기 위해서는 직접침해와 마찬가지로 특허권이 유효하게 존재하여야 한다.

(2) 간접침해행위에 해당할 것

① 물건의 발명의 경우

특허가 물건의 발명에 관한 것일 때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특허법 127i) 이어야 한다.³⁾

② 방법의 발명의 경우

특허가 방법의 발명에 관한 것일 때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특허법 127ii) 이어야 한다.⁴⁾

③ 타용도(...에만)의 해석

1) 「...에만」이란 「당해 발명 A에 있어서 사용하는 물건 B가 당해발명 이외의 타용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타용도」가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상업적·경제적 내지 실용적으로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는 경제적·상업적·실용적 사용사실설이 타당하다. 다만, 타용도가 없음은 특허권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2) 물건의 용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타용도의 유무판단은 해당행위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간접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소송상 행사할 경우 다른 용도의 존재의 기준시점은 간접침해 시가 아니라 사실심 구두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구두변론 종결시에 다른 용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접침해를 인정하면 특허발명과 무관한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물건에까지 특허권이 미치게 되어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⁵⁾

④ “물건”의 의미

1) 특허된 물건의 생산에서 사용하거나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이 특허발명의 출원시점에서 공지된 경우 간접침해가 성립되는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판례는 “(개)호 발명의 감광드럼카트리지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이상, (개)호 발명이 공지의 감광드럼카트리지에 개선된 페토너 회수통을 결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간접침해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판시하여 전용품의 공지여부와 간접침해의 성립여부는 무관함을 명백히 하였다.⁶⁾

2) 한편, 간접침해로 되는 물건이 특허발명의 본질적 구성을 가지지 않는다면 간접침해의 성립이 부정되어야 한

3) 텔레비전 수상기의 완성품에 대하여 특허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 그 텔레비전 수상기의 조립에만 필요한 일정한 물건을 세트로 판매하는 경우 또한 이에 해당한다. 텔레비전 수상기의 조립세트는 텔레비전 그 자체는 아니므로 침해품이라고 하기는 곤란하며 그것을 판매하여도 바로 특허권 침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텔레비전 수상기의 조립세트가 해당 텔레비전의 조립 이외의 용도에 사용될 것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언젠가는 그 텔레비전 조립세트에 의하여 해당 텔레비전의 완성품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침해행위의 전단계에 있는 조립세트의 판매행위를 침해행위로 보아서 사전에 침해행위의 금지를 도모하는 것이다. 다만, 실무상 완구용 세트와 같은 경우에는 유의할 점이 있다. 즉, 완구의 완성품 형태의 유통과 완구용 세트형태의 유통을 동일하게 보는 업계에서는 완구용 세트형태의 실시행위는 간접침해가 아닌 직접침해행위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일본과 우리나라의 입장이다.

4) 예를 들면 특정의 농약(DDT)을 살충제로서 사용하는 방법에 특허권이 부여되어 있고 또한 그 농약이 살충제로서만 사용되는 경우인데, 그 농약을 살충제로서 사용하면 당연히 침해행위가 되지만 그 농약을 생산·양도하는 단계에서는 침해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특허권의 보호를 위하여 농약을 살충제로 사용하기 전 단계인 그 농약의 생산·양도행위를 특허권의 침해로 의제하는 것이다.

5) 대판 98후2580.

6) 98후2580

다.⁷⁾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특허발명의 대상이거나 그와 관련된 물건을 사용함에 따라 마모되거나 소진되어 자주 교체해 주어야 하는 소모부품일지라도, 특허발명의 본질적인 구성요소에 해당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아니하며 일반적으로 널리 쉽게 구할 수 없는 물품으로서 당해 발명에 관한 물건의 구입 시에 이미 그러한 교체가 예정되어 있었고 특허권자측에 의하여 그러한 부품이 따로 제조·판매되고 있다면, 그러한 물건은 특허권에 대한 이른바 간접침해에서 말하는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하고, 위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은 특허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이를 긍정하고 있다.

(3) 정당한 권원이 없을 것

간접침해는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타인의 특허발명에 대하여 침해로 보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따라서, 허락에 의한 실시권이나 선사용권 등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의 행위는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4) 주관적 요건의 유무

- 1) 현행 특허법은 간접침해의 성립과 관련하여 주관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간접침해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간접침해자의 고의라는 주관적 요건을 요하는가에 대하여 학설⁸⁾이 대립하고 있다.
- 2) 미국 특허법과 같이 명문으로 고의를 요구하고 있지 않는 우리 특허법의 태도로 보아 간접침해의 성립은 간접침해자의 고의라는 주관적 요건은 요구되지 않으며 단지 「그 물건의 생

산에만」 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이라는 객관적이고 기술적인 요건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객관설이 통설적 견해이며 타당하다고 본다.

(5) 직접침해와의 관계

간접침해의 성립요건으로 직접침해를 요하는가에 대하여는 종속설⁹⁾과 독립설¹⁰⁾로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¹¹⁾ 이에 대해서 미국의 경우는 「직접침해가 없다면 간접침해도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로서 종속설을 따르고 있다. 이에 반해 독일의 경우에는 간접침해행위가 현실로 직접침해로 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간접침해는 직접침해 전단계의 예비적 행위를 방지하여 특허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독립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3. 관련문제

(1) 민사적 구제

특허법이 침해로 보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적으로는 직접침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침해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으로 구제될 수 있다. 다만, 간접침해는 직접침해의 예비적 단계에 불과하므로 특허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으나,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750조에 근거를 둔 청구권으로서 해당 요건을 만족시키는 한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2) 특허침해죄 관련여부

간접침해행위도 특허침해죄(특허법 225)의 침해행위에

7) 미국의 경우 35 U.S.C 271 (c)항의 기여침해에 해당하는 부품에 대하여 “material part”(요부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유도침해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독일법도 간접침해의 대상이 되는 “수단”을 “발명의 본질적 구성요소”로 제한하고 있다.
 8) i) 간접침해가 성립하려면 「그 물건의 생산에만」 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이라는 외형적 사실의 발생과 특허권의 침해인 줄 알면서 행위를 한 때에만 간접침해가 성립하고 침해자의 주관적 인자나 의사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이 주관설(미국 특허법 271(C))이며, ii) 간접침해가 성립하려면 특허권을 침해할 목적을 가지거나 침해에 이용될 것을 알고서라는 간접침해자의 목적 또는 인식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요구되지 않으며 단지 「그 물건의 생산에만」 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이라는 객관적이고 기술적인 요건만 있으면 성립한다는 설이 객관설이다.
 9) 간접침해는 직접침해가 있어야만 성립하기 때문에 간접침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접침해의 실행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설이 종속설이다.
 10) 간접침해행위는 직접침해의 실행과 관계없이 성립한다는 설이 독립설이다.
 11) 李秀雄, 696면.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침해죄에 있어서는 미수를 처벌하지 아니함에 반하여 간접 침해행위는 미수의 전 단계인 예비적 행위에 속하므로 원래 민사책임을 논함에 있어 침해로 의제하지는 정책적 규정을 형사책임에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형벌의 균형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하는 확장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간접침해행위는 특허침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형사벌의 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다. 관례 역시 같은 입장이다.¹²⁾

(3) 간접침해와 보상금청구권

특허출원된 발명의 간접침해에 해당하는 물건을 출원공개 후 제3자가 정당한 권원없이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안 때부터 설정등록 시까지의 기간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특허법 65⑤)

(4) 간접침해행위에 대한 실시권의 설정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간접침해행위에 대해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간접침해는 소극적 효력의 확장이므로 적극적으로 실시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고 여겨진다.

(5) 소모품이 타용도가 없는 물품인지 여부

특허발명의 대상이거나 그와 관련된 물건을 사용함에 따라 마모되거나 소진되어 자주 교체해주어야 하는 소모부품이 '특허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 즉 타용도가 없는 물품인지에 대해, 최근의 대법원 관례¹³⁾는 감광드

럼 토너 카트리지사건에서 소모부품일지라도 i)본질적인 구성요소에 해당하고 ii)타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iii)일반적으로 널리 쉽게 구할 수 없는 물품으로서, iv)소모품의 교체가 예정되어 있고, v)특허권자측에서 그러한 부품을 따로 제조 판매하고 있다면 전용품에 해당한다하며, 이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특허권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다.

III. 문제되는 특허권 침해의 유형

1. 우회침해

- 1) 우회방법발명이란 특허발명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기술사상에 근거하면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중 최초의 요소와 최종의 요소를 동일하게 하고 그 중간에 객관적으로 보아 무용하거나 용이한 요소를 덧붙인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특허발명이 물질 A에 반응수단 X를 행해서 물질 B를 제조하는 방법인데 대하여, A를 A와 균등하지 않은 유사물질 A'로 바꾼(예컨대 산화한) 후 X와 동일 또는 유사한 반응수단을 행해서 물질 B'로 하고 최후에 B'를 B로 바꾸는(환원하는) 방법의 경우이다.
- 2) 이와 같은 발명적으로 무가치한 공정을 부가하여 우회의 길을 수반하는 우회방법발명을 실시하는 행위를 침해가 아니라고 하여 방치한다면 정의와 공평에 반하므로, 이를 침해로 해석하는 것이 특허법의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다.¹⁴⁾

2. 이용·저촉침해

이용발명이란 선행발명의 구성요소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한 것으로서, 선행발명의 특허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한 것이다. 원래 특허권자는 업으로

12)대판 1993. 2. 23. 선고 92도3350판결

13)대판 2001. 1. 30. 선고 98후2580판결

14)우회침해를 긍정한 대법원 판결로는 대판 1997. 11. 14. 선고 96후2135판결, 2000. 7. 4. 선고 97후2194판결 등이 있다. 대판 1997. 11. 14. 선고 96후2135판결을 예로 들면, "(가)호 방법은 활성마그네슘 수화물의 제조방법에 관한 등록발명의 핵심적인 기술을 전부 사용하여 달성되거나 또는 등록발명과 본질적으로 일치하는 수단이고, 그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인데도 무용한 공정을 추가함으로써 등록발명의 권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어, (가)호 방법이 등록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어, (가)호 방법이 등록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심판청구인이 (가)호 방법을 사용하는 데 대한 합리적인 이유와 작용효과상의 진보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등록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면서도 그 권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은 아닌지 등을 자세히 심리해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우회발명을 침해의 한 유형으로서 긍정하고 있다.

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지만, 그 특허발명이 이용발명인 경우에는 선출원권리자의 동의 또는 통상실시권허여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특허법 98) 그러므로 선출원권리자의 동의(또는 통상실시권허여심결) 없는 이용발명의 실시는 특허권의 침해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이용발명의 판단 기준은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는 명료하지만, 화학분야에서처럼 복잡한 반응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므로,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3. 생략침해(불완전 이용)

- 1) (가)호 실시자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비교적 중요하지 아니한 구성요소를 생략하고 실시하는 경우에 구성요소 완비의 법칙에 의해 보호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면 침해를 구성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과 동일한 작용효과를 발휘한다면 실질적으로 침해를 인정하는 것이 특허권자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 타당할 것이다.
- 2) 이에 특허법원은 실용신안과 동일한 기술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등록청구범위 중 비교적 중요하지 아니한 구성요소를 생략하고 그와 같이 생략하더라도 당해 실용신안이 목적으로 하는 특별한 작용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경우를 생략침해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고 있다.¹⁵⁾

4. 선택침해

- 1) 선택발명이란 화학분야에서 선행발명을 상위개념으로 할 때 상위개념의 관계에 있고, 선행발명의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않아 선행발명이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선행발명이 지적인 효과에 비하여 우수한 작용효과를 가져오는 발명을 말한다. 예를 들어, 선행발명 A의 명세서 본문에는 a1, a2에 대하여만 개시되어 있었는데, 후에 A의 개념에 포함되는 a3를 선택하여 a1이나 a2에 비하여 뛰어난 작용효과를 달성하였을 때 a3의 발명을 선택발명이라 한다.
- 2) 선택발명의 선행발명에 대한 침해인정여부에 대해, 선택발명이 그 기본이 되는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면 이를 이용발명으로 보아 특허발명인 선행발명의 침해로 볼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 3) 그러나, 선택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대해 특허출원을 하지 아니하고, (가)호로서 실시하는 경우에 선행발명에 비해 현저한 효과의 상승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는 선행발명과 기술적 사상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 역균등론에 의해 침해의 성립이 부정되는 것이고, 더욱이 선택발명이 특허를 받은 상황이라면 선택발명의 실시가 선행발명의 침해일 수는 없을 것이다.¹⁶⁾

15) 그러나, 특허법원은 생략침해의 요건만을 실시하였을 뿐 사안에서 생략침해를 긍정하지는 아니하였다.(2000허2279)

16) 선택발명이 기본발명에 대한 침해가 되는지에 관하여 이를 부정판대법원 판례(대판 1991. 11. 12. 선고 90후960 판결)가 있다.

상표의 기능과 상표법상 상표적 사용의 관계

손 지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박사수료
 서울대학교 정밀기계공동연구소 연구원
 40회 변리사시험 상표법수석합격
 한국특허아카데미 상표법 전임교수
 (현) 태울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질문) 가축용 사료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 甲은 정면 중앙에 정면 전체의 1/3을 차지하는 크기로 국문자 ‘시나브로’를 독특하게 디자인하여 인쇄하고 티셔츠를 제작하여 자사가 제조, 판매하는 사료를 구입하는 자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하였다. 그러던 중 지정상품을 ‘티셔츠’로 하여 등록한 상표 ‘시나브로’의 상표권자 乙로부터 위 행위는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니 즉시 중지하라는 요지의 경고장을 받았다. 乙의 주장대로 甲의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십시오.

I. 서설

1. 상표의 기능

상표의 기능이라 함은 상표를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그 상품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작용하는가의 문제를 말한다. 상표의 기능은 상표가 사용됨으로써 비로소 발휘되며, 경제사회의 추이나 거래 현실상의 요청

에 따라 변천하는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사용기간·범위·빈도 등이 증대될수록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상표법은 상표가 거래계에서 수행하는 제 기능들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여 법률로서 보호하는 것이며, 상표의 기능은 본원적 기능과 파생적 기능으로 구별하여 설명함이 일반적이다.

2. 상표법상 상표의 의의

상표법상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나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상표법은 이와 같은 상표를 권리로서 보호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 상품 선택의 길잡이를 제공하고,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자신의 상표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업무상 신용을 얻어 상품 및 상표의 재산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상표권의 설정, 보호 및 규

제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이다.¹⁾

즉 연혁적으로 상표라 함은 출처의 동일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상품에 사용되는 모든 표현수단을 말하나, 사회적 사실로서의 모든 상품표지를 상표법의 체계 내에서 일률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법기술상 곤란하므로 상표법은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것만을 상표로 보호하고 있다.

II. 상표의 본원적인 기능

1. 자타상품식별의 기능

개성화된 일군의 상품을 표시하여 다른 상품군으로부터 식별하게 하는 기능을 말한다. 상표의 기능 중 가장 본질적인 기능이며, 출처표시·품질보증 등의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근본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상표법은 자타상품식별의 주관적 의사를 상표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객관적으로 자타상품 식별력을 결한 상표는 상표법 제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표 등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출처표시기능

시장에서 용도와 기능을 같이 하는 복수의 상품이 존재하는 경우에 수요자는 어떤 상품이 어떤 제공자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판별할 수단을 필요로 하게 되며, 상품제공자도 자기 상품의 우수성 내지 특이성을 수요자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상품출처를 식별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필요성을 채우기 위해 상표가 수행하는 기능을 출처표시기능이라 한다.

특히 상호상표에서 현저하며, 오늘날과 같이 상거래의 유통기구가 복잡한 시대에서는 상품의 출처가 익명의 존재로서의 추상적인 출처를 의미한다.

수공업적 생산시대에는 상품의 품질이 특정의 숙련된 기술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으므로 출처가 품질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산업혁명 이후의 공장적 대량생산시대에서는 출처가 익명의 존재로 변화되어 출처표시기능은 다른 기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왔다. 이점에서 상표법은 출처표시기능을 절대적인 기능으로 구성하고 있지 않은바, 상표권은 영업과 관계없이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으며²⁾,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것이 가능하고, 상호와 달리 1인의 영업자는 수개의 상표를 등록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OEM 생산이나 백화점 판매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품의 출처가 상이해도 상표가 동일한 경우가 있다.

3. 품질보증기능

상품에 상표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수요자는 상품마다 상품의 성능, 품질 등을 스스로 판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상표가 표시되어 있다면 이전에 구입했을 때의 경험에 의해 상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나아가 전혀 새로운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다른 종류의 상품을 구입한 경험에 비추어 상품을 선택함으로써 위험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상표는 상품선택을 위한 효율적인 수단이며, 상품선택을 위한 비용을 감소시키게 된다.

품질보증기능이라 함은 동일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은 통상 동일한 성능과 품질을 가지고 있다고 수요자로 하여금 기대케 하는 기능을 말한다. 품질보증기능은 품질이 우수하다거나 품질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교환·서비스의 재제공, 손해배상 등을 보증한다고 하는 채무보증의 의미가 아니라 그 상표가 표시하는 상품은 통상 품질의 동일성과 일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수요자로 하여금 기대케 하는 기능을 말한다.

품질보증기능은 수요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공익적 규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상표법은 상표권자에게 정당사용의무 및 감독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상표권의 이전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으며³⁾, 미등록상표라도 그것이 저명

1) 사법연수원, 상표법, 2004년, 3면

2) 상표법 제54조

3) 상표법 제73조

4) 상표법 제7조제1항제10호

한 경우에는 타인의 등록을 거절하고⁴⁾, 허위표시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⁵⁾

III. 상표의 구성 요소

1. 상품

상품이란 상품학상의 개념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 아니고 상표법에 규정된 상표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사회경제상의 통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상대적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상표법상의 상품이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한다.⁶⁾

부동산과 같이 운반할 수 없는 물품이나 열·향기와 같은 무체물, 유통성이 없는 골동품이나 금제품(禁制品), 광고매체가 되는 경품이나 무상으로 제공되는 견본품 및 유가증권 등은 상표법상 상품이라 할 수 없다. 관례는 A라는 등록상표를 맥주를 제조, 판매하는 자가 맥주 관촉행사에서 A가 표시된 티셔츠를 무상으로 배포한 경우에 같은 A를 타인의 지정상품인 티셔츠의 출처표시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상품인 맥주에 관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한 바 있다.

다만, 무체물이라 하더라도 용기에 담아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다운로드 가능한 컴퓨터프로그램⁷⁾의 경우에는 상표법상의 상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2. 상표의 주체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기서 상품의 생산, 가공, 판매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계속, 반복할 의사를 가지고 일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하지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개인적인 범위 내에서 상품을 교환하거나 수리하는 것은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라 할 수 없다.

‘가공’의 경우에는 원재료를 구매하여 완제품을 만들어 내는 가공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완제품을 상품으로 지정하여 등록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상표의 대상적격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나, 완제품에 대하여 후처리 등의 단순가공 행위에 대해서는 거래사회 실정상 서비스업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⁸⁾

법문의 규정상 ‘증명, 판매’를 업으로 영위하는 자의 경우도 상표로서 등록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증명, 판매’가 거래사회 실정상 서비스업에 속한다는 측면에서 법과 거래실정상의 괴리가 존재하였다.

‘증명’의 경우에는 상품의 품질검사를 행하는 자가 자기가 취급한 상품의 품질·성분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증명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거래사회 실정상 서비스업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상표는 자타상품식별기능과 출처표시기능을 주된 기능을 하는 것임에 반하여, 이러한 증명표는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산지, 품질, 제공방법 기타의 특징을 증명, 보증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품질보증적인 기능을 1차적인 기능으로 하는 차이점이 있다.⁹⁾

‘판매’의 경우에도 그동안 도소매업과 같이 상품 ‘판매’와 관련된 경우에는 취급하는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거나, ‘○○판매대행업’ 및 ‘○○판매알선업’ 등의 형태로 서비스업등록출원을 해 왔으나, 불사용취소심판 등의 여러 문제가 야기되어 왔다. 그러나 니스분류 9판에 소매점업, 도매점업, TV쇼핑 등 전자적수단에 의한 판매업 등이 추가되었고 국제적으로도 도소매업을 독자의 서비스업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우리나라

5) 상표법 제91조 및 제95조

6)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후58 판결

7) 국제적으로는 2002. 1. 1.부터 발효된 니스분류 8판에 ‘다운로드 가능한 전자출판물’, ‘다운로드 가능한 프로그램’이 제9류에 포함되는 상품으로 예시되었고, 우리나라도 동일자 시행된 상품류 구분에서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전자음악·전자서적·전자신문·전자학습지’를 제9류에 추가하여 무체물이라도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품으로 취급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8) 박종태, 이지상표법, 28면

도 2007. 1. 1.부터 시행되는 서비스업류구분 제35류에도 매점업과 소매점업을 추가하였다.

3. 자타상품식별력

상표는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관적으로는 영업자가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어야 하며 객관적으로는 상품거래사회에서 자타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힘인 식별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심미감을 불리일으키기 위한 순전한 디자인적인 사용, 상품의 품질, 가격 등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사용, 상인이 법률관계의 귀속주체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상호로서만의 사용, 상품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수한 고안 등은 상표로서 사용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관례도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태도이다.⁹⁾

다만, 관례는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 선택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표로서의 사용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¹⁰⁾ 즉, 형식적으로는 상표라고 불리지 않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품 출처표시로서 인식이 가능한 것은 상표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므로 상표법상 같은 취급을 해야 한다는 태도이다. 관례는 이는 디자인과 상표의 관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도메

인네임, 서적의 제호 및 상호 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태도이다.¹²⁾

최근에는 음반의 제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음반에 수록된 해당 저작물의 창작물로서의 명칭 내지는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어서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나, 음반은 일반 유체물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므로, 음반의 종류 및 성격, 음반의 제명이 저작물의 내용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지 여부 및 실제 사용 태양, 동일 제명이 사용된 후속 시리즈 음반의 출시 여부, 광고·판매 실적 및 기간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 여하에 따라 음반의 제명이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자기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과 타인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을 구별하는 표시로서 인식되는 때에는, 그 음반의 제명은 단순히 창작물의 내용을 표시하는 명칭에 머무르지 않고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서 기능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¹³⁾

또한, 상표는 특정한 영업주체의 상품을 표창하는 것으로서 그 출처의 동일성을 식별하게 함으로써 그 상품의 품위 및 성질을 보증하는 작용을 하며, 상표법은 이와 같은 상표의 출처 식별 및 품질 보증의 기능을 보호함으로써 당해 상표의 사용에 의하여 축조된 상표권자의 기업신뢰이익을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유지하며 수요자의 이익도 보호하는 것이므로, 공신품인 상품의 내부에 조립되어 기능하는 부품에 표시된 표장으로서 그 상품의 유통이나 통상적인 사용 혹은 유지행위에 있어서는 그 존재조차 알 수 없고, 오로지 그 상품을 분해하여야만 거래자나 일반수요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표장은 그 상품에 있어서 상표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라고 할 수 없다. 관례도 제3자가 판매한 리모콘의 내부에 조립되어 기능하는 부품의 일종으로서 리모콘

9) 2008년 개정상표법에서는 상표의 정의규정에서 증명 을 삭제하는 대신, 표장의 소유자 또는 그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자가 그 표장이 사용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산지, 원재료, 제조방법 또는 제공방법, 수량, 정밀도 기타 특성 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증명표장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10)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후1324 판결

11) 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도2743 판결

12)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22770 판결

13)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67223 판결

의 유통이나 통상적인 사용 혹은 유지행위에 있어서는 그 존재조차 알 수 없고, 오로지 위 리모콘을 분해하여야만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내부회로기관 위에 표기된 표장을 가리켜 이를 상표로서 사용된 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¹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상품과의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즉,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 등록상표의 주지명성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사용

상표는 상품에 관하여 사용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용이란 상품을 표창하고 상품의 동일성을 나타내기 위한 모든 이용을 말하며, 상표법은 제2조 제1항 제6호 및 제2항에서 일정한 표시행위, 유통행위, 광고행위를 사용의 한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다.

5. 표장

상표는 상품의 표장(sign, mark)이며 표장이란 특성의 물건 또는 사항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용되는 일체의 감각적 표현수단을 의미하므로¹⁵⁾, 이론적으로는 문자, 기호, 도형과 같이 평면적, 시각적인 것 뿐 아니라 맛, 향기, 색채, 입체적 형상 등과 같은 것도 그것이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표지로서 사용된다면 상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표지를 전부 보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상표법은 이중 일정유형의 표지만을 보호대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상표법은 현재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나 그 밖에도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만을 상표의 구성요소로 하고 있다. 과거

에는 입체적 형상까지의 전형적인 상표만을 보호하였으나, 2007년 개정법은 과학기술의 발달 및 각종 마케팅 수단이 발전함에 따라 상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화되어 기호·문자 등 기존의 전형적 상표 외에 홀로그램, 동작, 색채 등 비전형적인 상표도 보호하게 되었다.¹⁶⁾

IV. 사안의 해결

1. 갑의 사용이 상표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사용인가?

사안에서 문자가 아닌 캐릭터 등의 도형이라면 그 정도의 크기로 독특하게 디자인될 경우 식별표지 보다는 순전히 장식용이라고 볼 소지도 있지만, 문자표지인 경우 설사 크게 디자인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칭호 등이 두드러지게 인식되기 때문에 만일 타인의 '시나브로' 라는 상표가 있다면 이와 비교하여 식별표지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甲은 디자인적 사용이라는 항변으로 침해를 벗어날 수는 없다.

2. 갑의 제공 물품이 상표법상 상품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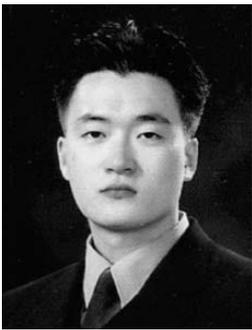
甲은 자신의 상품 '가축용 사료'에 대한 관측용으로 자신의 상품구매자들에게 티셔츠를 무료로 배포한 것이다. 따라서 甲의 티셔츠 제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이라고 할 수 없어 乙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14)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

15) 사법연수원, 앞의책, 7면

16) 2008년 개정법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소리·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그림·문자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까지도 상표의 정의 규정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신규성의제주장)



김 응

연세대학교 생물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한국특허아카데미 디자인보호법 전임
(2005년부터 2007년 7월까지)
합격의법학원 디자인보호법 전임
(2007년 8월부터 현재까지)
(현) 리&록 특허법인 근무

I. 서설

1. 신규성의제주장의 의의 및 취지

(1)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신규성 및 창작성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 이 경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이와 같은 주장을 하여야 하는데(제8조제2항 참고) 이를 실무상 또는 강학상 신규성의제주장이라고 한다.

(2) 이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신규성 상실사유(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

당하여 일률적으로 신규성 위반으로 등록이 불허된다면 가혹한 경우가 있으며, 산업발전 측면에서도 타당성을 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2. 연혁 및 개정법의 태도

(1) 2005년 7월 1일 시행법은 창작성 규정(제5조 제2항)의 판단대상이 공지 등이 된 디자인의 결합으로 확대됨에 따라, 창작성 판단 시에도 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제8조제1항)

(2) 2007년 1월 3일 시행법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공지된 경우 신규성상실의 예외규정을 적용받는 대상을 공지된 디자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그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3) 2007년 7월 1일 시행법은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디자인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때에 신규성의제주장 기회를 부여하여 등록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18조제3항) 즉, 제8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보정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

(4) 2009년 5월 15일 시행 심사기준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신규성의제주장을 하였지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의 처리절차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였다.(심사기준 제9조)

II. 신규성의제주장의 요건

1. 주체적 요건(제8조제1항)

(1) 신규성 상실 시

자기에 의한 공지라면 의사에 의한 공지 또는 의사에 반한 공지를 불문하고, 신규성의제주장을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타인 즉, 제3자의 스스로의 창작에 기한 공지에 의해 신규성이 상실된 경우라면 신규성의제주장을 할 수 없다. 다만, 제3자의 공지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창작에 기인하여 신규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신규성의제주장을 할 수 있다. 제3자의 공지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출원인)의 창작에 기인하여 신규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공지된 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출원인에게 있기 때문에 신규성의제주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제3자의 스스로의 창작에 기인하여 공지된 디자인이라면 이는 출원인과 전혀 무관하기 때문이다.

(2) 신규성의제주장 시

디자인등록출원인으로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창작자 또는 정당승계인)이어야 한다.

2. 객체적 요건(제8조제1항)

(1) 신규성 상실 시

종래에는 신규성의제주장을 하기 위한 신규성 상실의 구체적 사유가 규정되었으나, 1998년 3월 1일 시행법 이후 구체적 사유가 삭제되었다. 따라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어떠한 신규성 상실행위에 대해서도 신규성의제주장을 할 수 있다. 한편, 제8조 규정에 의한 공지사유 중 반포된 간행물의 범위와 관련하여, 디자인공보가 간행물에 포함되는 지 여부가 문제된다. 종래 특허법은 특허공보(국내 또는 국외 모두 포함)는 발명자의 적극적인 의사가 반영되지 아니하고, 특허청장에 의해 제작 및 공표된 것이므로 특허법 제30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간행물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고, 이에 현행 특허법은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에는 특허법 제30조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특허법 제30조제1항제1호단서 참고) 그러나 특허법 제30조에 대한 디자인보호법상 대응규정인 제8조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사건으로는 명문규정상 디자인보호법 제8조에는 상기 특허법과 같은 제한이 없는 점, 자기의 등록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하여 유사 디자인등록출원을 함에 있어서 불측의 손해가 생길 수 있는 점, 2007년 7월 1일 시행법에서 도입된 제18조제3항의 신설 취지 등을 고려하면 디자인보호법 제8조는 디자인공보의 발행 이후에도 6월 이내이면 제8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신규성의제주장 시

당해 공지등이 된 디자인에 대해서 신규성의제주장을 할 수 있다. 한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디자인을 구성하는 모양만을 공개한 경우에는 그 모양만에 대하여 신규성상실의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3. 시기적 요건(제8조제1항)

신규성이 상실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 따라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공개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신규성상실의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다. 한편, 복수개의 공지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6월의 기산일은 최초의 공개일이다.

III. 신규성의제주장의 절차

1. 자기의 의사에 의한 공지인 경우(제8조제2항본문)

(1) 하나의 공지행위의 경우

출원서에 그 취지, 신규성을 상실하게 된 일자, 신규성을 상실하게 된 장소 또는 간행물명을 기재하고, 공지행위 등에 관한 증명서류를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신규성상실의 예외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증명서류에는 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 등이 첨부되어야 하며,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2) 복수개의 공지행위의 경우

하나의 공지사실에 대해서는 하나의 신규성의제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 번의 신규성의제절차로서 그 이후의 여러 번의 공지사실이 모두 예외로 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한 하나의 공개행위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복수 회에 걸친 공개일 경우에는 2번째 이후의 공개에 대해서는 증명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예는 1) 2일 이상 소요되는 시험, 2) 시험과 시험당일 배포된 설명서, 3) 간행물의 초판과 중판, 4) 원고집과 그 원고의 학회발표, 5) 학회발표와 그 강연집, 6) 학회의 순회강연, 7) 박람회 출품과 그 출품물에 대한 카탈로그 등이 있다.

2. 자기의 의사에 반한 공지인 경우(제8조제2항단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의사에 반한 공지의 경우에는 출원인이 공지사실을 인식하기 곤란한 바, 제8조제2항본문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의견서제출통지 등에 의해 신규성 상실이 문제된 때에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것임을 개별적으로 증명하면 된다. 협박, 사기, 스파이, 무단모방 등에 의하는 경우가 의사에 반한 공지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제8조제2항단서 적용) 그러나,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디자인을 공지시킨 때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디자인보호법의 취지를 알지 못한 법의 무지에 의한 출원전의 공지, 대리인에게 출원을 의뢰하였지만 아직 출원되지 않는 상태에서 출원의뢰인은 이미 출원된 것으로 믿고 디자인의 실시 등을 함으로서 출원전

공지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한 공지로 볼 수 없다. (제8조제2항본문 적용) 한편, 자기의 의사에 반한 공지여부는 출원계속 중 뿐만 아니라 설정등록 후에도 문제될 수 있지만,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후에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이를 주장 및 입증하면 당해 디자인에 대해 신규성상실의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3. 분할출원의 경우(제19조제2항단서)

분할출원은 별개의 출원이므로 원출원과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간 도과로 인해 절차를 밟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신규성의제주장을 위한 절차에 관해서는 분할출원일의 출원일이 원출원일로 소급되지 않는다. 한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디자인이 공지된 경우, 최초에 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신규성상실의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분할하는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신규성상실의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4.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보정하는 경우(제18조제3항)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보정하는 경우 8조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이 경우 신규성 상실일로부터 6월 이내에 최초의 유사디자인이 출원된 경우를 전제)는 8조2항에 불구하고 그 보정을 하는 때에 보정서에 그 취지를 적어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정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본 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보정하는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된다. (부칙 4조 참조) 이는 기간도과로 인해 신규성의제주장의 절차를 밟지 못하는 출원인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IV. 신규성의제주장의 효과

1. 요건을 만족한 경우

(1) 디자인등록출원전 공지 등이 된 디자인은 출원디자인의 신규성 및 창작성 판단 시 공지 등

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자기와의 관계에서 신규성 및 창작성 판단의 인용디자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신규성 상실행위로 인해 자신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신규성 또는 창작성 위반이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는다.

(2) 그러나 신규성의제주장의 효과는 자기와의 관계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제3자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규성 또는 창작성 판단의 인용디자인이 될 수 있다.

2. 요건을 흠결한 경우

(1) 심사등록출원의 경우

디자인등록출원이 공지 등이 된 디자인에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신규성 위반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거나 창작성 판단의 인용디자인이 되어 창작성 위반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즉, 신규성 또는 창작성 위반으로 거절이유, 정보제공사유에 해당하며, 착오등록 시 무효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2) 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

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 신규성 및 창작성 중 공지 등이 된 디자인의 결합으로부터 용이창작한 지 여부는 심사하지 아니하므로(제26조제2항) 신규성의제주장의 요건 구비 여부는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등록은 가능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제3자의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신규성 또는 창작성 위반으로 거절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제26조제3항) 신규성 또는 창작성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록 후 이의신청이유, 무효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3. 신규성의제주장 불인정 시 처리절차

출원디자인의 신규성상실의 예외주장을 불인정할 경우에는 '신규성상실의 예외주장 불인정예고통지'를 하고 의견서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규성상실의 불인정예고통지에 따라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이 신규성상실의 예외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

우에는 '신규성상실의 예외주장 불인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규성상실 예외주장 관련 증명서를 제출되지 않은 신규성상실 예외주장의 효력은 당연히 상실하며, 심사관은 별도의 불인정통지를 하지 않고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심사기준 제4조)

V. 관련문제

1. 신규성 상실일과 디자인등록출원일 사이의 또 다른 공지행위가 있는 경우

(1)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의 공개에 기인하여 제3자가 중간에 다시 공개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신규성의제주장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3자의 공지행위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의사에 의한 것인지 의사에 반한 것인지에 따라 절차적 요건에 차이가 생길 뿐이다. 즉, 의사에 의한 것인 경우 법 제8조제2항 본문이 적용되고, 의사에 반한 것인 경우에는 동조동항 단서가 적용될 것이다.

(2) 다만, 중간공개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의 공개에 의하지 않고 제3자의 독자적인 창작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신규성의제주장을 할 수 없어 신규성 위반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2. 선출원주의와의 관계

구법상 신규성 상실일과 출원일 사이에 타출원이 있으면 제8조는 선출원주의의 예외가 아니므로 타출원은 신규성 위반, 당해출원은 선출원주의 위반이었다. 그러나 2007년 7월 1일 시행법에 의하면 타출원이 신규성 위반으로 거절결정이 확정되면 선출원의 지위가 없기 때문에 당해출원은 선출원주의 위반이 아니어서 등록이 가능하다.

3. 조약우선권주장과의 관계

조약4조B규정상 우선일부터 6월 내의 우선권주장출원이라 하더라도 신규성 상실일부터 6월 이내에 신규성의제 주장이 요구된다. 따라서 신규성상실일이 제1국출원 이전인 경우에는 신규성 상실일부터 6월 이내에 출원하고 신규성의제주장을 적법하게 해야만 등록이 가능하다. 따라서, 제1국에서의 디자인등록출원을 기초로 우리나라에 우선권주장을 수반한 디자인등록출원이 제1국 출원일 전에 당해 디자인이 공개된 때에는 그 공개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출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성상실의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4. 신규성의제주장출원과 같은 날에 제3자의 출원이 있는 경우의 법적 취급

종래에는 디자인의 공지 후 6월 이내에 동일디자인(A)을 출원하여 신규성의제출원을 하였고, 상기 출원일과 같은 날에 동일디자인(B)에 대하여 제3자가 스스로 창작하여 출원을 한 경우에는 B에 대해서는 신규성이 없다는 거절이유통지와 동시에 협의의 지시를 하고, A에 대해서도 협의지시를 한다. 이후 협의명령에 따라 B를 취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A는 등록을 받을 수 있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B가 거절결정되어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B뿐만 아니라 A도 등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2007년 7월 1일 시행법에 의하면 동일디자인(B)이 포기 또는 거절결정된다 하더라도 선출원의 지위가 없으므로 동일디자인(A)이 등록받을 수 있다.(이견有)

5. 한 벌 물품의 디자인과 신규성의제주장

2001년 7월 1일 시행법 이전에는 제12조제3항에 의거 그 구성물품별로 신규성 등을 판단하였기 때문에 각 구성물품이 별도로 공지되고, 이를 취합하여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신규성 위반이 문제되므로 신규성의제 주장이 요구되었으나 2001년 7월 1일 시행법 이후에는 제12조제3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그 구성물품과 한 벌 물품 사이에는 전체로서 비유사하고 신규성 위반이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신규성의제 주장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

6. 분할출원만의 신규성의제 주장 가능 여부

원출원은 신규성의제절차를 밟지 않았지만 분할출원에

만 신규성의제절차를 밟을 수 있는가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분할출원은 별개의 출원이므로 원출원이 공지시점부터 6월 이내라면 별도의 신규성의제 주장이 가능하는 견해가 있으나 사건으로는 분할출원은 원출원을 전제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원출원의 적법한 신규성의제주장을 전제로만 분할출원도 신규성의제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7. 유사디자인등록출원과 신규성의제 주장

공지 등이 된 디자인을 기본디자인등록출원하고,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유사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도 신규성의제 주장(제8조)을 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현행법의 해석상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을 기본디자인등록출원과 별개의 출원으로 보기 때문에 기본디자인과는 별개로 유사디자인등록출원 시 별도의 신규성의제주장을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지만(제7조제1항 참고)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유사디자인등록출원 시점이 단축되는 점을 고려하면 형평상 신규성의제 주장이 불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VI. 결어

신규성의제 주장은 산업정책적인 측면이 고려되어 도입된 것이다. 즉, 출원인이 권리화를 위한 규정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일정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창작된 디자인을 공공의 재산으로 환원시키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2007년 7월 1일 시행법은 종래의 제8조제1항의 해석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범규정을 명확하게 재정비하였다. 또한, 현행 신규성의제 주장 절차의 강행 규정적 성격에 의해 출원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신규성의제 주장 절차의 임의 규정화가 고려되고 있다.

발명특허 2009. 9

발명만화

아무도 몰랐던 몰래발명이야기

78

건강하게 삽시다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길라잡이

80

즐거운 퍼즐

85

발명365

86

IP Information

아무도 몰랐던 미래발명이야기

「신용카드」

글·그림
김민재

요새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경우 돌아오는 대답은 뻔하다.



그렇다. 카드 하나만 있으면 웬만한 소비욕구는 거의 충족이 되는 오늘날은 한마디로 '신용카드'의 시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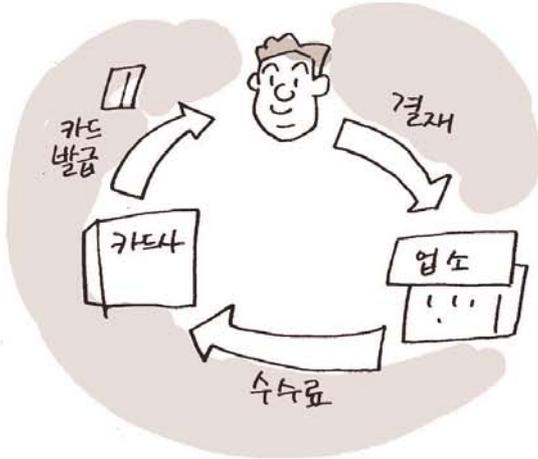


신용카드는 1914년에 처음 등장하였는데 현재의 기능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사람들의 반응도 좋아서 기업들마다 신용카드를 발급했는데 단...

하지만 1950년에 들어와서 두명의 사업가에 의해 오늘날과 같이 보편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신용카드'가 등장했는데 그 카드의 이름은 '다이너스 클럽' 이었다.



이 카드는 소유자들이 수수료를 내고
카드가 사용된 업소에서 다이너스클럽에
일정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여하튼 이러한 파격적인
결제수단인 다이너스클럽은
엄청난 인기를 끌고왔고
각기업에서는 신용카드를
만드느라 정신이 없었다.



현금을 잔뜩 집어넣어 불룩한
지갑을 들고 다니는 대신 뽕뽕한
카드한장 달랑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마음껏 필요한 것을
구입할수 있으니 이것은 정말
현대인들의 생활방식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었다.



이렇듯 신용카드의 등장으로 소비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왔으나 그로인한
여러가지 문제점도 생겨났으니...
카드사용... 정말 지혜롭게 해야할것이다.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길라잡이

구강보건사업지원단 부연구위원 류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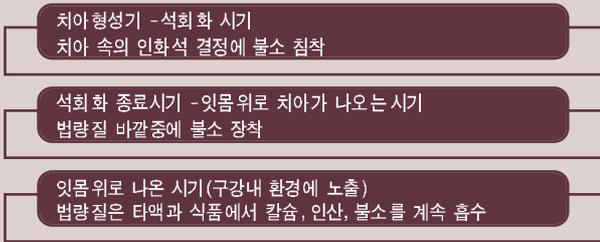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인류가 20세기에 이룩한 공중보건업적을 선정하였는데, 예방접종, 안전한 일터, 건강에 좋은 음식, 차량안전체계, 전염병 관리, 심장병의 감소, 가족계획, 담배의 유해성 알리기, 모자보건의 개선과 함께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하 수불사업)을 업적으로 발표하였다. 그럼 치아 우식증을 예방한다는 수돗물 불소 농도조정사업은 무엇이고, 왜 필요한 것일까?

치아우식증의 정의와 예방

치아우식이란 입안에 있는 세균이 당분을 소화하면서 생기는 산에 의해 치아가 썩는 현상이다.

흔히 충치라고 불리는 그것이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치아우식증을 예방하는데 불소가 효과적이며 치아가 잇몸위로 나오기 전후로 불소가 존재하면 치아 결정구조가 더욱 단단하게 되어 치아표면을 매끄럽게 유지함으로써 치아우식증(충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치아가 잇몸위로 나오기 전후 법랑질에 미치는 불소의 영향



↓ 불소 존재

이때 불소가 존재하면 치아 결정구조가 더욱 단단하게 되어 치아 표면을 매끄럽게 유지함으로써 치아우식증(충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란?

수불사업은 수돗물의 불소이온농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치아우식증(충치)을 예방하는 “좋은 물 만들기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수돗물의 불소 이온 농도를 0.8 ppm(물 1 l 당 0.8 mg에 해당하는 양)으로 조정하여 공급하고 있다. 그럼 이 불소란 무엇일까? 불소는 자연계 어디서나 존재하는 원소로서, 그 자체로는 존재하지 않고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한다. 지각에는 약 250~750 ppm 정도 존재하며, 토양에서는 전체 구성원소 중 13번째로 많다. 바닷물의 불소 이온농도는 1.2~1.5 ppm 정도로 전체 구성 원소 중 12번째로 많으며, 원래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물에는 불소이온이 적게는 0.5 ppm 미만부터 많게는 수 ppm까지 포함되어 있다. 20세기 초, 적당한 양의 불소 이온이 함유되어 있는 지역 주민들이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치아 건강이 훨씬 좋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불소이온을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법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수불사업의 경제성

수불사업은 가장 경제적인 치아우식증 예방사업으로 연간 1인당 200~300 원으로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다. 불소를 이용한 불소도포 방법은 1회당 최소만 원 이상이며, 이는 수불사업의 100배 이상의 비용이다. 또한 수불사업의 비용 편익비는 소아마비 백신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데 500원을 사용하면, 20,000원 정도 진료비용이 절감된다. 특히 경제사정이 어려워 진료받기 힘든 저소득층, 몸이 불편하여 쉽게 진료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듯 수불사업은 모든 계층이 혜택을 받는 선진국형 보건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수불사업의 성과 평가에 관한 연구

연구 결과	
치아우식증 예방효과	30~35%
반정치 조사	중등도 이상의 반정치 없음
비용/편익 비	2001년 ~ 2010년 : 43~44배로 추정
전신건강에 대한 평가	특정 질병을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 문혁수 등,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성과 평가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용역연구, 2000.

우리나라 구강보건의 실태

우리나라의 구강건강수준은 아직도 열악하다. 2006년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4년 세계 평균이 1.6개인데, 우리나라 12세 아동의 치아우식증이 생긴 영구치수는 평균 2.2개로 이는 세계평균 1.6개에는 여전히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표1)

표 1] 치아우식증으로 생긴 영구치아수

국가명	치아우식증이 생긴 영구치아수(개)	조사연도	국가명	치아우식증이 생긴 영구치아수(개)	조사연도
그리스	2.2	2000	아일랜드	1.3(비수불지역)	2002
네덜란드	0.8	2002		1.1(수불지역)	
덴마크	0.8	2006	영국	0.7	2005
독일	0.7	2005	핀란드	1.2	2000
스웨덴	1.0	2005	호주	0.8	2000
스위스	0.9	2004	한국	2.2	2006
2004년 세계 평균 1.6					

※ WHO, Global cariesburden for 12-year-old age group, 2004

성인층에서도 일부 지표가 개선되었으나 노인의 저작불편 호소율 등 대부분의 지표는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65-74세 노인 중 절반만이 기능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숫자인 20개의 자연치아를 간직하고 있으며, 연령대의 평균 자연치아수는 17.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 국민 10대 만성질환 중 순위를 살펴보면 1위가 치아우식증으로 가장 많은 국민이 앓고 있는 질병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치아우식증을 예방함으로써 수많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수불사업이다. 이미 수불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그로 인해 얻어진 치아우식예방 효과가 여러 차례 발표한 바 있다. (표 2)

[표 2] 우리나라 10대 만성질환

(단위: 명/인구 1,000명)

순위	질병명	유병률	순위	질병명	유병률
1	치아우식증	704.0	6	치질	73.7
2	치주질환	160.4	7	피부병	70.1
3	고혈압	128.7	8	디스크	65.8
4	골관절염	102.5	9	당뇨	51.7
5	알레르기성 비염	83.1	10	빈혈	50.3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국민건강영양조사, 2006

수불사업의 안정성

수불사업의 안전성과 관련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오랜 기간 진행되어 그 안전성이 검증되었고, 50년 전부터 수불사업을 해오고 있는 미국에는 안전성과 관련된 어떠한 위험과 위해성도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수불사업은 세계보건기구(WHO), 미국국립보건원(NIH), 미국치과의사협회(ADA) 등 전 세계 60여개 이상의 기구로부터 그 효과와 안전성을 지지 혹은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이 순조롭게 확산되어 국민의 구강건강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제공 건강 길라잡이 (<http://www.hp.go.kr>)

발명특허 2009. 9



P U Z Z L E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남·여)

주소:

전화: H.P

□□□ - □□□

받는 사람

월간 발명특허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발명진흥회 17F 고객지원팀

1 3 5 - 9 8 0

△이 날들은정원서 개성공원을찾을때 우편물들을 찾아주세요. 꼭주세요. 보내주세요.





2월호
 1월호
 12월호
 11월호
 10월호
 9월호
 8월호
 7월호
 6월호
 5월호
 4월호
 3월호
 2월호
 1월호

월간 **발명특허**
 2009. 9

독자카드

• 이번호 내용중에서 가장재미있고, 유익했던기사와 아쉬웠던 점은?

.....

.....

• 앞으로 꼭 다루었으면 하는기사는?

.....

.....

• 기타 「발명특허」에 하고싶은말씀은?

.....

.....

■ 9월호 퍼즐정답

1	2		4		5	
	3					
8					6	7
9	10			13		
			12			
11					15	
			14			



PUZZLE

함께 풀어봅시다

1	2		4		5	
	3					
8					6	7
9	10			15		
			12			
11					15	
			13			

가로열쇠

1. 제이심 판결에 대한 상소. 원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의 재심사를 상급법원에 신청하는 일이다.
3. 식물을 기르는데 쓰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거름을 섞어 걸게 만든 흙. 관상용 꽃이나 나무를 심을때 쓴다.
4. 뽕나무 발이 변하여 푸른 바다가 된다는 뜻으로, 세상일의 변천이 심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6. 호주(戶主)를 중심으로 하여 그 집에 속하는 사람의 본적지, 성명, 생년월일 따위의 신분 에 관한 사항을기록한 공문서
9. 물을 퍼 올리는기계. '무자위', '물 푸개' 로 순화
11. 인격이나 품성, 학식, 재질 따위가 높고 빼어나다. '높다', '훌륭하다' 로 순화
12. 나라에 병란이나 사변이있을 때 신호로 올리던불
14. 1605 ~ 1606년에 영국의 작가 셰익스피어가 지은 비극. 딸과 둘째딸의 감언(甘言)에 속아, 효성이 깊은 셋째딸 코델리아를 내쫓은 ○○○이 두 딸의 배신으로 비참하게 죽는다는 내용
15. 주식이나 어떤 물건을매매 대상으로 하기 위하여해당거래소에 일정한 자격이나 조건 을 갖춘 거래물건으로서등록하는 일

8월 호

즐거운퍼즐 정답

간	천		보	도	관	제
	저	고	리		형	
마			수		사	구
적	토	마		함		호
	사		개	소		단
인	구	밀	도		이	체
	팽		국	부	룬	

즐거운 퍼즐 정답은 다음호에 게재하며, 정답자 중 3명을 추첨하여 월간 <발명특허>지 1년 정기구독권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독자카드에 정답을 적어 매월 20일까지 보내주세요.

세로열쇠

2. 쓴 술잔. 쓰러린 경험을비유적으로 이르는말
4. 남의 토지를개간하는 사람이 그토지에 대하여가지는경작권
5. 고집이 세며 완고하고 우둔하여 말이 도무지 통하지 아니하는 무뚝뚝한 사람
7.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된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나무람을 이르는 말
8. 능력이나 품성을 기르고닦음
10.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하는 매매. 자기 이름으로 매매하지만 일정한 수수료만 받고 계산은 물품의주인이 한다.
12. '봉지(封緘)의 방언(경기, 전남)
13. 한 단체나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한 견해나 태도를 밝히는 말
15. 자리를 물려주고 들어앉은 임금을 이르는말

INVENTION 365

3

일회용 턱받이와 두루말이 타월

스웨덴의 소녀 에마가 15살 때의 일이다. 8개월짜리 남동생이 수프를 먹을 때 그 수프가 입뿐만 아니라 사방으로 흘러내려 턱받이는 곧 축축해졌다. 홈패션 디자이너인 에마의 어머니는 동생의 더러운 턱받이를 갈아주고, 계속해서 닦아냈으며 깨끗한 것으로 갈아주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다. 이런 광경을 보며 에마는 생각했다. '종이 손수건처럼 한 번 쓰고 버리는 1회용 턱받이를 발명해보면 어떨까?' 하고.

1984년 에마는 각 장의 턱받이마다 미리 재단된, 아기 머리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위가 터지고 아래 부분은 떨어지는 음식을 받을 수 있도록 접혀져 있는 반원형태의 턱받이를 고안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종이 타월처럼 롤러에서 뜯어 쓰는 그녀의 턱받이는 스웨덴의 대기업체에서 생산되었다. 장애인용 두루말이 타월도 그녀의 발명품이다.

입으로 조작하는 컴퓨터

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도 이제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조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 쓰꾸바 대학에서 혀끝을 움직이거나 치아로 가볍게 누는 것만으로도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시키고, 조작할 수 있는 '입에 누는 마우스피스형 장치'를 개발했기 때문이다.

이 장치는 아주 작은 센서를 장착한 수지 필름으로 만든 것으로 화면상에서 커서를 움직이는 등의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몸이 부자유스런 사람에게 새로운 의사전달장치가 될 전망이다. 또한 미세한 비떨어짐도 측정할 수 있는 3개의 센서를 얇은 플라스틱 필름 두 장으로 겹치게 만들어 입에 넣어서 조작하도록 되어 있는데, 센서는 혀끝이 닿는 위치에 부착되어 있다. 그리고 이용자도 위치를 파악하기 쉽도록 5밀리미터 정도의 돌기를 필름 위에 장착, 여기에 혀를 대면 커서가 움직인다.

6

자

5

길이를 재기 위해 사용되는 자는 언제 어떻게 발명되었을까? 자의 한자인 척(尺)은 사람의 팔을 펼친 모양, 또는 엄지와 집게 손가락을 펴고 있는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 영국이나 미국에서 쓰이는 뜻은 발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옛날부터 사람들은 길이를 재는 데 몸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에서는 기원전 7세기 주나라 때 '황종'이라는 피리의 길이를 기준으로 척이라는 자의 단위가 정해졌다. 우리 나라에서는 옛날에 주먹, 뺨, 발 등으로 길이를 재다가 삼국 시대에 척관법을 들여와 20세기에 미터법을 채용할 때까지 사용하였다. 각 나라마다 서로 다른 단위를 정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다른 나라와의 거래 시 문제가 생겨 1875년 국제 미터조약이 맺어지면서 미터법이 온 세계에 퍼졌다.

해외특허뉴스

해외특허동향, 해외특허정책, 해외특허분쟁

88

KIPO 소식

특허청 소식

94

IPNews

지린성(吉林省), 의약기업 지식재산권 특파원 프로젝트 가동

지난 8월 11일 지린성의 「의약기업 특허 특파원 프로젝트」가 창춘시(长春市)에서 가동되어 이를 바탕으로 지린성 내 100여 개 의약기업의 바람막이 역할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특파원은 기업의 특허전략 실시, 특허정보의 이용, 특허제도 및 규칙의 운용을 강화 및 기업의 특허소송 대응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특파원은 총 29명으로, 이들의 주된 업무는 의약기업의 특허신청, 보호, 폐기를 돕고 점진적으로 특허업무 제도를 완벽히 하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기업이 특허 재산권 관리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허 평가, 기술유입, 특허자산운영 등 중대 사안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기업에 제공하게 된다.

이들 특파원은 특허사무소에서 파견되는데, 지린성과학기술특허관리처와 중약팀(中药办)이 특파원의 일상 업무를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연중, 연말 결산업무를 전개할 것이다. 성과가 높은 특파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시상하고 직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업무 효과가 잘 드러나지 않는 특파원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조정하거나 교체를 할 계획이다.

자료출처 : www.sipo.gov.cn

영국, 위조품의 이동 경로가 될 우려 제기

그 동안 Nokia B97과 같은 열악한 제품은 서구 시장에 발을 붙일 수 없었으나 영국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도 있게 되었다. 이 소송은 Nokia의 상표를 단 위조품을 영국 내에서 판매할 의도가 없다는 이유로 그냥 통과시킨 영국 세관(HMRC)을 대상으로 제기되었다.

영국의 상표권은 국내 거래의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세관은 영국의 관할권 내에 들어오지 않는 상품을 압류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이 화물은 콜롬비아를 향해 운반되었으며 Nokia는 영국세관이 위조품 규정을 “불합리하게 제한된 방식으로” 해석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세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영국 고등법원은 이 사건이 법의 맹점을 악용한 사례이며 조만간 개선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송의 상표 변리사는 이 판결이 상표권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고 있으며 영국이 위조품의 “안전 경로”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자료출처 : www.slashgear.com

총칭(重庆)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량 작년 대비 2배 증가

금년 상반기 총칭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량이 계속해서 빠른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2분기 소프트웨어 등록량이 대폭 증가하여 저작권 등록량도 월 증가 100%를 초과했다. 총칭시 전체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량은 163건에 달하며, 이는 작년 같은 시기 대비 98.78%로 모든 저작품 등록 총량의 55.63%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민영기업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은 112건으로 소프트웨어 등록 총량의 68.71%를 차지하였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상의 데이터에서 알 수 있듯이 “100대 중점기업 관권보호 프로젝트” 와 “관권 서비스 업무무대” 건설 등 관권 공공서비스가 실시된 후 총칭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총칭시 혁신 소프트웨어 수량이 여전히 쾌속 성장기에 놓여 있다. 관권보호 홍보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고 권리인의 자가 보호의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 www.cipnews.com.cn

일본 오사카 세관, 지식재산 보호 홍보를 위해 위조 명품 공개 폐기

일본 오사카 세관은 해외에서 불법으로 반입된 위조 명품 약 5,000점을 언론에 공개하고, 이를 커터로 찢거나 폐기하는 과정을 보여주며 지식재산 보호를 호소했다.

오사카 세관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국제 우편이나 휴대 경로를 통해 공항이나 항구로 반입된 가방이나 시계 등 총 98,000여 점의 가짜 명품 브랜드의 수입을 금지하고 몰수 처리했다. 세관 측은 “소비자들이 가짜임을 깨닫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구입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전역의 세관에서는 2009년 상반기에 약 457,000점을 적발하고 수입을 금지하였다. 그 중 약 80%가 중국에서 수입된 물건으로, 몰수한 가짜 수입 명품 등은 소각 처분하였다.

자료출처 : www.customs.go.jp

영국 자선활동 기관, 정부에 지식재산권 공유 요구

영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자선활동은 지식재산권의 소유가 제한된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지식재산권은 법률에 따라 영국 정부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는 자선 프로젝트와 연구는 정부의 자금 지원이 중단되면 정부의 동의 없이 활동을 계속할 수 없게 된다.

Directory of Social Change(DSC)는 정당 회의에 제출될 정책 제안을 통해 지식재산권의 공유를 요구할 계획이다. 독립 자원봉사 부문에서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연구 이사(director of policy and research) Ben Wittenberg는 자금 지원의 중단 후 연구 결과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이와 같은 방침을 맹비난하였다. 또한 정부에서 지식재산권의 공동소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정부와의 활동을 공동연구라 할 수 없으며 자선기관들은 더 많은 돈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영국 자원봉사단체협의회(National Council for Voluntary Organisations: NCVO)의 Arn Blackmore는 모든 계약을 협상할 때마다 지식재산권의 관리에 대하여 논의해야 할 것이라 언급하였다.

공공기관의 자금 지원을 받아 소규모 회계자선기관의 훈련을 담당하는 Community Accountancy Self-Help의 대표인 Tom Fitch는 DSC의 입장에 동의하며 자선기관의 연구 결과는 공공영역에 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hird Sector의 대변인은 지식재산권을 포기한 자선기관이 다른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작업을 진행할 경우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는 납세자의 세금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자료출처 : www.dsc.org.uk

일본 경상수지 16개월 만의 흑자, 그러나 특허 사용료 등 서비스 수지는 적자 기록

일 본 재무성이 지난 8월 10일 발표한 6월 국제수지 속보에 의하면 해외와의 상품·서비스 거래, 투자손익을 나타내는 경상수지 흑자액이 전년 동월대비 144.4% 증가한 1조 1,525억 엔으로 지난 2월 이후 16개월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감소폭은 줄어드는 경향인데 반해 원유 가격 하락으로 수입 감소는 1986년 1월 이래 최대가 되어 20개월 만에 무역수지 흑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무역수지 흑자는 141.8% 증가한 6,022억 엔이다. 수출은 37.0% 감소한 4조 3,077억 엔으로 9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데, 아직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그 감소폭은 지난 2월 50%를 넘은 이래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다. 한편 수입은 43.8% 감소한 3조 7,054억 엔으로 8개월 연속으로 감소하였다. 6월의 원유 가격이 1배럴당 59.3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절반 이하가 되었던 것이 영향으로 보인다.

소득수지 흑자는 27.7% 증가한 7,301억 엔으로 9개월 만에 증가하였다. 6월은 일본 기업들의 배당 지불이 집중되어 있었지만, 지불액이 지난해에 비해 줄어들었던 것이 주된 요인이다. 특허 사용료, 여행 대금 등 서비스 수지는 1,163억 엔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또한 같은 날 발표된 2009년 상반기(1-6월)의 국제수지 속보에 의하면, 경상수지 흑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46.0%가 감소된 5조 6,215억 엔으로 3기 연속으로 흑자폭이 축소되었다. 이는 수출, 수입 모두 1986년 상반기 이후 최대의 침체기였음을 의미한다.

자료출처 : www.mof.go.jp

윈난(云南) 쿤밍(昆明) 지식재산권 강화 교육 프로젝트 가동

최 근 국가지식재산권강화 프로젝트와 쿤밍시 지식재산권 강화 교육 프로젝트에 투입된 쿤밍 지역(县, 市, 区)은 「쿤밍시 지식재산권 강화 교육 프로젝트 합동서」에 서명하여 지식재산권 강화 교육 프로젝트가동식을 가지고 전면적으로 시행하였다.

윈난성 지식재산권국 부국장 쉬용충(徐永忠)은 “쿤밍시 지식재산권 강화 교육 프로젝트는 국가지식재산권전략과 국가지식재산권강화 프로젝트와 결합, 윈난성 지식재산권 전략의 결합, 쿤밍시 경제 사회발전 및 지식재산권 시범도시 건설 업무와의 결합 등 3개의 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밝혔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양과 질을 높이고 산업, 기업 특히 지주 역할을 하는 산업과 우수 기업의 지식재산권은 경제적 이익을 실현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쿤밍시 지식재산권국 국장 샤스윈(夏世云)은 「지식재산권 강화 교육 프로젝트를 계기로 시, 구 지역의 지식재산권 능력의 전면적인 향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지식재산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현재 동향을 확실히 파악하여 지식재산권 기업발전과 단결을 이끌어내고, 이를 실효성 있게 처리하여 시의 지식재산권 사업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식재산권 강화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다음 단계로의 발전을 위하여 부서를 배정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샤스윈과 첫 번째로 국가지식재산권 강화 프로젝트에 선정된 우화구(五华区), 안닝시(安宁市) 지식재산권국 국장 및 2009년 지식재산권 강화 교육 프로젝트에 선정된 관두구(官渡区), 스린현(石林县)의 지식재산권국 국장은 각각 「쿤밍시 지식재산권 강화 교육 프로젝트 합동서」에 서명하였다. 등록된 지역은 일정한 경비를 지급받게 된다.

자료출처 : www.sipo.gov.cn

일본 특허청, 지역단체상표제도 출원 및 등록 현황 갱신

트 색 있는 지역 조성의 일환으로 일본 전역에서는 지역의 특산품을 다른 지역의 것과 차별화하기 위한 지역 브랜드 만들기 활동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 브랜드화 과정에서 지역의 특산품에 그 산지의 지역명을 활용하여 상품명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존의 상표법에서는 이처럼 지역명을 상품명으로 할 경우,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가지지 않고 특정인에게 독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상표등록이 거부되어 왔다. (도형과 조합된 경우나 전국적인 지명도를 획득한 경우 제외)

이처럼 지역명을 상품명으로 이용한 상표가 보다 조기에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브랜드의 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05년 정기 국회에서는 「상표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성립되었다. 그 후 2006년 4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었고, 지역단체상표제도가 실시된 이후 지속적으로 이용자들의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에 일본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지역단체상표제도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자료인 「지역단체상표 2009, 지역을 건강하게! 응원하자 지역 브랜드~」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말까지의 지역단체상표 출원 상황, 지역별 출원 리스트, 등록 결정 안건 리스트 등을 게재하였다.

새로 갱신된 자료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지역단체상표 2009~지역을 건강하게! 응원하자 지역 브랜드~」(2009년 6월)
- 이번 주의 등록 결정(2009년 7월 14일 분)
- 등록 결정 안건 리스트(2009년 7월 14일 현재)
- 지역단체상표의 출원 상황(2009년 7월 말일까지)
- 각 지역별 지역단체상표 출원 리스트(2009년 7월 말일까지)

자료출처 : www.jpso.go.jp

태국 여론조사, 방콕시민 약 80%가 모방품 구입 경험 있다고 응답

태국 방콕 대학의 여론조사기관인 방콕 폴은 지난 7월 27일~29일에 걸쳐 방콕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1,1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식재산권 및 상표 침해에 관한 조사에서 카피 상품을 구입·대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79.9%에 달했다고 발표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종류는 CD·DVD로 40.4%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20.7%가 명품 가방·구두·안경·시계라고 응답하였다. 모방품을 구입·대여한 이유에 대해서, 48.6%의 사람들이 정품에 비해 저렴한 가격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모방품을 구입·대여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그 이유에 대해 모방품 중에서는 질 낮고 조악한 상품이 많고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지식재산권·상표 침해 물품이 태국 내에서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응답자의 40.1%가 정품의 높은 가격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그다음 19.6%의 응답자가 경찰관이 엄하게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하였다.

자료출처 : thai.news-agency.jp

WTO, 미국과 중국의 저작권 분쟁에서 미국의 승리 인정

세계무역기구 분쟁조정위원회가 저작물의 수입과 배포 제한 완화를 요구함에 따라 중국의 영화, DVD, 도서 시장을 개방하고자 하는 미국의 오랜 노력이 드디어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분쟁조정위원회는 외국 배급업자들에게 대한 과도한 금지조치와 전자출판물의 수입제한 등은 검토에서 배제하였다.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Ron Kirk는 WTO의 결정을 깨끗한 승리로 평가하였다. 그는 성명을 통해 WTO의 결정에 따라 미국의 수준 높은 연예산업 제품을 중국에 배급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몰아낼 것이라 언급하였다.

중국의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조치를 요구한 지난 3월의 WTO 관결과 이번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통해 미국 연예산업계는 저작권 침해에 대항한 방어 거점을 마련하게 되었다. 국제지식재산권연맹(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의 추산에 따르면 미국의 저작권 손실은 연간 35억 달러에 달한다.

중국이 제한조치를 해제할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20일~60일 후에 WTO의 정식 채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국은 정식 채택 이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미국 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를 비롯한 음반, 출판 단체가 포함된 중국 저작권연맹(China Copyright Alliance)은 미국 행정부가 두 건의 WTO 소송을 진행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중국 저작권연맹을 대표하는 변호사 Jim Bacchus는 미국이 중요한 WTO 소송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중국의 저작물 시장 개방과 지식재산권 보호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부시 행정부는 2007년 4월 WTO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협의에 실패한 뒤 2007년 11월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중국의 도서, 영화, DVD, 음반 수입제한조치가 국제 무역규정과 외국인 투자 배급사의 운영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결정하였다. 또한 도서류 수입에 대한 차별행위도 발견하였다.

자료출처 : www.wto.org

내몽고(內蒙古) 자치구, 2009년 온라인 판권 침해 전문 처리반 가동

국 가판권국, 공안부, 공업 정보화부가 발표한 「2009년 온라인 판권침해 전문 처리 행동 방안」의 요구에 따라 내몽고 자치구 판권국, 자치구 공안청, 자치구 통신 관리국, 자치구 지식산권국은 지난 8월 7일 온라인 판권침해 전문 처리 행동 방안 업무 지도자 팀을 소집하여 첫 번째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온라인 판권침해 전문 처리 행동 방안을 자치구 전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토론이 진행되었다.

자치구 언론출판(판권)국당 조직 구성원인 기율(紀律)검사 팀장 뎬홍성(段洪星)은 다음 3가지 강조점에 대해 설명하였다.

- 웹사이트 관련 법률의식을 높이고 전면적인 교육을 강화해야 함
- 판권국이 앞장서서 관련 부서들과의 연합과 융합을 이끌어내야 함
- 전문처리 업무팀의 각 구성단위는 업무 절차를 엄격히 따르고 책임을 분담하는 자세가 필요함

자료출처 : www.ipr.gov.cn

일본음악저작권협회, 보증금 1억 엔에 공정거래위원회 배제 조치 명령의 집행 면제 결정

지난 8월 6일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의 발표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배제 조치 명령의 집행이 면제되도록 결정되었다고 한다. 이로써 이용 허가 계약의 체결자인 방송 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태는 일단 피할 수 있게 되어 현재는 기존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음악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 JASRAC이 방송 사업자와 체결하고 있는 음원의 「포괄 징수 계약」이 같은 업종의 타사 참가를 제한하고 있다고 하여 독점금지법 위반(사적 독점 금지)으로 배제 조치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JASRAC은 배제 조치 명령에 사실 인정 및 법령 적용의 두 측면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 승복할 수 없다고 하며 심판을 청구하였다. 또한 이 명령의 내용은 JASRAC이 단독으로 이행하기 곤란한 것으로, 방송 사업자나 음악저작권의 권리자에게까지 손해가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집행 면제를 제기해 왔다.

이번 집행 면제 제기에 대해서 지난 7월 9일 도쿄고등법원은 JASRAC의 제기를 인정하고 보증금 1억 엔의 공탁으로 집행을 면제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지난 8월 6일 JASRAC이 보증금을 공탁한 결과, 이번 명령이 확정될 때까지(심판 절차 및 그 후의 재판 절차 동안) 집행이 면제된 것이라고 한다.

한편 JASRAC는 지난 8월 5일에 이사회를 열고 1억 엔이라는 고액의 보증금을 공탁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그 결과 「이번 명령의 집행 면제를 받아 현행의 합리적인 허락·징수 방법을 유지함과 동시에 올바른 판단을 요구함으로써 권리자나 이용자의 이익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의견이 일치되어 보증금 공탁을 결정하였다고 전했다.

자료출처 : www.jasrac.or.jp

직무발명? 딱딱한 법령집 대신 만화로 보세요

「만화로 보는 직무발명사례집」 발간

휴 휴대폰 회사의 종업원이 획기적인 휴대폰 문자입력기술을 개발한 경우, 이것은 회사의 특허일까? 개발한 종업원의 특허일까?

기업 입장에서는 종업원이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장비와 자재, 비용 등이 사용되었으므로 마땅히 기업이 특허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종업원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이디어로 인해 회사에 상당한 수익을 가져다주었을 경우,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양 당사자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제도가 바로 직무발명보상제도이다. 종업원이 발명한 특허기술을 회사의 소유로 할 경우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통하여 종업원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대부분의 핵심 기술은 기업의 직무발명에 의해 창출되나, 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자에게 보상을 하는 제도를 갖춘 기업의 비율은 4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특허청은 직무발명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만화”를 통해 독자들에게 보다 쉽게 직무발명에 대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만화로 보는 직무발명사례집」을 발간하였다.

이번 「만화로 보는 직무발명사례집」은 지난 4월에 개최된 「전국대학(원)생 직무발명 창작만화 공모전」에서 선정된 작품과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국내·외의 직무발명 소송사례를 비롯, 직무발명 Q&A를 삽입하여 직무발명제도의 궁극증을 명쾌하게 해소해 주고 있다.

김원중 특허청 차장은 발간사를 통해 본 책자가 ‘연구자·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풍토가 마련되어 경쟁력 있는 특허기술 창출의 초석’이 되는 길라잡이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축약형 상표 인기, 줄일수록 커지는 매력’

중고등학생용 참고서에 특히 인기

최 근 긴 단어나 문장을 짧게 줄인 축약형 상표가 많이 출원되고 있다. “우공비”(우리들의 공부비법), “한끝”(한 권으로 끝내기), “기탄”(기초탄탄), 꿈틀(꿈을 담은 틀)와 같이 중고등학생용 참고서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축약형 상표가 중고등학생용 참고서에 출원되는 이유는 인터넷 등 실생활에서 신조어를 사용하는 청소년의 언어 습관을 반영한 것으로 주 소비계층인 10대에게 친숙하고 마음을 끌 수 있는 점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축약형 상표는 2000년을 전후하여 준말 형태의 인터넷 언어들이 상표로 출원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강추”(강력 추천)와 같은 인터넷 용어를 그대로 출원하다가, 최근에는 출원인이 준말형태로 직접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출원하고 있다. TV프로그램에서도 “엄뿔”(엄마가 뿔났다), “꽤뻗”(꽤밀리가 뻗다)과 같이 준말 사용이 일반화되는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며 이제 상표에서도 축약형이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Made in Korea 지재권 콘텐츠, 세계시장에 진출

특허청, 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 UN 공용어판 IP 파노라마 공동개발

우리가 만든 지식재산권 영문 e-러닝 콘텐츠 “IP 파노라마”가 UN 공용어¹⁾로 번역되어 189개국, 26억 명 규모의 세계시장에 진출한다.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 향후 4년간 UN 공용어 버전의 IP 파노라마를 공동개발기로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09년 아랍어 버전 IP 파노라마를 개발한다고 밝혔다.

IP 파노라마 (Intellectual Property PANORAMA)는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의 지식재산권 활용전략을 다룬 영문 e-러닝 콘텐츠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 특허청과 세계지식재산권 기구²⁾가 공동으로 개발하였다.

기존의 국내 지재권 교육 콘텐츠가 법적·이론적 내용을 다루었던 것과는 달리, IP 파노라마는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의 지식재산권 활용전략을 다양한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내어, 마치 드라마를 보듯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내용이 영어로 구성되어 있어 세계 각국에 콘텐츠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보급하는 데에도 강점이 있다.

□ 콘텐츠 내용



〈IP 파노라마 학습화면 예시〉

제공 특허청

1) 영어, 아랍어, 러시아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6개로 현재 189개국, 26억 명이 UN 공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2)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1967년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촉진과 국제협력력을 위하여 설립된 UN 전문기구로 한국은 1979년 가입하였으며 2009년 현재 WIPO Member States는 184개이다.

월간 「발명특허」 광고 게재 안내

우리회 회지인 월간「발명특허」는 각 회원사 및 국내외 유관기관, 기업, 도서관, 학교, 발명가, 주부 및 학생 등에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는 발명진흥 사업의 활성화를 비롯한 국내외 산업재산권제도 및 정보자료의 대변지입니다. 다음과 같이 분지에 귀사의 홍보를 위한 광고안내를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원고모집안내

월간「발명특허」誌는 국내·외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야별 전문적 의견과 논문, 그리고 정책·기획·출원 동향 등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널리 확산 보급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간되는 전문지입니다. 본 「발명특허」誌가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의 선도 및 기술·정책 전문지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별 전문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모집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논문, 발명칼럼, 판례 등
- 원고제목: 관련 분야별로 자유로이 선택
- 원고분량: 제한없음
- 모집시기: 수시
- 보내실곳: E-mail - eldaah7@kipa.org

회원 동정 접수

2009년 9월부터 【회원동정】 코너를 개설하였습니다. 「회원동향」란에 실을 수 있는 회원사의 동정과 보도자료를 매월 15일까지 이메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분량: A4(1/2매 글자크기12포인트), 관련 사진자료 1매 함께 제출 (보도자료 형태도 무관함)
- 보내실곳: eldaah7@kipa.org

광고 및 원고 모집 문의: 한국발명진흥회 고객지원팀 TEL (02)3459-28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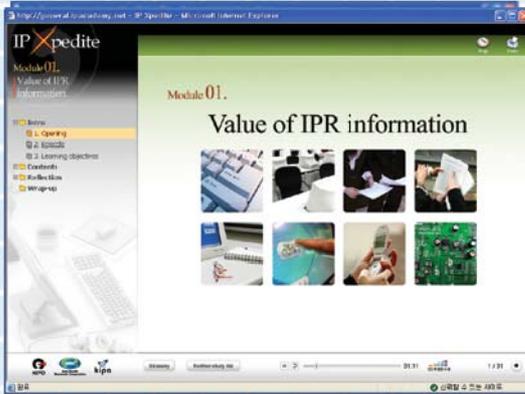
광고가격(1개월 기준)

광고게재면	규격	가격	비고
표지 4	칼라 전면	900,000	부가세 별도
표지 3	"	700,000	
표지 2	"	700,000	
내지 화보	"	500,000	
내지 흑백	흑백 전면	300,000	

우리회 지회안내

지회	지회장	사무국장	주소	연락처
부산지회	박명훈	김유현	부산시 남구 문현3동 243번지	051-645-9683
광주지회	고정주	김 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621-15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062-954-3841
대전지회	이상복	박병영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45-1 2층 (대전한일병원 근처)	042-638-4307
강원지회	차명진	송상엽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198-25	033-258-6580

편집 : 고객지원팀 김민국 (Tel. 02-3459-2868, Fax. 02-3459-2879)



■ 학습대상

지재권 정보의 기초 개념 및 그 활용방법에 대해 학습하고자하는 대학, 기업, 연구소 등 지재권 기초 개념을 습득한 자로서 지재권 학습의 다음단계로 진행하고자 하는 자

■ 강의소개

본 콘텐츠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가 공동으로 개발한 지재권 정보에 관한 콘텐츠입니다.

모듈별로 제시되는 다양한 에피소드와 함께 다양한 시연을 통해 지재권 정보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 학습목표

국제적 관점의 지재권 정보에 관한 가치, 검색방법, 분석방법 및 특허정보의 해석방법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 수강방법

1. <http://general.ipacademy.net> ▶ 2. 로그인(회원가입)
- ▶ 3. 교육과정중 일반정규과정 선택 ▶ 4. 수강신청
- ▶ 5. 나의강의실에서 학습



황금 나비상

2005/06/07/08/09 KSA한국표준협회

소비자유행지수 5년 연속 1위

無방부제

숙취해소용 천연차 **여명808**

"2007,08 편의점협회 음료전체매출 2년연속 1위"

여명808은 음주전후 숙취해소에 정말 좋은 세계 11개국 발명특허품입니다.



세계 발명경왕
남궁현



제43회 발명의 날
금탑산업훈장 수훈



Korea
Master Brand AWARDS 2009
2009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한국경제신문·중앙일보 공평한
조사·평가 브랜드스톡
2009 대한민국 브랜드스타

자매품



LOHAS 인증을 확인하세요

스태미나증진용 천연차 **다미나909**
세계 10개국 국제발명 특허품

• 명예경영학박사, 보건학박사,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세계 10대 발명전 석권, 400건이 넘는 산업재산권 보유.



http://www.glami.com 소비자 상담전화 080-4073-808
가까운 지사, 약국, 편의점, 대형할인마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